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발간등록번호
11-1192000-000490-14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2017. 7

해양수산부

Contents

Ⅰ. 공유수면의 의의 — 1

1. 공유수면의 의미 ····· 3
2. 공유수면 관리와 매립의 비교 ····· 6
3. 공유수면 관련 법령 ····· 9

Ⅱ. 공유수면 관리 — 37

1. 공유수면 관리 법령 해설 ····· 39
2. 공유수면 관리 관련 질의 회신 ····· 77
3. 법령해석 ····· 215

Ⅲ. 공유수면 매립 — 223

1. 공유수면 매립 법령 해설 ····· 225
2. 공유수면 매립 관련 질의 회신 ····· 287
3. 법령해석 ····· 328

Ⅳ. 기타 참고사항 — 335

1.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관련 규정 ····· 337
2. 공유수면 매립가능 정부투자기관 연혁 ····· 351
3. 행정법상 행정행위(처분)와 공유수면 ····· 360

I

공유수면의 의의

1. 공유수면의 의미

2. 공유수면 관리와 매립의 비교

3. 공유수면 관련 법령

약어 안내

- ‘공유수면법’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말함
- ‘공유수면 관리 규정’이란 공유수면법 제2장(공유수면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말함
- ‘공유수면 매립 규정’이란 공유수면법 제3장(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규정을 말함
- ‘업무처리규정’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을 말함
- ‘법, 영, 규칙, 규정’은 공유수면법령과 업무 처리 규정을 말함

1. 공유수면의 의미

가 공유수면의 정의

○ 공유수면이란 바다, 바닷가, 하천·호소·구거, 그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법 제2조제1호)

바다·바닷가

○ "바다"라 함은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경제수역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를 말함

※ 바다는 간석지(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등으로 구분 가능

○ "바닷가"라 함은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함

※ '99.8.8이전 법령에서는 "빈지(濱地)"라고 함

※ 바닷가(빈지)는 공유수면관리법 상 공유수면에 처음부터 포함되었으나 공유수면매립법에서는 '97.4.10부터 공유수면에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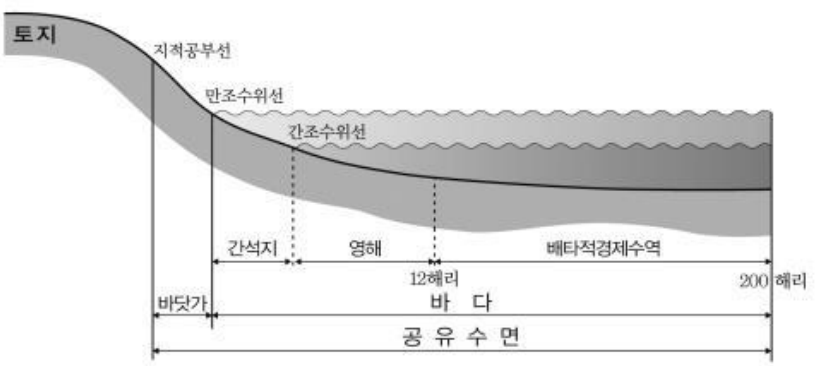

하천·호소·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

○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 소유 토지 위의 수면은 공유수면으로 볼 수 없음

○ 지적공부에 등재되어 있는 국유재산 중 지목이 하천, 유지, 구거로서 물이 흐르지 않고 사실상 토지화된 경우라 할지라도 용도폐지 후 지목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공유수면 관리 규정 적용대상임

- 단, 공유수면 매립은 물이 고여 있거나 물이 흐르는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넣어 토지를 조성(지번을 부여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함)하는 것이므로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넣지 않아도 물이 없어 사실상 토지화된 국유인 하천, 유지, 구거, 바닷가 자체만은 공유수면법 상의 매립대상이 될 수 없음

☞ 포락지

○ "포락지(浦落地)"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하며, 바다에 속한 포락지와 국유의 내륙 포락지는 공유수면에 해당됨

○ 실제로는 공유수면이나 지적공부상 임야 등 토지로 등재된 경우에는 공유수면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락지"에 해당되며, 이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대상이고 공유수면 매립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그러므로 임야나 기타의 토지에 대하여 매립면허 등의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당연 무효임

나 공유수면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공유수면

공유수면 관리 규정의 적용 배제

○ 하천에 관한 법률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유수면(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적용 대상 공유수면)

※ '99.8.9 전문개정 된 이후 구 공유수면관리법과 구 공유수면매립법은 국유인 하천을 다 같이 공유수면의 범위에 포함하되, 하천법 또는 소하천정비법을 적용받거나 준용되는 하천은 구 공유수면관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안의 공유수면

※ 농업생산기반시설 : 농업생산기반시설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의 농지 보전이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농어촌 용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암반지역 등에 물을 저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 홍수면 및 저수부지를 말함),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입보, 용·배수로, 유지, 도로, 방조제, 제방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함

⇒ 등기부상 소유자가 국(농림축산식품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농지개량조합, 한국농어촌공사로 등기되어 있음

○ 항만법 또는 어촌어항법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또는 어항시설

공유수면 매립 규정의 적용 배제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구거 또는 저수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매립하는 경우

- 이는 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구거나 저수지 등을 다른 공공시설로 변경하거나 대체하는 경우임

○ 공유수면 관리 규정에 의하여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매립하는 경우

2. 공유수면 관리와 매립의 비교

가 적용법률

공유수면 관리 (제2장)	공유수면 매립 (제3장)
•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기본규정이자 일반규정임 •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점검 및 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함 •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하거나 협의 또는 승인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규정이 정하는 권리자가 있으면 권리자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함 • 공유수면 관리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점용·사용하는 경우는 공히 공유수면 상태를 유지하여야 되고 원상회복이 전제됨 ※ 공유수면 관리 규정에 따라 설치한 인공구조물 등은 피허가자 소유이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등기조치 불가)	•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기본규정이자 일반규정임 • 공유수면의 매립이 수반되는 공단의 조성, 발전소 건설부지의 조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함 •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위한 권리자의 동의 및 매립절차 등도 이 규정에 따름 • 공유수면의 매립은 토지를 조성, 소유권을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서 공유수면의 상실이 전제됨 ※ 공유수면 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으로 공유수면이 상실됨

나 공유수면 매립 규정을 준용하는 행위

○ 수산물양식장의 축조

☞ 축제식양식어업은 수산업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면허된 범위 내에서 공유수면 매립규정에 의한 행위가 허용되므로 별도로 공유수면 매립 관련 규정에 의한 매립 면허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공유수면법 제46조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축제식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구역은 피면허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

☞ 그러나 공유수면에 육상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을 위한 양식장 축조행위는 공유수면 매립 규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후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함. 왜냐하면, 육상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생산업을 위하여는 공유수면을 토지로 조성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규모에 관계없이 공유수면 매립 관련 규정이 적용됨

○ 조선시설(造船施設)의 설치

☞ 의장안벽, 선가대 등 조선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또는 공유수면 매립 규정에 따라 모두 설치가 가능하나, 양 법률의 적용 차이는 소유권의 취득여부에 있음

○ 조력(潮力)이용에 관한 시설물의 축조

○ 공유수면의 일부를 구획하여 시행하는 영구적인 설비의 축조

다 관리 주체

공유수면 관리청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위임),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위임),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라 법률적 권리

공유수면 관리	공유수면 매립
• 공유수면 관리 규정에 의한 허가는 일반적으로 특정 공유수면에 대하여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용·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 공유수면 매립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는 특정 공유수면에 대하여 토지로 조성할 권리(소유권 취득)를 설정하여 주는 것임
• 공유수면 관리 규정에 의한 경우 원상회복을 전제로 하며, 시설물은 설치자의 소유임	• 조성된 토지중 공용 또는 공공용 토지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총사업비 상당 매립지는 피면허자가,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과 잔여매립지는 국가가 각각 소유권을 취득함
• 시설물이 차지하는 면적 또는 사용면적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를 부과·징수함	• 매립면허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징수함

마 공통사항

- **점용·사용허가를 받거나 매립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공유수면 등에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관련기관의 반대가 없어야 함**

- **점용·사용허가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피허가자 등이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청 또는 면허관청이 공히 취소권 등 감독권을 가짐**

3. 공유수면 관련 법령

가 공유수면 관련 법령 현황

구 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 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72호)** - 제정일 : 2010. 4. 15, 시행일 : 2010. 10. 16.
시 행 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449호)** - 제정일 : 2010. 10. 14, 시행일 : 2010. 10. 16.
시행규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300호)** - 제정일 : 2010. 10. 15, 시행일 : 2010. 10. 16.
고 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1-490호)** - 제정일 : 2011. 9. 6, 시행일 : 2011. 9. 6.

나 공유수면 관련 법률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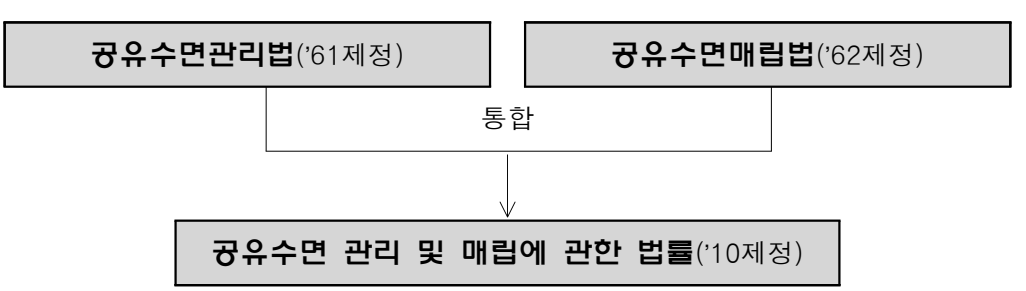

다 공유수면관리법의 제·개정 연혁

공포번호	848	공포일자	1961.12.19	제 명	공유수면관리법

〔신규제정〕

공유수면을 관리·보전·이용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위해의 예방·경감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

① 국유의 수면 및 수류로서 하천에 관한 법령과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河·海·湖·沼 등으로서 이는 중앙관리청인 국토건설청장과 지방관리청인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함

② 공유수면에 공작물의 신축, 개축, 준설, 굴착, 토석채취, 식물재배, 점용, 위생상 유해행위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③ 공유수면지역내에서 선거, 선유, 하양장, 잔교, 호안, 방파제, 부두, 갑문 또는 견고한 공작물을 신축·개축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④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에 대하여는 점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점용료등의 수입은 중앙관리청의 수입은 국고로, 지방관리청의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도록 함

⑤ 공유수면에서의 유독물·동물의 사체류를 버리는 행위,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등을 금함

⑥ 공유수면의 상황의 변동으로 인해 필요할 때 또는 공공위해의 제거 또는 경감이나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리청은 허가를 취소·정지 또는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⑦ 허가의 취소·변경등으로 손해를 받은 자에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상하도록 함

⑧ 중앙관리청은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지방관리청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⑨ 조선공유수면취체규칙은 이를 폐지함

공포번호	1632	공포일자	1964. 5. 2	제 명	공유수면관리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정부조직법의 개정(1962. 6.18, 법률 제1092호)으로 경제기획원의 국토건설청이 폐지되고, 건설부가 신설됨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번호	1746	공포일자	1966. 2.23	제 명	공유수면관리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① 수면이나 수류로도 볼 수 없어 관례에 의하여 관리되어 오던 **빈지**에 대하여도 **이 법을 준용**하도록 함 ② 공유수면의 관리청별 관리수면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미납점용료에 대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 ③ 공유수면내의 무단공작물 및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폐지한 경우의 시설물 기타의 공작물등은 무상으로 국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시킬수 있도록 함					
공포번호	5338	공포일자	1997. 4.10	제 명	공유수면관리법중 개정법률
〔일부개정〕 "경쟁력 10퍼센트이상 높이기"의 일환으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매립에 수반되는 토석의 채취·준설등을 위한 공유수면의 점·사용에 대하여 점·사용료를 감하려는 것임					
공포번호	5453	공포일자	1997.12.13	제 명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정으로 허가취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공포번호	5914	공포일자 시 행 일	1999. 2. 8 **1999. 8. 9**	제 명	공유수면관리법중 개정법률
〔전문개정〕 공유수면의 점·사용과 관련한 종전의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공유수면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침식으로 인하여 수면밑으로 잠긴 토지 등을 복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 시·도지사가 관리하던 공유수면관리권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도록 조정

② 포락지·간석지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제방축조 또는 토지의 원상을 복구토록 함

③ 해양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관광호텔등 건축물의 설치 허용

④ 부두·방파제 등 공작물설치는 공사의 시공에 따른 안전, 환경피해 최소화 등 공유수면관리를 위하여 실시계획인가제도를 도입함

⑤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업자도 공유수면점사용료 감면대상에 포함

⑥ 공유수면 무단점·사용자에게는 점·사용료의 120퍼센트를 변상금으로 징수하고, 1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함

⑦ 전복·침몰·방치된 선박의 소유자에게 제거명령을 하거나 관리청이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할 수 있도록 함

공포번호	7481	공포일자 시 행 일	2005. 3.31 2005.10. 1	제 명	공유수면관리법중 개정법률

〔일부개정〕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사무 중 특정지역개발계획수립지역 및 국가산업단지안의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던 배타적경제수역의 관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사무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공유수면의 점·사용료 감면대상에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공포번호	8039	공포일자	2006.10.4	제 명	공유수면관리법중 개정법률

〔일부개정〕

해양사고 등으로 침몰이나 난파 등을 당한 선박이 해양에 방치됨으로 인하여 공유수면의 안전과 효용을 해치거나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시급히 그 선박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치선박의 제거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출할 수 있게 하고, 그 이의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결과 공유수면의 안전과 효용을 해치거나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우려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공유수면관리청이 직권으로 방치선박을 제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며, 공유수면 내 행정조사 규정에 관계공무원의 성명, 조사 목적을 서면으로 사전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조사대상자들의 피해 및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조사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포번호	8819	공포일자 시 행 일	2007.12.27 2008.6.28	제 명	공유수면관리법중 개정법률

〔일부개정〕

공유수면을 특정인이 장기간 점·사용하거나 선점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유수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기간을 제한하고, 허가받은 점·사용의 전대를 금지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경우에도 민간인이 점·사용하는 경우에 준하는 통제를 받도록 하는 한편,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사용 허가의 취소사유를 구체화하여 행정청의 재량행위를 투명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에 대한 관리 강화(법 제5조)

(1)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하고, 필요한 경우 점·사용허가에 조건을 붙이며, 그 밖에 공유수면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하는 등 그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2) 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고, 해양환경·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사용방법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하며,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게 하지 못하도록 함

(3)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와 관련한 투명한 행정이 가능하고, 무분별한 점·사용으로 인한 해양환경의 파괴 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관리강화(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2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 또는 승인의 간편한 방법을 통하여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유수면의 관리강화를 위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점·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협의·승인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조건을 붙이거나 일정한 경우 협의·승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공유수면에서의 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완료신고를 하도록 하며, 그 밖에 원상회복의무 및 취소의 대상으로 하는 등 그 사후관리를 강화함

(3) 민간인에 의한 점·사용허가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점·사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점·사용기간 및 실시계획의 승인기간 등(법 제6조의2 신설 및 법 제8조제3항)

(1) 특정인이 공유수면을 장기간 선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기한을 둘 필요성이 있음

(2) 공유수면의 점·사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육상해수양식업·종묘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 이하로 하며, 공유수면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실시계획의 신고는 점·사용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각각 1년 또는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신고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공유수면의 공정한 이용과 효과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점·사용허가의 취소사유 및 과태료 부과대상의 구체화(법 제17조제1항 및 제24조)

(1)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의 취소사유 및 과태료 부과대상을 구체화하여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의 여지를 축소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3)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의 취소사유를 구체화 하고, 점·사용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마. 점·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법 제17조제2항·제3항)

(1)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그 밖의 불법 공작물의 개축·이전명령 등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2) 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또는 협의·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이전의 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설치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함

사. 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용(법 제19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공포번호	9551	공포일자 시 행 일	2009. 3.25	제 명	공유수면관리법중 개정법률

〔일부개정〕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골재채취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수역의 해양생태계가 훼손되거나 수산자원이 감소될 수 있어 해당 수역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연접

지역의 어업인이 입게 되는 피해는 다른 지역의 어업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수입으로 하고 있는 공유수면의 점·사용료 중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에 대한 **점·사용료는 그 일부를 해당 배타적경제수역의 연접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그 교부금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될 해당 배타적경제수역의 연접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인들을 지원하려는 것임

공포번호	9736	공포일자 시 행 일	2009. 5.27	제 명	공유수면관리법중 개정법률

〔일부개정〕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행정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양벌(兩罰)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라 공유수면매립법의 제·개정 연혁

공포번호	986	공포일자	1962. 1.20	제 명	공유수면매립법
〔신규제정〕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①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건설청장의 면허를 얻도록 함 ②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매립에 관한 공사의 착수와 준공을 주무부·청의 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하도록 함 ③ 조선공유수면매립령(1923년3월13일제령 제3호)을 폐지함					
공포번호	1633	공포일자	1964. 5. 2	제 명	공유수면매립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정부조직법의 개정(1962. 6.18, 법률 제1092호)으로 국토건설관리청이 폐지되고, 건설부가 신설됨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번호	1821	공포일자	1966. 8. 3	제 명	공유수면매립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① 농림부장관이 분장하고 있던 공유수면매립의 면허권을 건설부장관에게로 통합함 ② 토지개량련합회에 대한 공사대행규정을 신설함 ③ 조성된 매립지의 이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공포번호	2411	공포일자	1972.12.30	제 명	공유수면매립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현행법상으로는 건설부장관이 정부사업으로 실시하는 농경지조성을 위한 매립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매립지를 농림부장관에게 이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경우에 건설부장관이 이관하기 전에 행할 매립공사의 범위가 모호한 바, 건설부장관은 방호·방수시설의 설치를 하고 농림부장관은 개답·관개시설등의 설치를 행하게 함으로써 정부가 행하는 농경지조성사업을 효률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공포번호	3901	공포일자	1986.12.31	제 명	공유수면매립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공유수면매립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경제의 성장에 따른 토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공유수면매립공사에 의한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려는 것임

① **10년을 단위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립면허는 이 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만 하도록 함

② **도시계획구역과 그 인근지역**등의 공유수면에서의 **매립은 원칙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하도록 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도록 함

③ 매립공사로 인한 손실보상대상구역이 종전에는 공유수면매립시행구역에만 한정하던 것을 직·간접으로 피해를 받는 인근의 공유수면도 피해보상대상구역에 포함시킴으로써 영세어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함

④ 종전에는 도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사업비에 관계없이 매립지의 전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당해 매립에 관한 공사의 사업비(적정이윤 포함) 상당분만을 취득**하게 하고 **잔여분은 개발이익으로 국가에서 환수**하도록 하는 한편,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준공인가일부터 1년이내에 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자가 실수요자인 경우 우선권을 주도록 함

⑤ 매립공사가 **준공된 후 5년 이내**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의 **매립목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함

공포번호	5337	공포일자	1997. 4.10	제 명	공유수면매립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경쟁력 10퍼센트이상 높이기"의 일환으로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유인 매립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각방법 및 매각가격을 국유재산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인 매립지를 공장 등의 용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빈지매립지는 국가에 귀속**하도록 함

① "공유수면"의 개념에 빈지를 포함시키고 매립지중 빈지지역을 국가에 귀속토록 함

② 산업단지개발사업자가 국유인 잔여매립지를 매수할 경우 매각방법 및 매각가격을 국유재산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③ 국가에 귀속된 매립지를 공장·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관광호텔 등의 용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공포번호	5453	공포일자	1997.12.13	제 명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정으로 면허취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공포번호	5911	공포일자 시행일자	1999. 2. 8 1999. 8. 9	제 명	공유수면매립법개정법률
〔전문개정〕 갯벌 등 공유수면의 매립에 의한 환경파괴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시 공유수면매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하고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매립공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한편,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매립지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제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매립지의 용도변경제한기간을 장기화**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환경과 조화되도록 하고 동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매립으로 인하여 생기는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와 그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함 ②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결정·고시된 매립예정지안에서는 당해 매립예정지의 이용에 관한 어업권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공공사업 등에 있어 불필요한 보상비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③ 매립공사의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등 관련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의제함으로써 매립절차를 간소화하고 매립공사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함 ④ 종전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매립공사의 착수와 준공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신청하여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따라 매립공사를 시행하도록 함 ⑤ 종전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의 준공인가전에 매립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공인가전까지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⑥ 종전에는 준공인가후 5年이내에는 매립한 토지에 대한 당초의 매립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요건을 강화하여 **준공인가후 20년동안 매립지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투기목적 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공포번호	7482	공포일자 시행일자	2005. 3.31 2005.10. 1	제 명	공유수면매립법 개정법률

〔일부개정〕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구역을 제외한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한편, 공유수면의 보다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매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매립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정항만구역안 외의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법 제9조)
항만법의 규정에 따른 지정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각종 사무는 종전과 같이 해양수산부장관이 가지되, 그 외의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사무는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나. 매립목적변경 확인(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경미한 매립목적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매립목적변경이 경미한 매립목적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확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다.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법 제38조의2제1항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1천 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매립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매립을 할 수 있도록 함

공포번호	8820	공포일자 시행일자	2008. 6.28 2008. 6.28	제 명	공유수면매립법 개정법률

〔일부개정〕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5년 단위의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포함시키되 **5년의 기간에 매립면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매립기본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하며, 공유수면의 규모 및 매립의 주체에 따른 매립면허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유수면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매립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법 제6조 및 법 제6조의2 신설)

(1) 기득권 확보를 목적으로 일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시킨 후 실제로는 매

립 면허를 받지 아니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그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2) 개별 매립예정지의 위치·규모 및 이용계획 등에 대한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매립기본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되,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은 5년 단위로 작성하고, 그 기간에 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함

(3) 실제로 공유수면을 매립할 능력 또는 의지가 없는 자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계획의 남발을 예방함으로써 공유수면의 매립을 원하는 실제 수요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법 제8조)

(1) 매립기본계획의 변경기준이 모호하고,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이용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사례가 증가하므로 공유수면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2)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적인 매립기본계획 변경에 있어서는 토지이용계획의 100분의 50 이상이 변경되는 경우 등으로 그 변경사유를 제한하고, 수시적인 매립기본계획 변경에 있어서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의 변경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매립의 주체가 되는 경우 공용·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매립기본계획의 변경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매립 및 부당한 사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제한(법 제9조제1항제1호·제6항·제7항)

(1)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매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의 규모 및 매립의 주체 등에 따라 면허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2)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직접 면허**를 받도록 하고,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예정지를 분할하여 면허하지 못**하도록 하며, **도시지역·관리지역 안의 공유수면과 지정항만 안의 공유수면 및 국가어항구역 안**의 공유수면과 같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공유수면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하도록 함

(3) 공공재로서의 공유수면에 대한 국가의 관리권한을 강화하고 개인에 의한 무분별한 공유수면의 매립을 제한함으로써 공유수면에 대한 보존 및 지속적인 이용·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실시계획의 승인기간 등(법 제15조제2항 신설)

(1)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기한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은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후 이를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공유수면이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가로막는 폐단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됨

마. 매립면허의 취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법 제32조)

(1)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그 밖에 불법 공작물 등의 개축·제거 등의 명령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2) 공유수면의 매립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제거 등의 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설치하여 누구나 이를 알 수 있게 함

바. 원상회복의 적용범위 확대 등(법 제35조)

(1)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자에 대하여도 그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에 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2)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에 대하여도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되어 해당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이 국가에 귀속되더라도 국가 소유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함

(3) 불법적인 공유수면의 매립을 예방하고 공유수면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공유수면매립정보체계의 구축·운용(법 제39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의 매립 및 매립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수면매립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골자

공포번호	10272	공포일자 시행일자	2010. 4.15 2010.10.16	제 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정〕

공유수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공유수면 관리업무와 매립업무로 분리된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하고, 시설물의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년으로 되어있는 **공유수면 점용·사용기간을 시설물의 내구연한에 따라 점용·사용기간을 30년·15년 및 5년 이하로 연장**하며, 매립지의 이용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의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공유수면 점용·사용기간 연장 등(법 제11조 및 제17조)

현재 일률적으로 3년으로 되어 있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기간을 인공구조물의 형태와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30년, 15년 및 5년으로 세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관련사업의 장기적·효율적 시행을 도모함

나. 점용료·사용료의 감면대상 확대(법 제13조제1항제5호, 제11호 및 제1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사업 시행,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및 마리나산업단지 조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에너지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관련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다. 시설물의 설치 등 행위의 행정절차 간소화(법 제17조)

공유수면에서 시설물의 설치 등 행위를 하려는 자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대상이었던 공유수면에서의 행위 대부분을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신고 대상으로 변경함

라. 매립지 준공 전 사용제한 완화(법 제44조)

준공검사를 받기 전의 매립지에는 임시 시설물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매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마. 매립목적의 변경 제한기간 단축(법 제48조)

경제발전으로 매립지 주변 토지의 이용현황 및 경제현황이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 매립지를 주변 토지의 이용현황 등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을 현행 준공검사일부터 20년이던 것을 10년으로 단축함

바. 매립면허관청의 원상회복 명령권을 신설(법 제54조)

매립면허관청의 원상회복 명령권을 신설하고 면허관청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권한을 부여함

사. 규제의 재검토(법 제61조)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매립의 허가 등을 할 때 권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은 규제개선 차원에서 매 4년이 되는 시점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

아. 양벌규정 개선(법 제65조)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양벌규정을 개선함

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연혁

공포번호	10331	공포일자	2010.5.31	제 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일부개정〕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 개정 내용 – 제39조제1항제9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개정					
공포번호	10599	공포일자	2011.4.14	제 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일부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 개정 내용 – 제22조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개정 – 제39조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변경					
공포번호	10801	공포일자	2011.6.15	제 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일부개정〕 해상교통안전법이 해사안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번호	11020	공포일자	2011.8.4	제 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일부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 개정 내용 – 제13조제1항제6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개정					

- 제47조제2항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6호”로 개정

공포번호	대통령령 23718호	공포일자	2012.4.10	제 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일부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 개정 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제25조제6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개정

공포번호	국토해양부령 474호	공포일자	2012.6.14	제 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일부개정〕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서류 중 지적측량성과도를 발급받을 수 없는 신청구역의 경우에는 해도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유수면 점용·사용료의 납입기한을 납입고지일부터 15일에서 20일의 범위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 정하도록 하여 점용·사용료 납부시기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및 매립면허의 권리·의무에 관한 이전신고를 이전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그 밖에 매립공사의 준공검사 신청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정산서류의 제출을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 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가. 제4조제2항제4호 본문 중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신청구역이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해도)”로 개정

나.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사용료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일부터 15일에서 20일의 범위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 정하는 기한으로 한다.

다. 제14조 중 “별지 제11호서식”을 “그 이전일 또는 상속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으로 개정

라. 제1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4. 공사감리계약서(「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공사감리 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마. 제30조제1항 중 "별지 제24호서식"을 "그 이전일 또는 상속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으로 개정

바. 제32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5. 증명서류를 포함한 총사업비 정산서류(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매립공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사.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신청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4호 중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신청구역이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해도)"로 개정

아. 별지 제12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4. 공사감리계약서(「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공사감리 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자. 별지 제23호서식 제4호 중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을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으로 변경

차. 별지 제29호서식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처리기간
28일

5. 증명서류를 포함한 총사업비 정산서류(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매립공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공포번호	대통령령 23966호	공포일자	2012.7.20	제 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일부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 개정 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 제12조제3항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개정
- 제20조제1항제2호가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개정

공포번호	대통령령 24155호	공포일자	2012.10.29	제 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일부개정〕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 개정 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 제15조제1항 전단 중 “50만원”을 “30만원”으로 개정
- 제20조제1항제2호가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개정

공포번호	11690	공포일자	2013.3.23	제 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일부개정〕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양수산부가 재 신설됨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번호	대통령령 25050호	공포일자	2013.12.30	제 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일부개정〕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 개정 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에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 제74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2014년 1월 1일
  2. 제51조에 따른 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및 총사업비: 2014년 1월 1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 제44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등: 2014년 1월 1일
2. 제24조에 따른 매립면허 신청: 2014년 1월 1일

공포번호	12248	공포일자	2014.1.14	제 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일부개정〕

도로법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 개정 내용

- 제3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5.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공포번호	12476	공포일자	2014.3.18	제 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현행법은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 등에는 매립면허관청은 공유수면에 설치한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공사의 정지를 명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개축ㆍ제거ㆍ수선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ㆍ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매립면허관청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벌칙 규정이 없어 제재수단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는바, 매립면허관청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 내용

- 제6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4. 제52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공포번호	12738	공포일자	2014.6.3	제 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일부개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번호	해양수산부령 127호	공포일자	2014.12.31	제 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일부개정〕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 개정 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

- 제4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방식 등: 2015년 1월 1일
2. 제14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신고: 2015년 1월 1일
3. 제30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양도신고 등: 2015년 1월 1일
4. 제31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2015년 1월 1일

공포번호	13186	공포일자	2015.2.3	제 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일부개정〕

개항질서법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번호	대통령령 26132호	공포일자	2015.3.3	제 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일부개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마리나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마리나항만구역 내에서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던 것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전액을 감면하려는 것임.

◇ 개정 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 2. 법 제13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전액을 감면한다.
- 3. 법 제13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공포번호	13426	공포일자	2015.7.24	제 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 개정 내용

- 제13조제1항제8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229조"를 "같은 법 제147조"로 개정

공포번호	대통령령 26316호	공포일자	2015.6.15	제 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일부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 개정 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 제6조제1항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개정

공포번호	13385	공포일자	2015.6.22	제 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일부개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 개정 내용

- 제1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7.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을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에서 점용·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려는 자가 제8조

제1항제5호의 행위를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 밖에 인수관(引水管)이나 배수관(排水管)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13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13.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 제3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4.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공포번호	대통령령 27245호	공포일자	2016.6.21	제 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일부개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 개정 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가. 제12조제1항제5호 중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을 "구획어업 및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 5의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제33조제5호 중 "구획어업ㆍ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을 "구획어업 및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 6.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공유수면에서 신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공포번호	14503호	공포일자	2016.12.27	제 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일부개정〕

조난 선박의 구난작업 및 재난발생 예방 등을 위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면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

◇ 개정 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면제함

공포번호	해양수산부령 27784호	공포일자	2017.01.05	제 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일부개정〕

민원인 편의 및 규제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

◇ 개정 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가.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지적측량성과도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지적도 등본을 제출하도록 함.

나.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시함

다. 케이블카 등의 설치로 공유수면과 맞닿지 않는 수면 상부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의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방식을 개선함.

〈별표 2 제1호의 산정방식 개선〉

1. 잔교·호안·물양장(이적장을 포함한다)·방파제·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로 매설을 포함한다)를 위한 점용·사용[하천·구거 부지(溝渠)를 주거용으로 점용·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나목 및 다목을 제외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른 사업(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나. 해상 교량의 교각 상판(교각 면적은 제외한다), 해저터널(「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저케이블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로 한다.
	다. 케이블카, 전력선 및 로프형 레저시설 등 공유수면과 맞닿지 않는 수면 상부를 점용·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라.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납부기한을 "15일에서 20일의 범위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 정하는 기한"으로 하던 것을 "납입고지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함.

마. 공유수면 관련 민원처리기간 단축

- 별지 제22호서식(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의 처리기간을 68일에서 60일로 함.
- 별지 제26호서식(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의 처리기간을 21일에서 20일로 함.
- 별지 제28호서식(준공검사전 사용허가 신청서)의 처리기간을 20일에서 18일로 함.

공포번호	대통령령 27784호	공포일자	2017.01.10	제 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일부개정〕

민원인 편의 및 규제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

◇ 개정 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가.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 등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등의 경우 그 기간만료의 1개월 이전까지 연장 사유서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20일 이전까지 제출하도록 연장 사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함.

나. 이행보증금의 반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원상회복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에 반환청구서 및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폐지함.

공포번호	14726호	공포일자	2017.03.21	제 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일부개정〕

최근 수면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해당 설비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풍력 설비 이외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는 공유수면에 설치가 불가능한 구조물로 해석될 여지가 크므로,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대상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추가하여 점용ㆍ사용허가가 가능한 구조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야 하는 경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행법은 이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을 위한 육상양식시설의 경우 그 내구연한이 30년에 달하고, 인수(引水)ㆍ배수(排水)시설도 최소한 15년 이상의 내구연한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생산업에 필요한 인수ㆍ배수시설의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에서 15년 이내로 연장하는 한편,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 등의 방법으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고,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다음과 같이 개정

◇ 개정 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추가하여 점용·사용허가가 가능한 구조물의 범위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1호).

나.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생산업에 필요한 인수·배수시설의 점용·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에서 15년 이내로 연장함(제11조제3호).

다.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 대상에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추가함.

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 징수(제13조제7항 신설)

-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가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내야 할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3 이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마. 분할 준공검사 신청 허용(제18조제1항 단서 신설)

-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실시계획을 승인 받은 자가 실시계획에 따른 공사를 전부 완료하기 전이라도 공사를 완료한 일부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대한 필수적 취소 사유 마련(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52조제1항 단서 신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의무화 함.

사. 매립예정인 공유수면의 공구(工區) 분할 및 공구별 분할 준공 등(제38조제2항, 제45조제1항 후단 및 제53조제2항 신설)

1)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예정인 공유수면의 공구를 구분하여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공구별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사착공일에 매립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이미 준공한 공구를 제외한 매립예정인 공유수면에 대해서만 매립면허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아. 인가·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제39조의2 신설)

-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이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관련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하기 위하여 인가·허가 등 의

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자. 공유수면 매립면허 내용의 이행 관련 보고 등 사유 구체화(제56조제1항)

-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이 공유수면 매립면허 내용의 이행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차. 벌칙 규정(제64조제1호의2 신설)

-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 중 점용 또는 사용의 기간 및 목적 등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카. 매립목적 변경에 따른 매립면허관청 변경(법률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 매립사업의 목적이 농업 및 축산업 이외의 목적으로 변경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면허관청인 경우라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변경된 것으로 명문화함.

II

공유수면 관리

1. 공유수면 관리 법령 해설

2. 공유수면 관리 관련 질의 회신

3. 법령해석

1. 공유수면 관리 법령 해설

가 공유수면의 관리 목표

○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하도록 함

- 따라서 공유수면의 이용은 공유수면의 보전 및 보호가 먼저 고려되어야 함

나 공유수면 관리청

○ 공유수면 관리청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청인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였으며 관리청은 아래 표와 같음

- 단,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제3항 및 제438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특례)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구 분	관 리 청 (법 제4조)	위임관리청 (법 제60조 및 영 제73조)
(1) 배타적경제수역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2) 항만법에 의한 무역항 ○ 국가관리항 ○ 지방관리항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3) 항만법에 의한 연안항 중 부산남항	해양수산부장관	부산광역시장
(4) 항만법에 의한 연안항(부산남항 제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5) 배타적경제수역과 항만구역 외 공유수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8조에 따라 항만법에 따른 제주지역 무역항·연안항의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임

공유수면의 범위(다른 법률과의 관계)

연안관리법 제2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제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해안선 : 해면이 약최고고조면(略最高高潮面)에 달할 때 육지와 해면과의 경계)

다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

1) 개요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은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는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함

○ 국가 또는 지자체의 경우 개인과 구별하기 위하여 "허가" 대신 "협의 또는 승인"이란 용어를 사용하나 절차 및 법적성격은 허가와 동일함

○ 공유수면관리청이자 사업시행자인 시·군·구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자 할 때도 사업시행부서에서 허가구비서류를 갖추어 공유수면관리부서에 제출하고 개인이 신청한 허가와 동일하게 관계기관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야 함

※ 공유수면법에 의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하지 않고 공유수면 관리부서의 협조(싸인)만을 받을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로 볼 수 없음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대상을 법 제8조에서 11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나 규칙 제11조제2항 별표 2에서는 점용·사용료를 받는 유형을 10가지로 분류하여 요율을 정하고 있음

○ 점용·사용 목적은 11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분류하여 점용·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규칙 제11조제2항 별표 2의 점용·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점용·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함

☞ 물의 인수·배수를 위하여 관로를 매설하는 경우와 같이 2개 이상의 점용·사용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제1호·제5호에 따라 점용·사용을 허가토록 하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점용·사용료는 규칙 별표 2의 제1호 및 제3호에 의거 각각 부과·징수함

☞ 공유수면에서 모래 등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제6호에 의거 점용·사용허가 하고 점용·사용료는 규칙 별표 2의 4호에 의거 채취료만 부과·징수함

2) 점용·사용허가(협의 또는 승인) 대상

점용·사용허가(협의 또는 승인) 대상

○ 부두·방파제·교량·수문·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만,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 중 다음에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함

- 항만 및 어항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에 필요한 건축물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관광숙박업)

- ■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연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의 기본방향 : 연안경관제도 시행 및 건축물·시설물의 관리체계 구축

- ■ 연안 개발계획 및 사업에 대한 연안경관제도 마련
  - • 연안개발사업에 대한 연안경관 검토사항을 연안관리조례에 포함
  - • 국가, 지자체, 개발사업자 등에 관리 의무 부여

■ 생태성, 쾌적성, 친수성, 안전성 등을 고려한 연안경관 평가 및 관리 지침(가칭) 마련

• 연안 개발사업 추진 시 개별 건축물 입지가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

■ 동서·남해안의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해 연안경관 평가체계 구축

• 연안경관 평가결과에 따라 건축물, 시설물 등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

■ 연안경관 유형(항만·어촌·해수욕장·생태 경관 등)을 고려한 경관관리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

• 연안관리지역계획에 포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풍력설비

–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송전선로 및 그 부대설비

※ 해상공작물(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적용 질의 회신(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건축58550-1482, '99.4.26)

【 질의요지】

지번이 없는 공유수면 아래 해상공작물(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 바다에 파일을 박아 벽과 기둥, 지붕이 있는 공작물을 설치
• 부선형태의 구조물 위에 벽과 기둥, 지붕이 있는 공작물을 설치
• 해상유람선 등 이미 벽과 기둥, 지붕이 있는 구조의 선박(기관은 제외)을 설치하는 경우

【 회신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정착한다는 것은 실질적, 임의적 이동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질적 이동의 실익이 없어서 상당한 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 질의대상 공작물(건축물)의 모두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모두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나, 축조된 선박 등을 활용하여 건축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건축법령상의 모든 건축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개정 건축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과 같이 일부규정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음

○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사유지도 포함)를 수면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 포락지라 함은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곳이어야 함

-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는 곳
- 토지조성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곳
- 토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토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 점용·사용허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첨부서류를 구비
  - 포락지에 관한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함)
  - 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당해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만 한함)로서 이 경우의 예로서는
    - 도로가 포락되어 당해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도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 묘지에 인접한 토지가 포락되어 당해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묘지의 적정한 보호·관리가 곤란한 경우
    - 건축물 기타의 시설물에 인접한 토지가 포락되어 당해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서는 건축물 기타의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가 곤란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음

○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다음과 같은 행위는 제외함

- 활어 도매·소매점영업(활어를 운반하는 차량을 포함한다)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 공유수면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역의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그 구역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 공유수면관리청이 관로의 형태·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 기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허가기준

○ 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협의·승인)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제12조)이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협의·승인)하여서는 아니됨

☞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라 함은 당해 점용·사용허가로 인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당해 공유수면 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공유수면 또는 인접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 할 수 없게 되는 권리를 말함

–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동의한 경우

- 국가나 지자체가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려는 경우

※ 대통령령(제12조제2항)이 정하는 공익사업

ㅇ 국방에 필요한 시설을 하는 사업

ㅇ 해일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파제·제방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점용·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신청이 경합(먼저 접수된 신청서의 법정처리기간내에 다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임)될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허가함(영11조)

ㅇ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신청한 것

ㅇ 해양수산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것

ㅇ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

ㅇ 인접토지 소유자로서 실수요자가 신청한 것

3) 점용·사용허가(협의·승인) 절차 (법 제8조부터 제12조, 영 제4조부터 제13조, 규칙 제4조부터 제11조)

점용·사용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침

ㅇ 신청(협의) → 심사 → 협의 → 허가(승인) → 고시 및 기록유지 → 허가의 변경 → 허가기간 종료 및 계속사용자 처리

점용·사용허가(협의·승인)의 신청

ㅇ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 신청위치, 점용·사용의 목적, 사업추진계획(사업비, 공사추진계획), 해양오염 방지대책, 안전대책, 공작물의 존치기간, 공작물의 원상회복계획, 모래·규사 등 채취 시는 채취 계획량 등

※ 점용·사용의 목적, 규모 등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자세히 작성 필요

-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 규칙 제4조제2항 제2호 별표 1의 작성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함)

※ 설계도서의 종류 : 위치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평면도 등

-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한다)

- 신청구역을 표시한 신청구역 또는 신청구역과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등본(신청구역이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는 해도).

-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권리자(법 제12조, 영 제12조) 해당여부 판단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대상수역에 인접한 구역 뿐만 아니라 점용·사용허가 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구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을 말하나 단순히 인접 또는 인근에 위치하였더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면 권리자가 될 수 없음

■ 따라서, 당해 점용·사용허가로 피해가 발생하여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권리자로 봄

■ 공유수면 관리 규정상 권리자인지 여부는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한 공유수면의 주변여건, 목적, 인접토지(공유수면) 사용의 제한 및 피해발생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판단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
  - ■ 공유수면 관리 규정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대상사업의 범위는 없으나 광업법에 의한 광물을 채취하거나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법령에 의한 점용·사용허가를 별도로 받거나 공유수면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 이 경우 관리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을 첨부토록 하여야 함
  - ■ 광업법 및 골재채취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
    - 광업법에 의한 광업중 해안에서 규사채광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으로서 공유수면 관리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면적이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경우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기타 지역의 경우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골재채취법에 의한 모래를 채취하는 골재채취업으로서 채취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5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
-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

허가(협의·승인)신청 사항의 심사

○ 관리청은 우선 법령 적합 여부의 심사와 신청서류가 누락되었는지 여부, 자격 있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상 지장 여부, 장래 개발계획 저촉여부 등을 심사

- 필요 시 신청서류 보완을 요구하거나 점용·사용허가가 불가한 경우 관계기관 협의없이 불허 또는 반려 조치를 취함

- 신청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하여야 함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 심사결과 보완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현장조사 후 공유수면조사서를 작성,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 현장조사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협의시 유의사항

- 공유수면관리청은 당해 점용·사용허가 신청이 법령상 적합하고 구비서류가 완비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1조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신청 일건서류와 공유수면조사서 및 관리청의 의견을 첨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관계기관과 협의 시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관리지역계획, 항만기본계획,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협의를 하여야 함
- 다만,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행위 중 단순 기간연장허가에 대하여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협의대상을 축소시킬 수 있으나 해양오염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조선소선가대 설치 및 모래(규사)채취를 위한 기간연장허가는 반드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점용·사용허가 의제를 위한 협의

○ 골재채취법·광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법에 의한 점용·사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과 반드시 협의

○ 당해 관리청은 이를 공유수면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협의의견을 의제처리를 위한 협의요청기관(부서)에 회신하고 의제처리기관(부서)에서는 이를 허가조건 등에 반영하여야 함

- 특히, 지자체의 경우 건설과에서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 시 공유수면 관리부서인 해양수산과 등에 협의하여야 하며 해양수산과는 이를 다시 공유수면법에 따라 반드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회신하여야 함
- 국가나 지자체가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점용·사용하기 위해 협의 또는 승인을 요청한 경우에도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 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 광업법에 따라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광물인 규사채취와 무관하게 모래 등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 골재채취법 등 관련법에 의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광업권이 설정된 구역에서 광업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만을 받은자는 광물(규사)을 채취할 수 없음
- 공유수면 점용·사용과 관련하여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역이용협의 결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해양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이유로 부정적인 협의의견(부동의)이 제시된 경우에는 동 협의의견에 따라 그 이유를 분명히 하여 점용·사용을 불허하여야 함
-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신청서 등 일건서류와 함께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협의기관이 협의의견 제출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업무 처리 규정 제11조[별지 7호 서식]에 의한 현장조사서에 점용·사용허가에 따른 의견(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에 대한 의견 기술)을 작성하여 협의기관에 송부하여야 함(협의기관에서 협의의견 제출에 도움이 되도록 가능한 사진도 함께 송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승인)

○ 공유수면관리청은 관계기관 협의결과와 공유수면관리·운영상 지장여부 등을 검토하여 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허가하고 허가서를 교부함

- 점용·사용허가내용(피허가자 인적사항, 장소, 면적, 목적, 기간, 점용·사용의 유형, 실시계획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및 허가조건
- 허가기간은 공유수면 관리·운영상 지장여부, 장래개발계획, 인공구조물의 유형, 주변여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참조하여 공유수면법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기간 이내에서 점용·사용을 허가하여야 함

○ 허가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1호, 2호 및 4호의 경우는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인정하여 점용·사용허가, 협의 또는 승인하여야 하나, 국가 또는 공공용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음

1.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재생에너지설비,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인공구조물 : 30년
2. 제1호 외의 인공구조물 : 15년
3. 제8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사용: 5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함.
   가.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용、사용이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설비(電源設備)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경우: 30년
   나.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용、사용이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영위하거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종자생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 15년

☞ 점용·사용허가는 원상회복을 전제하므로 허가기간을 '영구'로 할 수 없음
공유수면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자연공물이므로 특정인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영구히 점용·사용토록 하는 것은 공유수면 관리 취지에 어긋남

○ 점용·사용허가 면적은 당해 점용·사용에 직접 공여되는 공유수면의 면적(직접 점용면적)과 그 주변의 공유수면 중 당해 점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타인의 점용·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공유수면의 면적(간접 점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함(업무 처리 규정 제15조 별표 4에 의함)

○ 점용·사용의 목적은 당해 점용·사용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목적은 구체적이고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점용·사용의 목적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할 경우 피허가자는 공유수면을 임의대로 점용·사용이 가능하므로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 및 보전에 위배됨

○ 허가조건 부여

-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조건란에 또는 "붙임참조"로 기재 후 별지에 다음의 허가조건을 기재한 후 허가증과 함께 점용·사용허가신청자에게 교부
- 허가조건
  - 점용·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 실시계획승인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 원상회복 및 오염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의견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따른 권리자·수산자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
  - 기타 공유수면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 부관(허가조건)의 한계

-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안됨
- 행정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의 범위를 일탈하여서는 안됨
-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함. 즉,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가혹한 부관은 아니됨

4) 실시계획승인 또는 신고 (법 제17조, 영 제20조, 규칙 제15조·제16조)

"실시계획승인"은 허가를 받은 범위 내에서 공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하는 제도로서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경우 구 공유수면관리법에서 '99.8.9부터 도입시행함

실시계획승인 또는 신고 대상행위

○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실시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점용·사용 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함(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승인은 1년, 신고는 6개월의 범위에서 1번만 연장 가능)

○ 실시계획 승인 대상

-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 다만,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로서 점용·사용기간이 6개월 이내로 한정된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관리청이 점용·사용허가 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신고의 대상임

- 법 제8조제1항제2호(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및 제3호(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중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행위
  - 다른 토지 또는 공유수면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관리청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법 제8조제1항제4호(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항 중 인공구조물의 규모의 100분의 10이상의 변경

-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항 중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항 중 공사기간을 6개월 이상 연장
  -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만약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공

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를 다시 받아야 함. 이 경우 관계기관 협의 등 새로운 절차에 따라 점용·사용허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실시계획의 신고대상

- 실시계획승인대상 이외의 모든 점용·사용행위는 실시계획의 신고대상임

실시계획승인 신청 또는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

○ 실시계획승인(신고) 신청 또는 변경승인(신고)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당초 허가 또는 변경허가와 달라진 경우에 한함)
- 점용·사용허가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1 지형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 당초 허가 또는 변경허가와 달라진 경우에 한함)
-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
- 공사감리계약서(「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공사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

☞ 공사감리대상 공사의 범위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33조의 규정에 의함

- 실시설계도서(다만, 건축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함)
  -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가 작성한 것
  - 공유수면에 떠있는 건축물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 예정공정표
- 점용·사용허가 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건축물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설계도서의 타당성, 건축물의 안전성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함(다만, 공유수면관리청이 검토를 의뢰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의 가설 건축물 등과 같이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공유수면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아니할 수 있음

○ 공유수면에 떠있는 건축물 : 선급법인(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실시계획승인증(신고확인증) 교부

○ 관리청은 실시계획승인의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점용·사용허가 조건을 충족하는 등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승인증(신고확인증)을 교부함

준공의 확인

○ 관리청은 실시계획승인(신고)을 받은 자가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법 제18조 및 규칙 제17조)

5) 고시 및 기록 유지 (법 제8조제6항, 영 제9조)

- **점용·사용허가를 한 관리청은 다음 사항을 고시하여야 함**

  ○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 점용·사용의 목적

  ○ 점용·사용의 장소

  ○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점용·사용허가(협의·승인), 실시계획승인(신고), 준공확인 사항은 규칙 제10조 별지 제9호 서식의 공유수면관리대장 및 연안관리정보시스템에 기록(입력) 및 유지하여야 함**

6) 점용·사용허가(협의·승인)사항의 변경

-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협의·승인)받은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협의·승인)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 허가(협의·승인)를 받아야 함**

  ○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협의·승인) 대상

  - 점용·사용허가(협의·승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 점용·사용허가의 목적 또는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용도 또는 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점용·사용기간의 단축 시 조치하여야 할 사항(규정 제18조)

■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거나 인공구조물 등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

■ 나머지 기간에 대한 점용료·사용료 정산 및 환불 조치

○ 첨부서류

- 점용·사용허가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
-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 변경된 설계도서(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경우에 한함)
-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관리청은 점용·사용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당초 허가 시와 동일하게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함

점용·사용변경허가를 받은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실시계획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함

○ 인공구조물의 규모 또는 총공사비의 100분의 10이상의 변경

○ 공사기간 6개월 이상의 연장

7) 허가기간이 종료되는 자 및 계속 점용·사용자에 대한 조치 (영 제8조, 규칙 제8조, 규정 제19조)

- 관리청은 점용·사용 허가기간이 종료되기 전 60일에서 30일 사이에 공유수면 점용·사용연장에 관한 안내서(규정 제19조 별지 제9호 서식)를 점용·사용자에게 발송하여야 함

- 계속하여 점용·사용(기간연장)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서식만을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법 제8조제4항·제9조, 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협의·승인) 시에도 반드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점용·사용을 종료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21조 및 영 제22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라 공유수면 점용료 · 사용료

1) 개 요

- 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허가시점을 기준으로 허가기간에 대하여 그 유형과 면적, 형태(직접 또는 간접)에 따라 점용·사용하는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점용료·사용료를 부과 및 징수함

■ 점용료·사용료는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징수하되 분할납부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매년 인접토지 가격의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야 함

2) 점용료·사용료의 감면(법 제13조, 영 제14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2분의 1)를 감면함

○ 점용료·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해양소년단연맹
  -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에 따른 박람회 관련시설을 설치하는 자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해당)

  ☞ 상기자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경우 사업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점용·사용하고자 하는 개별사업의 성격을 파악하여 공익목적의 비영리 사업인 경우에 한하여 점용·사용료를 면제하여야 하고 수익사업의 경우에는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 공유수면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로서 그 매립공사에 따르는 흙·돌의 채취·준설 등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을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에서 점용·사용하는 경우(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려는 자가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를 위해 해당 어업구역 밖에 인수관이나 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같은 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 항로표지법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물질의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방제장비 또는 자재(오일휀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 점용료·사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하는 경우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마라나항만구역 내에서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전액 감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 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익단체가 공익목적의 비영리 사업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3) 점용료·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 해양수산부장관의 점용·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는 국가의 수입으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점용·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는 해당 지자체의 수입으로 함

- 산정기준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부과하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로 함('17.1.10. 개정)

- 점용료·사용료는 점용·사용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사용허가 시 이를 부과하고, 점용·사용허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는 점용·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31일까지 징수하고, 그 이후의 점용료·사용료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함

- 점용료·사용료의 1회 납부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납부잔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를 가산하여야 함

  ☞ 점용료·사용료가 30만원을 초과하면서 점용·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나 입법취지상 1년에 4회에 걸쳐 분할납부가 가능하므로 3개월 미만의 점용·사용기간인 경우에는 일시 납부토록 하여야 하며 9개월인 경우 3회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음

- 점용료·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매 회분 개시후 1개월 이내에 이를 징수하여야 함

- 납입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함

점용료·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점용료·사용료를 계속 체납하는 경우 피허가자에게 독촉, 허가조건 미이행에 따른 허가취소 의사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허가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4)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

점용·사용하는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

○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가격"이란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함

○ "토지의 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함.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관리청이 결정함

○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그 가격을 산정함

-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 이 경우 점용·사용할 공유수면의 연장선내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토지로서 공시지가 또는 개별 토지가격이 형성된 가격
-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번지 또는 지번을 말함)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함. 이 경우 인접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감안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

점용·사용료 산정기준(규칙 제11조제2항 "별표 2"관련)

구 분	산정방식(단위 : 연간)
1. 잔교·호안·물양장(야적장을 포함한다)·방파제·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로 매설을 포함한다)를 위한 점용·사용[하천·구거(溝渠) 부지를 주거용으로 점용·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해상 교량의 교각 상판(교각 면적은 제외한다)과 해저터널(「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른 사업(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나. 해상 교량의 교각 상판(교각 면적은 제외한다), 해저터널(「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저케이블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로 한다.
	다. 케이블카, 전력선 및 로프형 레저시설 등 공유수면과 맞닿지 않는 수면 상부를 점용·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조선용 선가대(船架臺) 또는 선박의 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장안벽(艤裝岸壁), 선거(船渠) 등의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점용·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3. 물을 끌어 들이기 위한 점용·사용	가. 전기사업용수 ㎥/초당 연액 20만원 나. 가목 이외 용수 관의 지름 100mm 이하: 관의 지름 10㎜당 월액 1만원 관의 지름 100mm 초과 200mm 이하: 월액 12만원 관의 지름 200mm 초과 300mm 이하: 월액 16만원 관의 지름 300mm 초과 400mm 이하: 월액 22만원 관의 지름 400mm 초과 500mm 이하: 월액 28만원 관의 지름 500mm 초과 600mm 이하: 월액 38만원 관의 지름 600mm 초과 700mm 이하: 월액 50만원 관의 지름 700mm 초과 800mm 이하: 월액 60만원 관의 지름 800mm 초과: 월 최대 취수 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천㎥당 200원씩 적용한 금액 초당 끌어들이는 물의 양 $= \frac{\text{관의 지름}2 \times \text{관내유속(m/sec)}}{146^2 \times 60}$
4.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매립용·성토용 또는 골	가.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

구 분	산정방식(단위 : 연간)
재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채취를 위한 점용·사용	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고시한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조사가격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20 1)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2)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가 조사한 가격 3) 골재 관련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조사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4)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2개 이상의 가격조사기관에서 산출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나.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골재채취단지관리자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골재채취단지의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산술평균한 값의 100분의 20 다.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채취행위가 동시에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가목의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0
5. 식물의 재배 또는 벌채를 위한 점용·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다만, 인접한 토지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근의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25까지 낮출 수 있다.
6.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다만,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으로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5로 한다.
7.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물채취 및 탐사를 위한 점용、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다만, 광물채취행위가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로 하되, 광물을 채취할 때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흙·돌·모래·자갈을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가산적용한다.

구 분	산정방식(단위 : 연간)
8. 준설토를 해양에 배출하기 위한 점용·사용(「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배출해역에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준설토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당 100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한 목적 외의 점용·사용	가. 스케이트장·운동장·수영장·대기장·탈의장·골프장을 위한 점용·사용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나. 그 밖의 경우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점용·사용에 따른 간접 점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비고

1. "토지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결정한다.
2.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3. 위 표 제4호가목의 도매가격은 채취지역에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에 관한 가격조사는 둘 이상의 지역(채취지역 관할 시·군·구를 말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인접한 시·군·구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조사가격을 시·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고시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해당 시·도지사가 해당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
4. 점용료·사용료를 정할 때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월할(月割)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일할(日割)로 계산한다.
5. 점용면적에 1㎡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공유수면관리청에서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한 결과 점용료·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흙·돌·모래·자갈·준설토 등의 채취와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의 경우 점용료·사용료는 흙 등의 채취가격과 인수관·배수관의 지름에 따라 부과·징수함

○ 흙·돌·모래·자갈·준설토 등을 채취하는 경우 : 채취량을 기준으로 징수

○ 물의 인수·배수의 경우 : 용수사용량 및 인수관·배수관의 지름을 기준으로 징수하되 인수·배수용 관로 등이 차지하는 면적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별도로 징수

점용료·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산정함

○ 인접토지의 공시지가 등이 상승 또는 하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되, 동일한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사용하는 자에 대한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토지가격의 변동으로 전년도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조정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조정액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조정산식(시행령 제17조 관련)

점용료·사용료의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사용료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	전년도 점용료·사용료+[전년도 점용료·사용료 ×{10/100+(증가율−10/100)×3/10}]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	전년도 점용료·사용료+[전년도 점용료·사용료 ×{13/100+(증가율−20/100)×1/10}]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	전년도 점용료·사용료+[전년도 점용료·사용료 ×{16/100+(증가율−50/100)×6/100}]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	전년도 점용료·사용료+[전년도 점용료·사용료 ×{19/100+(증가율−100/100)×3/100}]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	전년도 점용료·사용료+[전년도 점용료·사용료 ×{22/100+(증가율−200/100)×1/100}]
500퍼센트이상	전년도 점용료·사용료+[전년도 점용료·사용료 ×{25/100+(증가율−500/100)×5/1,000}]

과오납된 점용료·사용료의 정산

○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하여야 함(토지의 가격이 행정청의 착오로 다시 결정된 경우도 포함)

-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가산하여야 함

마 공유수면의 보전과 관리

1) 원상회복(법 제21조, 영 제22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은 기본적으로 원상회복을 전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점용·사용자가 자기의 책임으로 원상회복해야 함. 다만,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한 경우나 관리청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승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점용·사용의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한 경우

○ 점용·사용의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사용한 경우

○ 점용·사용기간이 끝난 경우

○ 점용·사용의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과 관계있는 사업이 폐지된 경우

○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의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이 취소된 경우

-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 조치를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점용·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관리청의 승인을 얻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시설물·흙·돌, 그 밖의 물건(원상회복의 대상물)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시켜야 함.

  ○ 이 경우 점용·사용자에게 미리 위치·종류·수량·귀속시기 등을 통지하되, 점용·사용자 등을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 바닷가 실태조사 결과 및 처리방안 통보 참조(연안계획과-4753, '10.12.10)

2) 방치선박 등 장애물 제거 (법 제6조, 영 제3조, 규칙 제3조, 규정 제5조부터 제9조)

- 관리청은 공유수면의 효용을 해하거나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이나 방치된 폐자재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이를 제거하도록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명령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다시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방치선박처리 독촉장을 송부하여야 함

- 방치선박등 장애물 제거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고 관리청이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제거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부담시킴

○ 관리청이 제거처분 시 소유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

- 방치된 선박의 명칭 및 내용
- 방치된 선박의 위치
- 제거예정일시
- 제거방법

방치선박이나 폐자재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하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청이 14일간 공고한 후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제거하고 그에 소요된 비용은 그 선박이나 폐자재 등의 공고를 통하여 공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

처분하고자 하는 물건 등의 가액이 공매비용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매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공매에 의한 처분시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에서 당해 물건 등의 제거와 공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뺀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함

○ 선박이나 폐자재 등을 공매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사항

- 공매할 방치선박 등의 명칭 및 내용
- 공매의 장소 및 일시
-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3) 공익을 위한 처분 및 허가 취소(법 제19조·제20조)

- 관리청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허가의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사 유	조 치 내 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에 따른 부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점용료·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실시계획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점용·사용의 정지,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돌 또는 그 밖의 물건의 개축·이전 등의 필요한 조치 ○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점용·사용허가 등을 취소하여야 함
○ 관계인·관계문서 등의 조사, 토지 등에의 출입,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점용·사용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과 관계있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된 경우	
○ 관련산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의 변경 등 공유수면과 직접 관련된 상황이 변경되어 필요한 경우 ○ 공유수면의 보전 및 재해 예방 등 공공의 피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수문이나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허가의 취소, 점용·사용의 정지, 인공구조물, 시설물 및 그 밖의 물건의 개축·이전 명령

- **허가를 취소한 이후 인공구조물 등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행위는 당연히 허가를 받지 아니한 행위가 되고 그에 따른 처분이 따르게 됨**

> ☞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중지 등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한 판례(대법원 93누5635)
> -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의 사유가 있더라도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

4) 금지행위 및 법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 (법 제5조·제62조부터 제65조)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됨.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라 함은 허가를 받은 경우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를 말함. 다만, 이 경우에는 처벌대상은 아닐지라도 손해배상 또는 장애물 등의 제거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님**

  ○ 폐기물, 폐유, 폐수, 오수, 분뇨, 가축분뇨, 오염토양, 유독물, 동물의 사체, 폐타이어, 폐스티로폼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

  ○ 수문(水門) 또는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개폐(開閉)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 법령 위반자에 대하여는 사법당국의 직권으로 또는 관리청의 고발에 의하여 사법당국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처벌하게 되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는 물론 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을 받게 됨. 다만, 법인 또는 그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함

벌 칙	법령위반자 (처벌대상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62조)	○ 공유수면에 폐기물·폐유·폐수·오수·분뇨·가축분뇨·오염토양,유독물, 동물의 사체, 그 밖에 폐타이어, 폐스티로폼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한 자 ○ 점용·사용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64조)	○ 공유수면관리청의 방치선박 등의 제거, 점용·사용허가 등의 취소 및 공익을 위한 처분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에게 점용·사용하게 한 자 ○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자

5)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66조, 영 제75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관리청이 부과·징수하며,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음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9조(제3호 주소변경은 제외)를 위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호	100만원
2.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의 이전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2호	100만원
3.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3호	100만원
4.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 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4호	200만원
5.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5호	100만원

☞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행정청이 청문대상 외에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

6) 조사 및 결과 처리(법 제55조, 규칙 제41조)

관리청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무원증 등 신분증을 내보이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자의 사업장(이 경우 허가여부를 불문함), 기타 공유수면관리상 취약지구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함

○ 실시계획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공사의 준공사항

○ 권리·의무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실태 및 관리상태

○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사항

○ 기타 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조사결과에 따라 허가의 취소, 점용·사용의 정지, 장애물 등의 제거 명령, 시설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이전명령, 원상회복명령 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나 수면에 출입할 수 있으나, 그 점유자에게 관계공무원의 성명, 출입일시, 장소, 조사 또는 측량목적을 7일 전까지 통지하되 일출전·일몰후에는 그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없음

- 관리청은 토지 등에 출입하거나 토지 등을 재료적치장·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바 기타 사항

1) 권리·의무의 승계(법 제16조, 영 제19조)

- 점용·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그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승계함. 이 경우 법인의 발기인이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설립된 때부터 그 권리·의무를 승계함

- 점용·사용허가에 관한 권리·의무를 이전 또는 상속받은 자는 그 내용을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는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로 봄

2) 손실보상 등 권리의 구제(법 제57조, 영 제71조)

관리청이 다음의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 국가나 지자체가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점용·사용으로 손실을 입은 해당사업을 시행하는 자

○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 조사·측량 등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 관리청

손실보상은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를 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재결에 따름

○ 재결신청인 및 그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 손실발생의 내용

○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그 상대방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의 내용

○ 협의의 경위

3) 공유수면 관리실태의 보고
(법 제55조·제56조, 규칙 제43조, 규정 제48조·제50조)

- 관리청은 공유수면의 실태 등을 조사한 후 다음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공유수면 관리의 일반현황 : 매 반기별

  ○ 방치선박 등의 현황 및 방치선박 등의 제거실적 : 매 분기별

-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급 지자체의 장을 경유하여 보고함

- 관리청이 보고하는 공유수면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관리권을 위임받은 해역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되어 관리하는 해역을 포함함

2. 공유수면 관리 관련 질의 회신

※ 아래의 공유수면 관리 관련 질의·해석은 해석 당시 법률 등을 토대로 작성된 사항으로 이후 관련 규정개정 등으로 해석이 달라 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세부 내용	
	질의 내용	답변 시기
가. 공유수면에서의 적용법률 및 공유수면의 정의·범위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유수면에서 먼저 적용할 법률	1999. 2.18
	공유수면(바다)에서 매립 및 지반개량용 토석·모래채취시 적용법률	1999. 8.13
	유실된 사유지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999. 11. 19
	사유토지로 물이 흐르는 경우 공유수면관리법 적용여부	2000. 1.21
	공유수면관리법상 포락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0.3.7
	바다모래 운반선 공유수면관리법 적용 여부	2000. 3.13
	광업법 및 골재채취법과 공유수면관리법과의 관계	
	공유수면내 온배수 저감시설 축조시 적용법률	2000. 8.1
	지목은 하천이나 물이 흐르지 않는 국유지의 공유수면 여부	2014. 1.7
	구거구역의 적용 법령	2014. 3.17
	집단계류지 내 방치선박에 대한 공유수면법 적용가능 여부	2014. 5.21
	검사수사지휘에 따른 해운 및 항만운송 관련 적용법령	2014. 5.21
	공유수면의 경계구획	2014. 5.26
	폐하천부지에 대한 법 적용 여부	2014. 8.8
	폐하천부지에 대한 하천법 적용 여부 (추가사항)	2016. 11. 25
	지방어항 내 포락지 토지 조성 적용 법률	2014. 9.18
	바다로 된 토지(포락지) 해당 여부 및 증명 방법	2014. 10.14
	공유수면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의 귀속 절차	2014. 10.17
	공유수면 점·사용을 통한 연안정비사업 지구의 사후관리방안	2014. 10.24

구분	세부 내용	
	질의 내용	답변 시기
	국가하천 내 침몰 준설선 인양 등 조치의 공유수면법 적용 여부	2014. 12.15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대상지 공유수면에 대한 제3자의 임시사용	2015. 3. 25
	물이 흐르지 않는 소하천구역 외측 부지 및 국유지 공유수면법 적용 여부	2015. 4.1
	구거지역에 대해 공유수면매립법과 농어촌정비법중 적용 법률	2015. 5. 11
	야영장업 운영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지역 적용 법률	2015. 7. 28
	폐천부지 점용허가 관련 적용법	2015. 11.30
	유지 내 인허가 행위에 대한 공유수면법 적용 여부	2016. 3. 16
	공유수면 변상금 부과 처분취소 판결에 따른 법 적용	2016. 3. 21
나. 공유수면관리법 적용배제 및 의제	수산업법령상 면허된 어업에 필요한 범위	1999.12.10
	어항구역안의 공유수면관리법 적용범위	1999.12.10
	수산업법상 면허된 어업에 필요한 범위	2000.1.21
	유지에 설치하는 부선(계류장)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대상 여부	2015. 6.25
다. 공유수면의 관리(관리청)	공유수면점용거리(면적) 등에 관한 질의	1999. 6.3
	공유수면관리법상 관리청의 범위	2000. 3.25
	공유수면의 지번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담당 소관청	2014. 12. 16
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관련사항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에 따른 오탁방지막설치시 공유수면점용허가 및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 여부	1998. 3.11
	공유수면(구거)점용허가 관련 질의	1998. 6.9
	공유수면점·사용허가관련 질의	1999. 8.3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점·사용허용 범위	1999.9.28
	개인소유토지인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고자 제방을 설치하는 경우 점·사용 허가대상 여부	1999.10.4
	국유인 구거의 점·사용행위	1999.12.10
	공유수면에 설치한 건축물은 건축법 등에 의거 별도 허가 여부	2000.1.21

구분	세부 내용	
	질의 내용	답변 시기
	활어차 등에 해수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점·사용허가 대상 여부	2000. 1.21
	활어수족관 공급용으로 인·주수허가 받았으나 해수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2000. 2. 2
	공유수면관리법상 점·사용허가대상 여부	2000.2.28
	공유수면관리법상 점·사용허가대상 여부	2000. 3.13
	소규모어항에 설치된 선착장에 여객선 등이 기항하는 경우 점·사용허가 대상 여부	2000. 3.29
	개인소유의 간석지도 공유수면 점사용 대상 여부	2012. 6.15
	허가받은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 신규 설치	2012.12.18
	양식장의 해수판매행위 시 점용·사용 허가 필요 여부	2014. 1.8
	어업 면허구역 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여부 및 사용료 징수 위반 여부	2014. 2.26
	수상레저사업 목저의 공유수면 점·사용 시 허가신청 주체	2014. 2.17
	공유수면 점용허가 기간 중 인접사유지의 소유자 변동 발생시 업무처리 방안	2014. 7.31
	인배수를 통한 염전 조성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대상 여부	2014. 10.16
	해상 SEP BRAGE이용 시추작업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대상 여부	2014. 10.24
	항내 파제제 설치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 대상 여부	2015. 2.9
	점용·사용허가의 별도 부여가능 여부 및 공용이용 해역의 특정인 점용·사용허가 가능 여부	2015. 3.20
	사고선박 유류이적 행위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대상 여부	2015. 4.2
	공유수면 점·사용지역의 허가기간 및 피허가자의 변경	2015. 7.7
	토지 무등록 매립지 전면 공유수면에 부선 접안 시 점용·사용 대상 여부	2015. 11.9
	선박의 장기간 묘박행위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취득의무 관련	2015. 11.16

구분	세부 내용	
	질의 내용	답변 시기
	해수 인입 취수관 설치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대상 여부	2016. 1.13
	육상 새우양식장 조성관련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대상 및 권리자 동의 여부	2016. 1.29
	해저면 밑 관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대상 여부 및 징수 기준	2016. 2.1
	규사채취 목적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광업권 존속기간보다 긴 허가기간 부여 가능 여부	2016. 3.26
	연안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유수면에 건축물 설치 목적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가능 여부	2016. 3. 25
	태양광 발전설비의 공유수면 설치 시 점용·사용허가 가능 여부	2016. 4.14
	바다낚시터 해수 인·배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대상 여부	2016. 4.15
	어항구역 내 타 법령에 의한 교량 등 시설 설치	2016. 4.22
	간석지 대상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한 타 지자체 선례	2016. 5.9
	공유수면 내 무단 점용시설물 무상귀속 처분관련 질의	2016. 6.15
마.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관련 사항	채광계획변경인가에 따른 공유수면점용허가기간 연장 허가에 대한 질의	1998. 2.24
	공유수면 연장허가처리의 적정여부 질의	1999. 2.27
	접안시설용으로 점·사용허가받은 구역에서 규사를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2000. 2. 8
	허가받은 시설외에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점·사용허가 대상 여부	2000.3.13
	특화사업자가 사업자 변경 없이 사업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경우 사업권의 임대·위탁 가능 여부	2014. 4.21
	마리나 공사 후 직접 점용면적만을 대상으로 점용면적 변경 신청 허가 가능 여부	2014. 6.3
	접안시설로 이용되는 공유수면에 대해 이용선박의 변경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필요 여부	2014. 6.22

구분	세부 내용	
	질의 내용	답변 시기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신고 없이 법인명칭 변경 시 과태료 부과 여부	2015. 4.9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시 해역이용협의 여부	2015. 8. 10
바. 허가의 기준 및 권리자의 범위	광업권이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자인지 여부	1999. 1.28
	공유수면관리법령상 권리자	1999.11.9
	구거에 인접한 토지소유자가 권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1999.11.15
	공유수면관리법상 권리자 관련	1999.12.16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구역 인접 토지 소유자 권리자 대상 여부	2000.2.21
	공유수면(구거) 점·사용 권리자 범위	2000. 2.29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 및 어업권자 동의 필요 여부	2011.3.17
	공유수면을 이용하여 도로개설 시 인접토지 권리자 동의 필요 여부	2014. 7.24
	점·사용 허가지역 임시 주차장 사용자의 피해 예상 권리자 해당 여부	2014. 9.24
	공유수면 위 데크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2014. 10.15
	점사용 예정지 인접지역의 동일목적 점·사용 허가지의 피허가자의 권리	2015. 6.5
	개천 구거의 불법매립 점유에 대한 유권해석	2015. 9.10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와 관련한 권리자 범위	2015. 12. 31
	민간사업자와 해당 지자체간의 권리 및 의무 이전 가능 여부	2016. 1.7
	농로를 통한 건축허가 관련 질의	2016. 2.4
	권리자의 동의 없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득 가능 여부	2016. 3.21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권리·의무의 이전 등 신고에 대한 수리 관련	2016. 3.30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권 권리의무 승계관련	2016. 6.30
	구거 부지 및 하천 부지의 실시계획승인(신고) 및 준공검사의무 여부	2016. 4.21

구분	세부 내용	
	질의 내용	답변 시기
사.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징수 및 면제·감면	공유수면를 허가없이 점·사용한 경우 점·사용료를 몇 년간 소급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1998. 6.12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 시 별개 접안료 등 부과 여부	1999. 5.4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시 관계기관과 협의	1999. 7.1
	육상종묘생산어업 목적 해수인수 시 점·사용 대상 및 감면 대상 여부	2000. 3.13
	공유수면점·사용허가기간 만료전 지적공부등록 가능 여부 질의	1998. 3.26
	모래의 채취로 인한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의무	1999. 4.14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받아 설치한 시설물과 다르게 시설물을 설치 한 경우 설계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1999.9.8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받은 공작물의 규모를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 철거하여야 하는지 여부	1999.10.19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조건 위반시 취소 가능여부	1999.11.30
	점·사용허가 없이 설치한 건축물에 대한 사후 점·사용 신청 가능 여부	1999.12.27
	국가 대행업무 수행 히 점·사용료 감면 대상 여부	2000. 3.20
	구거 점용 건축물 점용·사용료 요율 적용	2011.3.28
	조력발전소 점용·사용료 요율 적용	2012.1.31
	사립학교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	2012.8.7
	비영리 공익법인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	2012.9.28
	인공구조물 설치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요율	2012.11.15
	하천부지 내 음식점 등 건축물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산정방식	2012.12.12
	점·사용 허가 통한 교량 설치 후 진입목적 부지의 소유주 변경 시 소유권과 의무면제	2014. 3.3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 시 귀속주체 관련	2014. 4.8
	골프장 조성 시 점용료·사용료 부과 관련	2014. 4.21
	민자사업자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부과	2014. 5.21

구분	세부 내용	
	질의 내용	답변 시기
	공유수면 무단점유 원상회복 의무면제 관련	2014. 6.25
	행정소송으로 관리청의 반려처분이 취소된 경우 변상금 부과 여부	2014. 6.30
	만조수위선 보다 높게 공유수면에 토사를 채워 넣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 대상 여부와 어업피해 보상절차	2014. 7.29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설물의 변상금 부과여부	2014. 8.1
	공유수면 인근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점용료·사용료 산정 기준	2014. 8.7
	건물 대지 내 편입된 구거의 원상회복 의무면제 승인 가능 여부	2014. 8.8
	국가어항구역 내 마리나 시설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부과 여부	2014. 9.5
	선박 계선장의 점용료·사용료 산정방법	2014. 10.24
	불법설치 도로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 면제	2015. 2.24
	특정용도지역의 점용료·사용료 부과 여부와 기간만료 시 원상회복 여부	2015. 4.26
	하천 점용료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조정 방법	2015. 5.7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수입금 소관 관련	2015. 5.11
	원상회복회복 의무 면제지역의 임의 원상회복 관련	2015. 5.11
	인접지역의 토지가 유사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경우 점·사용료 부과 기준	2015. 7.31
	해수사용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납부 및 점용.사용 승인 관련	2015. 8.11
	국립해양박물관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대상 여부	2015. 9.17
	초과 점용·사용에 대한 변상금 징수 관련	2015. 12.14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 관련 질의	2016. 3.7
	골프장 공유수면(구거) 점·사용료 산정방식	2016. 4.15

가 공유수면에서의 적용법률 및 공유수면의 정의·범위

1-1.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유수면에서 먼저 적용할 법률 (연안 58160-75, 1999. 2.18)

가) 질의요지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유수면인 바닷가(빈지)에 공작물설치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공유수면관리법과 도시공원법중 우선 적용 하여야 할 법률

나) 회신내용

공유수면관리법과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거 각각 우선순위를 가리지 아니하고 별개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양 법률에 의한 점·사용허가과정을 살펴보면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사용허가를 먼저 받는 것이 합리적임

다) 이 유

○ 바닷가(빈지)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법에서는 보전·이용의 대상으로, 자연공원법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기 위한 공원의 설치대상으로 각각 관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점·사용허가전에 다른기관과의 협의 및 권리자의 동의여부, 허가조건 등에 대하여 각기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 양 법률에서 각기 상대법률의 점용허가등에 대하여 상호관계와 우선 적용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3조에서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관장하고 있는 시장·군수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후부터 도시계획관련 점용이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사용허가를 먼저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1-2. 공유수면(바다)에서 매립 및 지반개량용 토석·모래채취시 적용법률 (연안 58160-371, 1999. 8.13)

가) 질의요지

○○○ 항만개발에 따른 매립 및 지반개량용 토석 및 모래를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 허가없이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점·사용허가만으로 채취가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공유수면에서 토석·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 항만개발사업에 따른 매립 및 지반개량용 모래를 바다에서 채취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2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는 것으로 보게 됨

※ 공유수면에서 매립 및 지반개량용 바다모래를 채취하고자 할 경우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또는 사용허가로 가능한지 또는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내용(건설교통부 기재 58000-442, '99. 7. 30) : 골재채취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골재는 하천, 산림, 공유수면, 지상, 지하 등에 부존되어 있는 쇄석용 암석, 모래,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함. 같은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바다골재 채취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의거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따라서, 귀 질의사항은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야 함

※ 공유수면에서 뻘과 모래등이 혼합된 토사를 준설·채취하여 선별·세척하지 아니하고 ○○건설 매립 및 성토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일반토사 채취의 경우에 반드시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건설교통부 기재 58000-504, '99. 9. 2) : 골재는 하천, 산림, 공유수면, 지상, 지하 등에 부존되어 있는 쇄석용 암석, 모래,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함. 토사를 선별·세척하여 골재를 생산하지 아니하고 매립 및 성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골재로 볼수 없을 것임. 따라서 골재가 아닌 일반토사를 채취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법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봄. 다만, 토사를 선별·세척·파쇄하여 골재를 생산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봄

1-3. 유실된 사유지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연안 58160-603, 1999.11.19)

가) 질의요지

바다에 유실된 사유지에 낚시용 시설을 설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 바다에 유실된 토지는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에 해당되므로 공유수면관리법이 적용되며

○ 위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낚시용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사용료의 부과·징수대상임. 다만, 점·사용허가여부는 공유수면관리·운영상 지장여부 등을 종합검토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서 판단하며, 낚시시설을 설치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가 수산업법 등에 의하여 금지·제한되는지 여부는 별개의 사안임

1-4. 사유토지로 물이 흐르는 경우 공유수면관리법 적용여부 (연안58160-50, 2000. 1.21)

가) 질의요지

기존의 구거가 자연현상 등에 의하여 변경되어 사유토지로 물이 흐르는 경우 동 사유토지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공유수면이라 함은 바다·바닷가 및 하천·호소·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기존의 구거가 자연현상 등에 의하여 국유가 아닌 사유토지로 변경된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1-5. 공유수면관리법상 포락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연안 58160-178, 2000.3.7)

가) 질의요지

공유수면에 접한 개인 소유토지(지목:임야)가 만조시에도 물에 잠기지 아니한 경우 공유수면관리법상 포락지에 해당되는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포락지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에 잠긴토지를 말하므로 공유수면에 접한 개인

소유토지가 만조시에도 물에 잠기지 아니한다면 공유수면관리법상 포락지로 볼 수 없다고 봄

○ 그러나, 포락지가 아니더라도 공유수면에 접한 사유토지를 수면이하로 굴착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1-6. 바다모래 운반선 공유수면관리법 적용 여부(연안58160-196, 2000. 3.13)

가) 질의요지

1) 바다모래 운반선을 해안(바다)에 접안시켜 사유토지의 모래하치장으로 일정기간 반복하여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부선을 해안(부선)에 고정시킨 후 동 부선에서 모래을 운반선으로 사유토지의 모래하치장으로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운반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대상인지 여부

나) 회신내용

○ 부선을 앵카체인 등으로 해안에 일정기간 고정시킨 경우 부선이 점용하는 면적과 그 주변의 공유수면중 당해 부선으로 인하여 타인의 점·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 모래운반선이 공유수면을 일정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점용하여 바다모래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공유수면을 자유롭게 점·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게 되고 동 하역작업으로 인하여 공유수면에 모래 등이 흘려내려 수심 및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거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1-7. 광업법 및 골재채취법과 공유수면관리법과의 관계

가) 질의요지

1) 광업법에 의한 규사채취인가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부산물(모래 등)를 채취·판매하는 경우 위법여부

2)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광물(규사)을 채취·판매하는 경우 골재채취허가의 타당성 여부

나) 회신내용

1) 광업법에 의한 규사의 채광인가와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았거나 광업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점·사용허가가 의제된 경우 공유수면관리법령에서 규사외 부산물의 채취·판매에 대하여 따로 정하니 아니하고 있으므로 골재채취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함

2)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골재의 채취장소가 바다 등 공유수면인 경우 별도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사용허가를 받거나 골재채취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의제받아야 바다 등에서 골재채취를 할 수 있으며, 채취하고자 하는 골재가 규사인지 여부와 규사채취시 부산물 등 판매여부 등은 광업법 및 골재채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함

1-8. 공유수면내 온배수 저감시설 축조시 적용법률(연안58160-682, 2000. 8.1)

가) 질의요지

공유수면에 사석, 피복석, TTP를 인위적을 투입하여 방파제성격의 방류제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동 시설물이 토지의 조성행위를 수반하는지 여부와 원상회

복이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중 어떤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립”이라 함은 공유수면에 토사·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을 말함

○ 공유수면매립법은 공유수면을 토지로 조성하고 피면허인이 총사업비 상당의 토지를 취득하여 이 토지를 야적장, 주차장 등 토지의 원상태로 활용하거나 이 토지위의 건축물, 구축물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임

○ 또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해안도로, 물양장, 안벽 등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라도 이는 해안가를 따라 공유수면이 상실되어 토지조성이 수반되고 원상회복이 전제되지 않은 영구적인 구조물이어야 할 것이며, 배후에 토지조성 없이 순수히 방파제, 돌제 등의 시설과 같이 바다쪽으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지조성 자체보다는 공작물 설치가 주목적이므로 매립법을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 본건 온배수 저감시설은 공유수면에 방파제 성격인 방류제를 설치하여 원전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영향범위가 인근 연안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외해로 유도하기 위한 구조물이고, 동 공작물이 준영구(40년)라 할 지라도 원상회복이 전제된 경우라면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 시설물 축조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것보다는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시설물을 축조하여 존치기간동안 피허가자 소유로 하되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 및 유지보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공유수면관리·운영측면에서 바람직함

○ 따라서, 귀 질의대상 구조물은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작물 전체 바닥면적 규모가 1천㎡이상이라 할 지라도 순수히 구조

물만 축조하고 토지조성이 수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 구조물이 발전소 가동수명이 종료된 후 철거하여 원상회복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청(영광군)의 허가를 받아 축조해야 할 시설로 판단됨

○ 한편, 본 구조물 설치로 인해 해수순환 방향 왜곡과 주변연안의 침식 또는 퇴적현상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대한 전문기관의 사전 정밀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9. 지목은 하천이나 물이 흐르지 않는 국유지의 공유수면 여부 (연안계획과-73, 2014. 1.7)

가) 질의요지

지목은 하천이나 물이 흐르지 않는 국유지에 대하여 기존에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피허가자의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갱신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중 적용 법률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의 정의에 대하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다목에서 “하천·호소·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유수면을 정의함에 있어 그 토지의 지목이 아니라 해당 수류의 형상, 공중의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공유수면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일지라도 공유수면관리청에서 용도폐지하기 전까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으로 관리해야 할 것임.

1-10. 구거구역의 적용 법령
(연안계획과-775, 2014. 3.17)

가) 질의요지

가. 구거(국토교통부 소관)를 횡단하는 진출입도로를 설치하고자하는 경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 · 사용과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허가 중 어느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나. 물이 흐르지 않고 사실상 토지화된 구거(국토교통부 소관)에 대하여 진출입로, 경작, 공공시설물 부지 등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적용 법률은

다. 국토교통부 소관 구거의 용도폐지 시 타 지목과 별개로 적용되는 법률은

나) 회신내용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는 바다, 바닷가와 함께 “하천 · 호소 · 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공유수면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구거를 횡단하는 진출입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용 ·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원래에 공유수면이었던 곳이 사실상 토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대법원 2012두2764, 2013.6.13 선고)하고 있으므로 공용폐지가 있기 전까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임

다. 질의 “다”에 대하여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 상 용도폐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바는 없으며, 용도폐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1-11. 집단계류지 내 방치선박에 대한 공유수면법 적용가능 여부 (연안계획과-2478, 2014. 5.21)

가) 질의요지

항만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에 위치한 방치선박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용대상이 되는 지 여부

나) 회신내용

○ 「항만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에 위치한 방치선박의 제거에 관한 사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해당됨(귀 청의 의견 “을”설)

- 최근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2015.3.9, 붙임 회신문서 참조)에 따르면 공유수면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관해 공유수면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하천, 소하천 등 공유수면의 경우에도 방치 선박 제거에 관한 규정은 공유수면법을 적용하도록 해석한 바 있음
- 다만, 이번 질의에서와 같이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공유수면에 대해 공유수면법의 적용 배제 규정의 적용에 혼란이 없도록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제2장” 전체를 적용 배제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15.9.21)하였음을 알려드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배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유수면의 관리 및 점용·사용에 관하여 법률 적용을 배제하도록 법률 개정(‘17.3.21.)

1-12. 검사수사지휘에 따른 해운 및 항만운송 관련 적용법령 (연안계획과-2478, 2014. 5.21)

가) 질의요지

가. 동해 호산항에서 러시아군함 고철 인양작업 시 국유재산 매장물 발굴 승인만 받으면 별도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나. 목포 맹골수도 해역에 침몰된 선박 고철 인양작업 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와 국유재산 매장물 발굴 승인을 받지 않은 사안에 대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62조제2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가. 질의 '가'항에 대하여

○ (답변1) 공유수면에 침몰한 선박의 선체 및 화물을 인양·제거하여 선체와 적재화물의 재활용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행위는「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기관으로부터 발굴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선박 인양을 위해 공유수면의 특정구역을 일정기간 동안 점용·사용하게 되므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도 받아야 할 것임.

나. 질의 '나'항에 대하여

○ 공유수면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용·사용한 경우에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고,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1-13. 공유수면의 경계구획
(연안계획과-1629, 2014. 5.26)

가) 질의요지

부안군에서 양식장을 위하여 제방을 축조한 경우와 새만금방조제의 경우 해안선은 제방 바깥쪽인지 아니면 제방 안쪽 양식장과 육지 사이인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인 바다는 자연공물로, “자연”과 “공물”로서 이중적 성격을 가지므로, 공유수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연현상 뿐 아니라, 공유수면의 형성 및 상실에 대하여 합법적인 처분 또는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함.

○ 자연현상에 의해 해수면(약최조고조면)과 육지가 맞닿는 부분이 변경되는 경우는 그 변경된 부분을 경계로 공유수면을 구획하여야 할 것이나,

○ 인위적 행위에 의해 해수면(약최조고조면)과 육지가 맞닿는 부분이 변경되는 경우는 그 변경된 부분을 경계로 공유수면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공유수면 여부 변경에 대하여 권한있는 기관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함.

- 양식장의 경우 양식 면허·허가 기간 동안 해당 수면을 일시적으로 점용·사용하는 것으로 공유수면성 상실에 대한 공유수면관리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유수면법상의 해안선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새만금방조제의 경우는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축조한 것으로 공유수면을 토지로 조성하는 합법적인 절차가 있었으므로 공유수면법상 해안선은 방조제 바깥쪽으로 새롭게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1-14. 폐하천부지에 대한 법 적용 여부 (연안계획과-2377, 2014. 8.8)

가) 질의요지

지방하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지목인 천인 폐천부지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대상 여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의 여부

나) 회신내용

○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나, 해당 공유수면이 하천구역에서 제외되어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 지적공부에 등재되어 있는 국유재산 중 지목이 하천, 유지, 구거로써 물이 흐르지 않고 사실상 토지화된 경우라 할지라도 용도폐지 후 지목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임.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시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대상 행위인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 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사용허가 신청 면적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지적측량성과도 제출이 필요하나 점용·사용 행위에 따라서 제출 예외 여부를 적의 판단하시기 바람.

1-15. 폐하천부지에 대한 하천법 적용 여부(추가사항)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3324, 2016. 11. 25.)

가) 질의요지

○ 「하천법」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이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나) 회신내용

○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에 대하여 하천법은 폐천부지등의 고시, 활용목적 등 관리에 관한 사항, 교환 및 양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4조 내지 제86조, 동법시행령 제91조 및 제92조, 동법시행규칙 제39조 및 제40조). 따라서, 폐천부지등에 대해서도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는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1-16. 지방어항 내 포락지 토지 조성 적용 법률 (연안계획과-2717, 2014. 9.18)

가) 질의요지

「어촌·어항법」제19조에 따라 방포항 어항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개발계획 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기 위한 적용 법률

나) 회신내용

○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 「어촌·어항법」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어항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은「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

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관한 규정 적용은 배제됨.

○ 다만,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조사를 통해 포락지임을 확인받아야 함.

1-17. 바다로 된 토지(포락지) 해당 여부 및 증명 방법 (연안계획과-2977, 2014. 10.14)

가) 질의요지

가. 안산시 단원구청에서 작성한 토지 측량성과도의 해당 토지가 포락지 해당 여부

나. 포락지 증명을 위해 해당기관의 포락지 지정 선행 필요 여부

다. 바다로 침식되어 포락된 토지에 대해 별도로 조사하여 포락지로 관리 여부 및 연안관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포락지를 참고하여 허가,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처분 가능 여부

나) 회신내용

가. 질의 '가'항에 대하여

○ 포락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9호가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포락지임을 증명 받아야 함

* 포락지조사 증명기관 지정현황, 포락지조사 증명방법 등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3조 참고

나. 질의 '나'항에 대하여

○ 포락지는 "가"의 내용과 같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조사를 통한 증명이 필요함

다. 질의 '다'항에 대하여

○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바닷가실태조사 및 관리유형분류" 연구 용역을 통해 연속지적도, 위성사진 또는 해안선 측량 자료를 바탕으로 포락지로 추정되는 공유수면을 자료로 관리하고 있으며, 연안관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포락지 관련 사항에 대하여 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위해서는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에 의한 확인절차가 선행되어야함.

1-18. 공유수면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의 귀속 절차 (연안계획과-3013, 2014. 10.17)

가) 질의요지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귀속절차로 상대방에게 공문으로 미리 귀속 통지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또다른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나. 미리 귀속 통지할 때 피귀속자에게 예고 기간(2주 이상)을 주고, 또한「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등을 실시해야 하는지

다. 기타 귀속과 관련 행정청의 유의사항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1조제6항 등에 따른 귀속절차를 이

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등에 따른 인공구조물 귀속 시「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법령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람.

1-19. 공유수면 점 · 사용을 통한 연안정비사업 지구의 사후 관리방안 (연안계획과-3084, 2014. 10.24)

가) 질의요지

가. 연안정비사업장 부지의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후 착공하였으므로 이 부지에 본 사업이 준공될 경우 공유수면에서 해지되는지 여부

나. 만약 해지될 경우 관리주체는 어떻게 되며, 지번부여는 가능한지 여부

다. 사업의 준공으로 인한 자동 해지되지 않을 경우 실제 현황은 공유수면이 아니므로 해지절차가 있는지 여부

라. 공유수면 해지가 불가능할 경우 연안정비사업장내 설치한 주차장 등 시설물을 민간에 위탁운영 가능여부

나) 회신내용

가. 질의 '가'항에 대하여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물(건축물을 포함)은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경우에 허용되며 준공 이후에도 공유수면에서 해제되지 않음

나. 질의 '나'항에 대하여

○ 바닷가관리지침(우리부 훈령 제10호, 2013.5.3.)에 따른 '이용바닷가'로 유형을

분류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관리하면 되며 공유수면은 지번을 부여하지 않음

다. 질의 '다'항에 대하여

○ 사업 준공이후에 공유수면은 '이용바닷가'로 분류하여 관리 가능함

라. 질의 '라'항에 대하여

○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주차장)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은 민간 업체가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이 가능함.

1-20. 국가하천 내 침몰 준설선 인양 등 조치의 공유수면법 적용 여부 (연안계획과-3651, 2014. 12.15)

가) 질의요지

국가하천 내(낙동강 하류지역) 침몰된 준설선의 인양 등 제거 조치를 위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1호에서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에 관한 규정만이 적용 배제되고 그 이외의 점용·사용에 대하여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적용 배제 범위를 축소하여 해석한다면 하천관리에 관한 하천관리청과 공유수면관리청의 권한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방치된 선박의 관리를 포함한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관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1-2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대상지 공유수면에 대한 제3자의 임시사용 (연안계획과-989, 2015. 3.25)

가) 질의요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조성 목적으로「농어촌정비법」제10조에 따라 추진 중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대상지 공유수면을 제3자에게 임시사용하게 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인지 여부

나) 회신내용

○ 해당 공유수면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구)농림부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매립공사가 진행 중인 공유수면으로써「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

1-22. 물이 흐르지 않는 소하천구역 외측 부지 및 국유지 공유수면법 적용 여부 (연안계획과-1091, 2015. 4.1)

가) 질의요지

가. 지목상 '천'이나 제내지에 해당 물이 흐리지 않는 소하천구역 외측 부지에 대한 점용·사용허가 시「공유수면법」제2조제1항다호에 따른 공유수면 적용가능 여부

나. 자연녹지지역 상의 국유지(공유수면)에 골재 야적장 목적의 점용·사용허가가 「공유수면법」제8조제1항제1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해당되는 경우「공유수면법」 검토사항 외에 다른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은 바다, 바닷가, 하천·호소·구거 그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것이나, 물이 흐르지 않고 토지화된 경우라도 용도폐지 후 지목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공유수면법을 적용함. 따라서, 지목이 '천'이고 소하천구역 외로 물이 흐르지 않는 부지의 경우도 공유수면법을 적용함.

○ 물이 흐르지 않고 토지화된 공유수면에 골재를 야적하는 행위는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공유수면 법령 외의 다른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점용·사용의 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가 판단할 사항임.

1-23. 구거지역에 대해 공유수면매립법과 농어촌정비법중 적용 법률 (연안계획과-1598, 2015. 5.11)

가) 질의요지

국유(농림축산식품부 소유)인 구거로 하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며, 물이 흐르지 않는 토지에 대해 공유수면법과 농어촌정비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은 바다, 바닷가 하천·호소·구거, 그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이며, 현재 구거가 물이 흐르지 않은 경우라도 공유수면으로써 기능이 용도폐지되기 전까지는「공유수면법」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될 것이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안의 공유수면일 경우에는「공유수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법」의 적용이 배제됨.

1-24. 야영장업 운영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지역 적용 법률 (연안계획과-2592, 2015. 7.28)

가) 질의요지

공유수면에 일반 야영장업 운영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8항에 따른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문이 고려 대상인지

나) 회신내용

○ 일반 야영장업(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하는 업)을 공유수면 상에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 부터 점용·사용허가 및 다른 법률 등에 따른 협의(허가) 등을 받아 해당 지자체로 부터 관광사업 등록·허가를 받아야 함.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변경) 신청시 사업계획서 상에 텐트설치 구역, 시설현황, 사업내용 및 소방안전·피해대책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야영부지 내 각각 구역에 대해 공유수면법 제8조8항의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하는 행위로 볼 수 없음.

1-25. 폐천부지 점용허가 관련 적용법 (연안계획과-4002, 2015. 11.30)

가) 질의요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하천구역 밖에 위치한 폐천부지로 지목이 하천, 유지, 구거인 국유지의 토지점용허가 시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수면법 중 어느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제2조에 따라 바다, 바닷가, 하천·호소·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말함

- 따라서, 국유재산 중 하천, 유지, 구거인 폐천부지에 대한 허가사항은 그 기능이 용도폐지되기 전까지는 국유재산법이 아니라 공유수면법의 적용 대상임.

1-26. 유지 내 인허가 행위에 대한 공유수면법 적용 여부 (연안계획과-963, 2016. 3.16)

가) 질의요지

유지(50,700㎡, 국토교통부 소유)는 개인이 제방을 석축하여 간척지로 조성하면서 형성된 토지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 태안군 소원면 의항2리 간척지 논 30ha에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저수지이며,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농지보전이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영농시설임. 유지안에서 이루어지는 인허가 등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지 아니면 「국유재산법」을 적용하는 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의거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의 공유수면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27. 공유수면 변상금 부과 처분취소 판결에 따른 법 적용 (연안계획과-1021, 2016. 3.21)

가) 질의요지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구거부지(국유지) 변상금 부과에 공유수면법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데, 향후 구거부지 행정처분에 「국유재산법」을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하는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르면 공유수면이란 바다, 바닷가, 하천·호소·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말하는 바

-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지만(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두2764 판결)
- 공유수면으로서 자연공물이 매립에 의하여 토지로 변경된 경우에 다른 공물과 마찬가지로 공용폐지가 가능하고, 이 경우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도 가능하나, 공물의 공용폐지에 관하여 국가의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다고 인정되려면 공물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거나 행정주체가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의의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공용폐지 의사의 존재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6다87538 판결)고 판단한바

○ 이 사건의 구거부지는 하수도 설치와 도시계획사업시행을 통해 자연공물인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여 그 용도를 폐지하였다고 추단된 건으로

- 일반적인 구거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 사건 구거부지와 같은 경우에는 기능폐지 절차 등을 통해 「국유재산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공유수면관리법 적용배제 및 의제

1-28. 수산업법령상 면허된 어업에 필요한 범위 (연안 58160-672,1999.12.10)

가) 질의요지

어업권자인 ○○어촌계가 어장환경회복을 위하여 면허된 어업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모래(규사)를 준설하고자 광업권자로 하여금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준설가능한 지

나) 회신내용

어업권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된 어업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행위가 허용되도록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어장환경회복의 목적으로 모래(규사)를 준설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별도의 점·사용허가 없이 어업권자는 동 어장준설에 따른 계약을 할 수 있으나 어장 등에서 채취한 토사(규사)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업에 필요한 공유수면점·사용행위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므로 별도로 광업법 및 공유수면관리법 등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야 함

1-29. 어항구역안의 공유수면관리법 적용범위 (연안58160-680, 1999.12.10)

가) 질의요지

1) 어항구역안의 수면(백사장 포함)을 점·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법률

2) 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3)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역시설의 범위

나) 회신내용

1) 어항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을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어항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어항시설이 아닌 수면(백사장 포함)을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의 대상임

2) 항시설중 수역시설은 어항구역안에서 선박의 출입과 정박이 가능한 수면을 말함. 다만, 어항구역안이라 하더라도 어항시설계획구역에 포함되지 않고 항로 또는 정박지로서 이용이 곤란한 지역(예:외곽시설내측의 육지와 접한 바닷가, 외곽시설외측의 항로를 제외한 해안지역 등)인 경우에는 수역시설로 볼 수 없음

1-30. 수산업법상 면허된 어업에 필요한 범위 (연안 58160-51, 2000.1.21)

가) 질의요지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축제식 양식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구역안에서 동 어업에 필요한 시설을 목적으로 물양장·어구적치장·작업장 등을 설치할 경우 공유수면점·사용허가대상인지 여부 및 점·사용료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자는 그 면허된 어업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유수면매립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행위가 허용됨

○ 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당해 어업에 필요한 시설의 범위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설치하고자 하는 물양장·어구적치장·작업장 등이 동 어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행정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 이 경우 공유수면점·사용료는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4호의 규정에의하여 전액 감면됨

1-31. 유지에 설치하는 부선(계류장)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대상 여부 (연안계획과-2178, 2015. 6.25)

가) 질의요지

지목이 유지인 호수면에 물에 뜨는 부선(플라스틱 부자 계류장)을 설치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대상인지 여부

- 동 시설은 밧줄로 장기간 고정시킨 것이 아니며, 동호회가 수상스키 시기인 6~9월 3개월간 사용하며, 미사용시 육지로 이동.

나) 회신내용

○ 이건 질의의 행위는 공유수면에 말뚝을 박고 밧줄로 인공 부선을 3개월간 띄워 계류장으로 사용하며, 이후에는 공유수면에 인공 부선을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임

- 말뚝 지점에서 부터 밧줄이 포함하는 면적과 인공부선이 차지하는 면적 등 공유수면을 장기간 점용·사용하는 행위로 대상지를 이용하려는 다른 사람에게 불편과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와 환경훼손의 문제 등이 예상되는 등 공유수면 관리 및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되며,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대상임.

다 공유수면의 관리(관리청)

1-32. 공유수면점용거리(면적) 등에 관한 질의(연안 58160-231, 1999. 6.3)

가) 질의요지

두 지점간의 공유수면(바다)에 설치되는 광케이블이 점용하는 공유수면(바다)에 대하여 두 지점을 각각 관할하는 공유수면관리청별 점·사용허가 범위(구간 또는 거리)와 광케이블의 공유수면 점용면적 산정방안

나) 회신내용

두 지점간(남해-제주)에 설치되는 광케이블이 차지하는 점용면적(설계도서 등에 의거 광케이블과 동케이블 보호시설이 직접 차지하는 해저면적과 동시설로 인하여 타인의 점·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면적)에 대하여 두지점의 공유수면관리청과 광케이블이 통과하는 공유수면관리청이 협의하여 점·사용허가 면적(예시 : 총길이를 1/2로 산정 등)을 결정하고 점·사용료(직접점용료와 간접점용료)를 부과하여야함

다) 이 유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항에 의거 “공유수면은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영해의 범위까지”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는 별개로 관리청별 관리해역(바다)을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관리청간에 협의가 필요함

1-33. 공유수면관리법상 관리청의 범위(연안58160-256, 2000. 3.25)

가) 질의요지

감천항 외항(무역항 항만구역 밖)에서 토사를 채취하여 영해내측에 투기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수면점·사용허가권을 가진 관리청은 채취장소를 기준으로 하는지 투기장소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관리법상 공유수면의 범위는 우리나라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까지로서, 동 공유수면의 관리권은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배타적경제수역은 해양수산부장관, 영해중 무역항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은 지방해양수산청장, 기타의 공유수면은 시장·군수·구청장(부산남항은 부산광역시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 항로준설 등 토석채취를 하여 공유수면에 투기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에 의거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석을 채취하고자 하는 해역 및 투기장소가 각각 다를 경우 동 해역을 관리하는 공유수면관리청에서 각각 따로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 한편, 이 경우 공유수면관리청별 관할범위는 공유수면관리법령상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점·사용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육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1-34. 공유수면의 지번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담당 소관청 (연안계획과-2368, 2014. 8.7 / 연안계획과-3678, 2014. 12. 16)

가) 질의요지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사업('10.8월 개통) 시행으로 분리된 도로내측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청

나) 회신내용

○ 해당 공유수면의 전면에 고속도로가 조성되어 바다와 분리되어 있는 내측 공유수면의 경우 해면이 아닌 내륙의 공유수면에 해당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청은 육상항만구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임.

○ (추가 질의 회신) 해당 공유수면은 전면에 도로가 조성되어 지적선 내측에 존재하고 있는 내륙공유수면에 해당되므로 귀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공유수면임.

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관련사항

1-35.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에 따른 오탁방지막설치시 공유수면점용허가 및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연안 58160-88, 1998. 3.11)

가) 질의요지

비관리청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에 관한 공사를 하는 경우, 항만공사(준설공사 등)시 발생되는 부유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탁방지막에 대하여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및 동 실시계획승인외에 별도의 공유 수면점용을 허가하고 점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하는지

나) 회신내용

국가귀속 항만시설에 대한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내역에 오탁방지막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점용허가는 불필요하며, 공유수면점·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함

다) 이 유

○ 항만법 제11조에서 비관리청항만공사의 시행 또는 허가에 관한 고시를 한 때에는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어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별도의 허가는 불필요함

○ 국가귀속항만시설에 대한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는 국가부담하에 시행하는 공사와 같으므로 공유수면점·사용료 부과 대상이 아님

- 오탁방지막은 준설공사시 발생되는 부유물질 확산방지를 위한 필수시설(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서도 설치)로서
-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공유수면점용료 전액 면제대상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시행하는 행위자체는 영리행위가 아닌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탁 받은 공사로 볼 수 있으며
- 해양수산부고시('96-26호)인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관한규정 제22조제4항 제4호 및 별표1의 사”에서도 국가귀속 항만시설에 대한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경우는 수역이용료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 비관리청에게 오탁방지막 설치면적에 대한 공유수면점용료 등을 별도로 부과하는 경우 국가에서 비관리청에 보전하게 되는 총사업비가 늘어나고 무상사용기간이 연장되므로 이를 별도로 부과할 이유가 없기 때문임

1-36. 공유수면(구거)점용허가 관련질의(연안 58160-204, 1998. 6.9)

가) 질의요지

공유수면관리청에서 "갑"이 무단으로 구거부지를 점용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갑"에게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하였으나, 조사결과 실제로는 "을"이 동 구거를 무단점용하고 있으므로 "갑"의 허가를 취소하고 "을"에게 재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갑"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취소할 사유가 있을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이를 취소하고 "을"의 신청에 따라 "을"에게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할 수 있음. 다만, "갑"에 대한 취소사유 및 "을"에 대한 허가여부는 당해 공유수면관리청이 판단할 사항임

1-37. 공유수면(구거)점·사용 허가 가능여부(연안 58160-275, 1999. 6.23)

가) 질의요지

공유수면(구거)에 흄관을 설치하여 진입도로로 활용코자할 경우 공유수면관리법상 점·사용허가 가능여부

나) 회신내용

국유인 구거는 공유수면으로서 일정기간 사용후 원상회복하는 것을 전제로 흄관 등을 설치하여 진입도로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대상임. 다만, 허가여부는 구거의 규모, 형상, 홍수시 수해 피해여부 및 관계기관(권리자)의 협의(동의)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구거) 관리청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1-38. 공유수면점·사용허가관련 질의(연안 58160-356, 1999. 8.3)

가) 질의요지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부잔교 등)를 받은 자로부터 당해 공유수면에 설치된 부잔교 등의 사용동의를 얻은 자를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사용동의만을 얻은 자는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볼 수 없음

다) 이 유

○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아 공작물을 설치한 자의 공작물의 설치목적 및 용도 등이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 그 동의를 받은 자는 공유수면의 점·사용이 가능하나

○ 당해 공유수면의 점·사용 동의행위만으로는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사용허가로 인한 권리의무의 양도·양수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임

1-39.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점·사용허용 범위 (연안 58160-466, 1999.9.28)

가) 질의요지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면허를 신청한 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받은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단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면허를 신청한 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하므로 매립면허전까지 공유수면점·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1-40. 개인소유토지인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고자 제방을 설치하는 경우 점·사용 허가대상 여부(연안 58160-480,1999.10.4)

가) 질의요지

지적공부상 임야(사유지)이나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제방을 설치하는 공유수면관리법상 점·사용허가대상인지 여부

나) 회신내용

포락지 또는 간석지의 토지를 위하여 제방시설이 지적공부상 사유의 토지 또는 임야의 지적선안에 설치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 수면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 제방시설이 지적선 밖 공유수면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1-41. 국유인 구거의 점·사용행위(연안58160-674, 1999.12.10)

가) 질의요지

1) 국유인 구거의 유로가 변경되어 개인 소유의 토지로 물이 흐르고 당초 구거를 타인에게 점·사용허가한 경우 허가취소 가능여부 및 허가취소 후 현행 구거 토지소유자 부담으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지

2) 구거를 인근토지의 진입도로 목적으로 점·사용허가가 가능한 지

나) 회신내용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받은 자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및 점·사용허가시 붙인 조건(부관)에 의하여 점·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여부는 공유수면관리청이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되는 범위안에서 검토·판단하게 되며,

○ 당초 구거부지를 모두 점·사용허가한 경위·사유 등을 알 수 없으나 현재 구거로 이용되는 사유토지의 소유자가 구거를 원상태로 되돌리기 위하여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의 대상이 됨

2) 국유인 구거를 진입도로로 점·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나, 허가여부는 공유수면관리청이 당해 구거의 원형보전의 필요성,특정인의 배타적 점·사용가능성, 공작물설치로 인한 수해 등 제반피해 여부 및 관계기관 협의의견과 권리자가 있는 경우 권리자의 동의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검토하여 점·사용허가여부를 판단함

1-42. 공유수면에 설치한 건축물은 건축법 등에 의거 별도 허가 여부 (연안 58160-51, 2000.1.21)

가) 질의요지

공유수면에 건축물을 설치할 목적으로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법에 의하여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나) 회신내용

공유수면관리법상 다른 법률(건축법)의 의제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법에 의하여 별도로 인·허가를 받아야 함

1-43. 활어차 등에 해수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점·사용허가 대상여부 (연안58160-57, 2000. 1.21)

가) 질의요지

해수를 판매할 목적으로 활어차 등에 의하여 해수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대상 여부 및 그 절차

나) 회신내용

공유수면에 파이프 등을 설치하고 해수를 인수하여 상업목적으로 해수를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동조동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사용허가의 대상이며, 허가절차에 관하여는 공유수면관리법령(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동법시행령 제3조·동법시행규칙 제2조 및 동법 제5조제3항·동법시행령 제6조 및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제8조 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함

1-44. 활어수족관 공급용으로 인·주수허가 받았으나 해수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연안58160-92, 2000. 2. 2)

가) 질의요지

공유수면(바다)에서 물을 끌어들여 활어수족관에 공급할 목적으로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이를 일정한 요금을 받고 다른 사람의 활어차 등에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바닷물을 활어수족관에 공급할 목적으로 점·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허가목적 및 내용(기간,장소,규모/면적 등) 에 적합하도록 점·사용하여야 하고,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요금을 받고 활어차 등에 해수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 이는 당초 허가받은 목적과 서로 다르므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4항·동법 시행령 제7조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점·사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변경허가 여부는 공유수면관리청(○○시)이 주변여건, 공유수면관리·운영상 지장여부 등을 종합검토·판단할 사안임

1-45. 공유수면관리법상 점·사용허가대상 여부(연안 58160-149, 2000.2.28)

가) 질의요지

축제식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구역에서 토석·모래·자갈을 채취하여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별도의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나) 회신내용

○ 축제식 양식어업에 있어서 그 면허된 어업에 필요한 범위라 함은 양식에 필요한 제방축조,수문설치 및 최소한의 바닥굴착만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구역에서 골재·토석·토사·자갈 등을 채취·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여부는 공유수면관리청이 주변여건, 관계기관 협의의견, 권리자의 동의여부, 공유수면관리·운영상 지장여부 등을 종합 감안하여 검토·판단할 사안임

1-46. 공유수면관리법상 점·사용허가대상 여부(연안58160-198, 2000. 3.13)

가) 질의요지

하천에서 무동력 고무보트를 이용하여 급류를 타는 경우 하천법 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나) 회신내용

하천법 또는 소하천정비법이 적용되지 아니한 일반하천의 경우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관리법 적용대상이나 공유수면에서 무동력 보트를 이용하여 급류를 타는 경우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유수면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 대상이 아님

1-47. 소규모어항에 설치된 선착장에 여객선 등이 기항하는 경우 점·사용허가 대상 여부(연안58160-265, 2000. 3.29)

가) 질의요지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여객선이 어항법상 어항구역이 아닌 소규모어항에 기항하기 위하여 "육지 소규모어항개발계획"에 의거 설치된 선착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대상인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어항법상 어항구역이 아닌 기타 어항(통상 “육지 소규모어항” 이라 칭함)구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육지 소규모어항개발계획에 의거 설치한 선착장, 물양장 시설 등은 어민편의를 제공하거나 공용 또는 공공의 용으로 이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게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해 줄 경우 피허가자는 동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점·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므로 동 시설물의 설치목적에 배치되어 점·사용허가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됨

○ 또한, 공유수면에 설치한 동 시설물은 설치시 매립을 수반하는 지 여부에 따라 공유수면관리법 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허가 또는 면허를 받아 설치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 육지 소규모어항개발계획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이는 공유수면관리법 또는 공유수면매립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면허없이 설치한 시설물에 해당되므로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대상이 아님

○ 따라서, 어선 또는 여객선, 유·도선이 동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일정기간 점·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점·사용허가 대상이나, 허가여부는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사용의 목적(용도), 시설물 규모, 주변여건, 관계기관 협의의견, 권리자의 동의여부 및 공유수면관리·운영상 지장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임

1-48. 개인소유의 간석지도 공유수면 점사용 대상 여부 (연안계획과-1332, 2012. 6.15)

가) 질의요지

1) 지목이 임야이나, 실제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의 경우 해수 인배수 행위를 하기 위해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위의 경우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대상인 경우, 통로상의 모든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1)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나 포락지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규정된 공유수면 점용·사용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함

2) 같은 법 제12조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없이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청에서 판단해야 함.

1-49. 허가받은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 신규 설치 (연안계획과-2813, 2012.12.18)

가) 질의요지

1) 기 허가받은 공유수면에서 허가면적, 허가목적의 변경 없이 인공구조물 신규 설치 및 기존 인공구조물 보강공사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대상여부

2) 동 인공구조물 신규 설치 및 기존 인공구조물 보강공사 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 여부

나) 회신내용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용도 또는 규모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공구조물의 규모 및 총공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함.

2)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로 인하여 수산자원 및 어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관계기관 협의 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그 협의대상기관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에서 “수산자원 및 어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 여부도 결정할 사항임.

1-50. 양식장의 해수판매행위 시 점용사용 허가 필요 여부 (연안계획과-72, 2014. 1.8)

가) 질의요지

가. 해수를 인입하여, 판매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필요한지

나. 양식장 사용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득한 후, 사용 목적 외 판매 시 별도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필요한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5호는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를 점용·사용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매를 목적으로 해수를 인입하는 행위도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함.

○ 허가를 받아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자는 목적, 기간, 주체, 점용·사용 지역 및 규모 등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점용·사용하여야 하며, 점용·사용 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위 의견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무관한 일반적인 법령해석 의견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이 법령 위반행위인지 여부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등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1-51. 수상레저사업 목저의 공유수면 점 · 사용 시 허가신청 주체 (연안계획과-467, 2014. 2.17)

가) 질의요지

항만구역 내에서 수상레저사업을 하기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신청 주체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공유수면의 허가 신청 주체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공유수면의 허가 신청 주체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 다만, 허가 여부는 공유수면관리청이 항만 운영과 공유수면 관리 지장 여부, 타인의 권리 침해 여부 및 기타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음.

1-52. 어업 면허구역 내 공유수면 점용 · 사용 허가 여부 및 사용료 징수 위반 여부 (연안계획과-558, 2014. 2.26)

가) 질의요지

어업면허권자가 면허구역 내 공유수면(바닷물이 왕래하지 않음)에 마을주민들이 논을 조성하여 벼농사를 짓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은 상황에서,

가. 어업면허권자가 관할관청으로부터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어업면허권자가 본인의 면허구역 내에서 마을주민에게 벼농사를 짓게 하고 사용료를 받은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8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다. 위의 경우 마을주민들은 처벌대상이 되는지

라. 어업면허권자와 마을주민간의 민사사안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나) 회신내용

질의 “가”에 대하여

○ 「수산업법」제18조제1항은 “어업권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가 허용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점용·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가 없이도 점용·사용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어업

에 필요한 범위 내"에 해당하지 않는 점용·사용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함

질의 "나"에 대하여

○ 어업면허권자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8항 위반으로 볼 수 있음

질의 "다"에 대하여

○ 벼농사를 지은 마을주민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의한 적법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법행위로 판단됨

질의 "라"에 대하여

○ 질의 가, 나, 다의 검토의견과 같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사항으로 단순 민사사안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1-53. 공유수면 점용허가 기간 중 인접사유지의 소유자 변동 발생시 업무처리 방안 (연안계획과-2297, 2014. 7.31)

가) 질의요지

공유수면 점용허가 기간 중 당초 허가 받은 인접 사유지의 소유자가 변동(경매처분)되어 이전 토지소유자와 점용·사용허가 동의여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함. 이전 토지 소유자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새로운 사유지 소유자에게 신규 점용·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그 양수인, 상속인, 합

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 만일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이 이전 토지소유자와 새로운 토지소유자간에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양수인이 권리 이전 내용을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반면, 권리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에서는 이전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의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인정하여 점용·사용허가 취소가 가능함

○ 아울러, 새로운 토지소유자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목적 및 이해관계인의 변동여부 등 당해 허가와 관련한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 점용·사용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1-54. 인배수를 통한 염전 조성 시 공유수면 점용 · 사용 허가 대상 여부 (연안계획과-2983, 2014. 10.16)

가) 질의요지

- 사유지(지목:염)에 소금제조업(소금산업진흥법 제23조)을 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에 제방을 쌓고 **그 제방에 수문 또는 관을 설치**하여 바닷물을 인위적 또는 자연적(만조)으로 **인·배수**를 하여 염전을 하는 경우
- 만조시 유실된 제방을 통하여 유입된 해수를 또다른 토지(축제식양식장)에 제방을 쌓고 수문 또는 관을 이용 인위적으로 인·배수를 하는 경우

가. 「소금산업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소금제조업 허가시 수문을 통한 바닷물 인·배수 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대상 여부

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대상이라면 법 제12조에 따른 권리자가 있으면 권리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다. 유실된 제방을 통하여 유입된 해수 인·배수시 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여부

나) 회신내용

○ 소금제조를 위해 제방을 쌓고, 수문 또는 관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내보내는 경우에는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 제12조에 따른 권리자에 해당 여부는 공유수면관리청에서 판단하여야할 사항임.

○ 만조시 유실된 제방을 통해 유입된 해수를 축제식양식장에 제방을 쌓고 수문 또는 관을 설치하여 인수·배수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대상임.

1-55. 해상 SEP BRAGE이용 시추작업 공유수면 점용 · 사용 허가 대상 여부 (연안계획과-3090, 2014. 10.24)

가) 질의요지

해상지질조사를 위해 SEP BARGE를 해상에 고정하여 시추작업을 할 경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점용、사용 허가대상 인지 여부 및 허가 대상일 경우 점용료·사용료 산정 범위

* 유압시추기를 이용하여 토사 및 암석 샘플 채취를 위해 외경∅76㎜ 롯드(ROD)를 이용하여 바닥층에서 평균 40m이상 15개 공구(1공 당 3시간~3일간, 전체 30일 정도 소요) 해상 천공작업 실시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에서 토사 및 암석 샘플 채취 등 해상지질조사를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동하면서 15개 공구별로 SEP BARGE를 해상에 고정하여 30일 동안 시추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공유수면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용·사용하는 행위로써 허가 대상에 해당됨

○ 또한,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별표2의 제9호를 적용하여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를 적용하되 15개 공구에 대한 시추작업을 위해 SEP BARGE가 차지하는 면적을 직접 점용면적으로 하여 산정하시기 바람.

1-56. 항내 파제제 설치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 대상 여부 (연안계획과-479, 2015. 2.9)

가) 질의요지

국가어항인 물건항 내 파제제(350m, 토지와 접하지 않음)를 설치할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으로도 시행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1호는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제10조제1호는 바다 및 바닷가에 설치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의 범위를 토지조성이 수반되지 않고 설계

서 등에 원상회복비용이 계상되어 공유수면으로 원상회복이 예정된 인공구조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 질의대상 파제제는 육지와 연결되지 않아 토지로서 기능이 극히 제한적 인바, 매립을 통한 토지로 조성(등록)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향후 항내 정온유지를 위한 수면적 확보 및 각종 선박 통항 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원상회복 대상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으로 시행할 수 있음.

1-57. 점용 · 사용허가의 별도 부여가능 여부 및 공용이용 해역의 특정인 점용 · 사용허가 가능 여부(연안계획과-947, 2015. 3.20)

가) 질의요지

가. 공유수면 점용허가와 사용허가를 별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어항구역 밖의 어민이 공용으로 이용하는 선착장, 물양장에 대해 특정인에게 점용·사용허가 가능 여부, 해당 시설물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조치 방법(무단 점용·사용금지 및 원상회복 명령 등)

나) 회신내용

가. 질의 '가'항에 대하여

○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공유수면의 수저·수중·수면 및 수면 위의 일정한 공간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차지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며, 사용허가는 바닷물, 토석, 모래, 자갈, 광물 등 공유수면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나, 점유와 사용이 동시에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공유수면을 점유하지 않고 자원 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해당되어 대체로 공유수면 점용허가와 사용허가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음

○ 또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해당 행위가 공유수면에 미치는 영향, 다른 사람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 여부 등에 대해 공유수면관리청에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며, 허가 절차는 공유수면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나. 질의 '나'항에 대하여

○ 어민 편의용 선착장, 물양장 등을 특정인에게 점용·사용허가 여부는 이용 목적,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 여부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 만일, 특정인의 행위가 무단 공유수면 점용·사용 행위인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에서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 등 공유수면법에서 정하는 조치가 가능함.

1-58. 사고선박 유류이적 행위 공유수면 점용 · 사용 허가대상 여부 (연안계획과-1117, 2015. 4.2)

가) 질의요지

사고선박 유류이적 행위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대상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 상에서 사고선박에 적재된 유류를 이적하기 위하여 상당기간 동안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점용·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공유수면법」제8조 제1항제11호 등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할 것으로 판단

○ 다만, 구난 및 해양오염사고 방지 등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비상 상황의 경우에는 점용·사용 허가 절차 없이 필요한 조치를 우선 취하도록 하되, 비상상황이 해제된 이후에도 공유수면의 지속적인 점용·사용이 필요한 경우에

는 점용·사용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시급성과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적의 조치하시기 바람.

1-59. 공유수면 점 · 사용지역의 허가기간 및 피허가자의 변경 (연안계획과-2316, 2015. 7.7)

가) 질의요지

가. 충남 보령시 공유수면에 선착장(토석 및 건설자재 운반용, 양어장) 설치를 목적으로 1995.1월 점용·사용허가 한 대상지에 대해 1999.3월 허가기간을 '영구'로 변경 허가하였으나, 인근주민들로부터 동 시설로 인한 차량진출입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 소음발생 등 민원이 제기되어 관련 허가취소 및 기간단축 민원이 있으며, '14년도 보령시에 대한 행정감사 시 허가기간을 조정하라는 지적이 있었음. 허가기간을 영구로 허가한 사항에 대하여 허가기간 조정을 지자체 직권으로 가능한지와 법 개정으로 허가기간이 조정된 경우 법 적용에 대해 사전공지하지 않은 경우 법 개정 시행일을 적용하여 허가기간 조정이 가능한지, 허가당시 적용된「공유수면관리법」제정취지인 공공위해의 예방·경감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를 이유로 허가기간 조정이 가능한지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제3항에 따른 권리·의무·이전 등의 신고 시점을 새로운 허가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와 피허가자가 타인에게 임대하여 점용·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가. 질의 '가'항에 대하여

○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부칙(제10272호, 2010.4.15.)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사용 허가기간에 대한 적용은 (구)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허가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현행 법률을 적용할 수 없으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해 공공의 피해가 발생하고, 공유수공유수면의 보전 및 재해 예방 등 공공의 피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공유수면관리청이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사용허가의 취소, 점용·사용의 정지 또는 인공구조물·시설물 등의 개축·이전을 명할 수 있을 것임.

나. 질의 '나'항에 대하여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로 인해 발생한 권리·의무는 그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이 승계하고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신고는 기존 허가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이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8항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1-60. 토지 무등록 매립지 전면 공유수면에 부선 접안 시 점용 · 사용 대상 여부 (연안계획과-3720, 2015. 11.9)

가) 질의요지

가. 선박 블럭 등을 운반하기 위하여 부선(바지선)을 매립된 무등록 토지 전면 공유수면에 접안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매립면허가 취소되고 현재 이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에 미등록 토지 출입을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가. 질의 '가'항에 대하여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서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선박 블럭 등을 운반하기 위하여 부선(바지선)을 공유수면에 접안하는 행위 등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로 일회성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대상에 해당됨.

나. 질의 '나'항에 대하여

○ 공유수면은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공유수면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고 대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67.3.28.선고 67다40판결, 1972.8.22.선고72다841판결, 대법원 1995.12.5.선고 95누10327판결 참조)

- 따라서, 동 부지의 공유수면이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매립공사를 완료하여 매립지의 위치와 지목을 설정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법률상으로는 매립으로 조성된 미등록 토지도 공유수면에 해당되므로 미등록 토지 출입을 위해서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필요함.

1-61. 선박의 장기간 묘박행위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취득의무 관련 (연안계획과-3810, 2015. 11.16)

가) 질의요지

가. 유실된 유정폭발방지기를 인양하기 위해 그 곳 해상을 탐사하고 바지선을 그 곳 해상에 장기간 묘박하여 고정한 상태에서 인양한 것이 공유수면법 제8조

제1항제1호의 '그 밖의 인공구조물 신축', 신설 또는 설치의 개념으로 보아 고정식 시설물로서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8조제1항제11호에 의해 처벌 가능한지

다. 공유수면관리청인 ○○군청에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그 허가 신청의 주체가 발주처인 A회사인지, 아니면 시공사인 B 또는 C 업체인지

나) 회신내용

가. 질의 '가'항에 대하여

○ 유실된 유정폭발방지기를 인양하기 위해 그 곳 해상을 탐사하고 바지선을 그 곳 해상에 장기간 묘박하여 고정한 상태에서 인양한 것은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행위로 판단됨.

나. 질의 '나'항에 대하여

○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자에 해당되어 공유수면법 제62조제2호에 따른 벌칙이 적용 가능할 것임.

다. 질의 '다'항에 대하여

○ 공유수면법 제8조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허가 신청의 주체는 발주처인 A회사, 시공사인 B 또는 C업체 모두 가능할 것임.

1-62. 해수 인입 취수관 설치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대상 여부 (연안계획과-137, 2016. 1.13)

가) 질의요지

A(조선업체)는 육상부지와 접한 해면부에 선가대 설치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영업 중임. B(활어도소매업체)는 A업체 옆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A업체가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 일부의 저질부에 해수인입관을 매설 설치하고자 함.

가. B업체가 해수인입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A업체의 동의를 받아 B업체가 이용하고자 하는 일부 공유수면에 대하여 이중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나. 이중의 점용·사용허가가 가능하다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각각 징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점용·사용료를 2개 업체에 분담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가. 질의 '가'항에 대하여

○ 동일한 공유수면의 경우에도 점용·사용허가 가능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에 그 허가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가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가 있어야 허가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서는 법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권리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1에서와 같이 동일한 공유수면을 각각 점용·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먼저 점용·사용허가 받은 자가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에 해당

된다고 공유수면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규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권리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

나. 질의 '나'항에 대하여

○ 점용·사용료 각각 징수

- 공유수면 점용·사용 목적이 A업체는 선가대 설치이며, B업체는 해수인입관 설치이므로 상호간에 공유수면 사용 공간이 상이하고 간섭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점용·사용료는 각각 징수 필요

1-63. 육상 새우양식장 조성관련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대상 및 권리자 동의 여부 (연안계획과-406, 2016. 1.29)

가) 질의요지

가. 육상(축제식) 새우양식장 운영을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지 않고 민원인 답의 관정(지하수)을 사용하며, 배출수를 직접 공유수면에 내보내지 않고 농업용 배수로를 통해 바다로 배출할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대상 여부와 권리자(어업면허를 받은 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나. 새우양식 후 배출수를 직접 공유수면에 내보내지 않고 저류지에서 자연증발할 경우 권리자의 동의 여부

나) 회신내용

가. 질의 '가'항에 대하여

○ 공유수면으로부터 해수 인수 및 직접 배출이 없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나, 농업용 배수로를 통해 배출수를 바다로 배출할 경우 「수산업법」제82조제1항에 따라 '수질

이 오염되어 면허받은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그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는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수산업법」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대한 검토 및 적의 조치 필요

나. 질의 '나'항에 대하여

○ 배출수를 공유수면에 내보내지 않고 저류지(본인 사유지)에서 자연증발의 경우는 공유수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

1-64. 해저면 밑 관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대상 여부 및 징수 기준 (연안계획과-423, 2016. 2.1)

가) 질의요지

해저면 밑 관로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대상 여부
또한, 허가 대상일 경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를 위한 점용면적 산정 기준

나) 회신내용

○ 해수사용을 목적으로 인공구조물인 인입관을 설치하는 경우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됨.

○ 관로의 직경에 해당하는 평면투영면적은 직접점용에 해당하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간한 업무처리규정」별표4(공유수면 점용·사용면적 산정기준)의 도면 24의 간접점용 적용 기준을 준용하여 해수인입관의 직경만큼을 각각 간접점용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함.

- 단, 신청자가 취수하는 해수의 수질 관리를 위해 타인의 점용·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관로사이도 직접점용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함.

1-65. 규사채취 목적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광업권 존속기간보다 긴 허가기간 부여 가능 여부 (연안계획과-1082, 2016. 3.26)

가) 질의요지

규사채취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고자 할 때, 광업권 존속기간보다 긴 허가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광업권 존속기간보다 긴 허가기간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광업권 존속기간까지만 허가한 후 광업권 갱신 등 존속기간 연장 시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기간연장의 변경허가 필요.

1-66. 「연안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유수면에 건축물 설치 목적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가능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제3호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926, 2016. 3. 25.)

가) 질의요지

○ 국유 하천、호소(湖沼)、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 중 「연안관리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유수면에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실내、외 체육시설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 신축하려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여부.

나) 회신내용

○ 국유 하천ㆍ호소ㆍ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 중 「연안관리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유수면에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실내ㆍ외 체육시설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 신축하려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수 없음.

다) 이 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2조제1호 다목에서는 하천ㆍ호소ㆍ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공유수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함)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함),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만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공유수면 또는 공유수면 밑의 지하에 설치되거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중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연안관리법」 제6

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바,

○ 이 사안은 국유 하천·호소·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 중 「연안관리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유수면에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실내·외 체육시설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 신축하려는 경우 공유수면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음.

○ 먼저, 공유수면법 제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만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에서는 「연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이하 "연안 관련 계획"이라 함)에 적합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연안 관련 계획에 적합하여야 할 것, 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것이라는 두 개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그런데,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사유에 "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추가한 취지는 해양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상관광호텔을 신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와 동시에 해안의 경관과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같은 조 제2항에서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였으며(1998. 2. 8. 법률 제5914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8. 9. 시행된 「공유수면관리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

항에서는 해상에서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항만운영 등에 필요한 건축물 기타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바(1999. 8. 6. 대통령령 제16514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8. 9. 시행된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는 공유수면 중에서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연안 관련 계획에 적합할 것을 전제로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관리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판단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결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연안에서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규정을 신설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 한편, 「연안관리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유수면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연안 관련 계획에 적합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으므로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두 개의 요건 중 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것이라는 다른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연안관리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유수면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는 인정만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연안 관련 계획에 적합할 것이라는 요건을 규정한 취지가 무의미해지게 되고,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가 가능한 건축물을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에서 각각 항만 및 어항 운영, 「관광진흥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전기사업법」에 따른 특정 목적의 건축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법령의 체계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임.

○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유 하천ㆍ호소ㆍ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 중 「연안관리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유수면에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실내ㆍ외 체육시설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 신축하려는 경우, 공유수면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임.

1-67. 태양광 발전설비의 공유수면 설치 시 점용·사용허가 가능 여부 (연안계획과-1365, 2016. 4.14)

가) 질의요지

태양광 발전설비의 공유수면(시화호 내측) 설치 시 점용·사용허가 가능여부 질의

나) 회신내용

○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하는 행위'로 판단됨.

- 다만,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여부는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한 공유수면의 주변여건, 점용·사용 목적, 인접 공유수면사용의 제한 및 피해발생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에서 판단·결정할 사안임.

1-68. 바다낚시터 해수 인ㆍ배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대상 여부 (연안계획과-1378, 2016. 4.15)

가) 질의요지

수문(해수 통제가능)을 통하여 염전목적 사유지(유지)에 유입된 해수를 바다낚시터(사유지)로 끌어들이는 행위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대상인지 여부

나) 회신내용

○ 바다낚시터로 해수를 끌어들이는 행위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5호의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행위에 해당되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대상임.

1-69. 어항구역 내 타 법령에 의한 교량 등 시설 설치 (국민신문고, 2016. 4.22)

가) 질의요지

○ 어항구역 안에 어항시설이 아닌 교량을 공유수면관리법에 의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로 시설가능 여부

○ 절차를 통하여 어항구역 안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통하여 설치 중에 있는 교량을 어항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기허가 받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로 교량시설을 계속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하여 어항구역 안에서 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촌·어항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어항의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로 교량시설 설치 가능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시설중인 교량을 어항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기허가 받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로 계속 시공 가능여부는 지정권자와 공유수면관리법 처분권자와 협의하여 어촌·어항법 제19조, 제21조, 제33조 등에 의하여 가능 하나,

○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어항구역 안에서 어항기본계획에 반영 할 교량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촌·어항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 비 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허가를 득하여 시설하여야 함.

1-70. 간석지 대상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한 타 지자체 선례 (연안계획과-1659, 2016. 5.9)

가) 질의요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제12조제2항에 따른 '포락지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 주체 및 간석지를 대상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한 타 지자체 선례가 있는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9호가목에 의하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시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으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한 것이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제12조제2항에 따른 포락지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이 조사·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 그리고, 일부 지자체(부안군)에서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양식장 등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1-71. 공유수면 내 무단 점용시설물 무상귀속 처분관련 질의 (연안계획과-2164, 2016. 6.15)

가) 질의요지

당초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다가 이후 점용·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1조제6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1조제6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자"에는 ①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자, ②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자가 계속해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자, ③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가 취소된 자가 계속해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자 등이 해당되며,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변상금 징수, 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등의 처분의 대상임.

○ 아울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서는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자, 점용·사용허가 받은 면적을 초과한자, 점용·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자, 점용·사용허가와 관계있는 사업이 폐지된 자, 점용·사용허가가 취소된 자 등에 대해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회복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1조제4항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해양환경 등에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원상회복 의무자의 신청 또는 공유수면관리청이 직권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으며,
- 같은 법 제21조제6항은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자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된 경우 해당 공유수면에 있는 인공구조물 등에 대해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

마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관련 사항

1-72. 채광계획변경인가에 따른 공유수면점용허가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질의 (연안 58160-69, 1998. 2.24)

가) 질의요지

1) 공유수면점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 또는 점용허가기간 연장허가 신청 및 허가의 절차없이 공유수면 점용료만 납부하여도 되는지?

3) 공유수면점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되는지?

나) 회신내용

1) 및 2) 광업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면서 점·사용할 공유수면 면적, 점용기간 등 점·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 당해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하였다면 그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별도로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채광계획인가(변경인가)를 받은 공유수면점·사용면적과 기간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점·사용료만 납부하면 됨. 그러나 채광계획인가시 공유수면점·사용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전에 공유수면점·사용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에 따라 점·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3)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제7조(특별관리해역안에서의 해역이용행위의 제한등) 또는 제10조(기타지역 해역이용협의)에 따라 허가 행위가 있기 전에 미리 해역이용협의가 이루어져야하며, 기간연장시에도 마찬가지로 협의를 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점·사용기간이 단기간이고 허가조건 및 내용(점용면적 등)에 변동이 없으며, 공유수면점·사용허가기간의 연장으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등 특별히 다른 사정변경이 없다고 당해 관리청에서 판단할 경우에는 해역이용협의를 하지 않아도 됨

1-73. 공유수면 연장허가처리의 적정여부 질의(연안 58160-91, 1999. 2.27)

가) 질의요지

A가 공유수면에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은 기간중에 그 공작물설치권에 대한 양도양수를 득하여 대표자를 A와 B로 변경한 상태에서 A가 단독으로 동 설치연장허가 신청을 한 것을 관리청이 A와B에게 공동으로 연장허가처분을 한 경우의 연장허가처리의 적정여부 및 B에 대한 연장허가의 효력

나) 회신내용

A가 단독으로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A와B에게 연장허가한 것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며, B에 대한 연장허가처분 또한 효력이 없다고 봄. 다만, A에 대한 연장허가의 유효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임

다) 이 유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허가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중의 1인을 대표로 정하여(신청서에 명기)신청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신청을 하지 아니한 B를 포함하여 연장허가를 한 것은 행정행위의 객체에 대한 명백한 잘못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며, 신청이 없은 B에 대하여 연장허가 처분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봄.

1-74. 접안시설용으로 점·사용허가받은 구역에서 규사를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연안58160-147, 2000. 2. 8)

가) 질의요지

1) 선적시설 및 접안시설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구역(197,614㎡) 내의 일부구역(19,600㎡)에서 수심확보를 위하여 규사를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2) 새로운 점·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을 경우 이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1) 공유수면관리법(1999. 8. 9 개정·시행된 공유수면관리법을 말함) 제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선적시설 및 접안시설 설치목적으로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은 구역중 일부구역에서 수심확보를 위하여 준설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이미 허가받은 공유수면의 점·사용목적에 추가하여 점·사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규사채취에 따른 공유수면점·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하여야 함

○ 또한, 선박운항을 위한 수심확보(항로)를 위하여 규사를 준설하고자 하는 경우 광업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채광인가를 받은 자 및 준설공사업 면허를 받은자가 준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 및 건설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2) 공유수면 점·사용목적(선적시설 및 접안시설, 규사채취)별로 점·사용의 기간과 면적을 정하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1-75. 허가받은 시설외에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점·사용허가 대상 여부 (연안 58160-199, 2000.3.13)

가) 질의요지

해수인수 목적으로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아 점·사용중에 있으나 추가로 배수시설(파이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

나) 회신내용

해수인수 목적으로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아 해수인수용 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점·사용중에 있으나 추가로 배수시설(파이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수면점·사용의 목적 또는 면적의 변경은 물론 점·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용도 또는 규모의 변경을 수반하므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4항 및 동 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1-76. 특화사업자가 사업자 변경 없이 사업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경우 사업권의 임대·위탁 가능 여부 (연안계획과-1154, 2014. 4.21)

가) 질의요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승인된 특화사업자가 사업자 변경 없이 사업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경우 사업권(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의제)을 임대·위탁함이 가능한지, 완화해 줄 방안은 있는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8항은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상기 규정은 공유수면을 선점하여 타인에게 임대·전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것임.

○ 따라서,「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상 사업권의 임대 및 전대에 관한 별도규정이 있거나 공유수면법 제8조제8항의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의 임대·전대를 하여서는 아니됨.

1-77. 마리나 공사 후 직접 점용면적만을 대상으로 점용면적 변경 신청 허가 가능 여부 (연안계획과-1688, 2014. 6.3)

가) 질의요지

남천항(어촌·어항법상 어항이 아님) 전체를 직·간접 점용면적으로 하여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마리나 시설 설치공사 후 간접 점용면적을 제외하고, 직접 점용면적만을 점용면적으로 하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변경허가가 가능한지

- 점용·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과 다르게 공사한 경우 사용료 부과 대상인지, 변상금 부과 대상인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규정」별표4 "공유수면 점용·사용 면적 산정기준", "1. 적용원칙", 가목은 " '간접 점용·사용면적'이란 직접 점용·사용으로 인하여 타인의 점용 또는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제한을 받는 범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마리나 시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간접 점용면적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될 경우 해당 면적을 점용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가하며,
- 다른 사람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라면 공유수면 관리 지장여부,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 점용·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과 다르게 공사한 경우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조치는 별론으로 하고) 점용·사용 허가 내용과 면적 범위 내에서 점용·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하고, 점용·사용 허가 내용과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함.

1-78. 접안시설로 이용되는 공유수면에 대해 이용선박의 변경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필요 여부 (연안계획과-1849, 2014. 6.22)

가) 질의요지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어항시설에 도항선 접안을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 도항선의 교체 및 변경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대상인지 여부

나. 도항선 접안시설에 대한 점용·사용 허가 시 도항선의 규모, 이용가능 척 수를 특정해야하는지 여부

다. 도항선 접안시설로 이용되는 어항시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음)의 안전관리에 대한 권한과 의무는 공유수면관리청에 있는 것인지, 도선면허관청에 있는 것인지

나) 회신내용

가. 질의 '가'항에 대하여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각 호는 변경허가 대상으로 "1. 점용·사용허가 기간의 연장", "2. 점용·사용의 목적 또는 면적의 변경", "3.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용도 또는 규모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도항선의 교체 및 변경은 점용·사용 변경허가 대상이 아님

나. 질의 '나'항에 대하여

○ 공유수면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 질의 '다'항에 대하여

○ 상기 어항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어느 관청이 권한과 의무를 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됨.

1-79. 공유수면 점용 · 사용 변경신고 없이 법인명칭 변경 시 과태료 부과 여부 (연안계획과-1220, 2015. 4.9)

가) 질의요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은 법인이 점용·사용허가 변경신고 없이 법인명칭을 변경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신고기한은 언제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법」제9조는 점용·사용허가 사항 중 법인의 명칭·대표자·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66조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임.

1-80. 공유수면 점용 · 사용 변경허가 시 해역이용협의 여부 (국민신문고, 2015. 8. 10)

가) 질의요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을 때 해역이용협의를 하였는데 변경 허가시에도 해역이용협의를 해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변경사항에 따라 해역이용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 우선, 허가만료에 따른 기간연장 시에도 해역이용협의를 해야하며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역이용협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함

○ 그러나, 변경하려는 사업규모가 당초 허가된 사업규모보다 축소되는 경우와 변경된 사업규모가 간이해역이용협의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역이용협의 하지 않아도 됨.

바 허가의 기준 및 권리자의 범위

1-81. 광업권이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자인지 여부(연안 58160-48, 1999. 1.28)

가) 질의요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권리자의 동의서 범위에 광업권이 포함되는지

나) 회신내용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신청시 동의서를 제출하는 권리자라 함은 당해 공유수면의 점·사용으로 인하여 당해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있는 자를 말하므로 광업법령에 의해 채광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광업권자는 권리자에 포함되지 않음

* 채광계획을 인가 전에 공유수면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만 인가받은 채광계획에 의거 공유수면 점·사용이 가능함

다) 이 유

광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은 광구내에서 “허가된 광물을 채굴하여 이를 취득”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허가된 광물이 부존하는 공유수면 자체에 대하여 어떠한 물권적인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아닌만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자로 볼 수 없으며, 광업법 제47조제1항 및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공유수면관리법상 점·사용허가를 의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채광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광업권의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음

1-82. 공유수면관리법령상 권리자(연안 58160-561, 1999.11.9)

가) 질의요지

1)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와 관련하여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의 의미

2)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인접”의 범위

나) 회신내용

1)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한 토지 또는 점유자를 동법제7조본문의 규정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의 범위를 예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은 인접한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

2) 인접의 범위는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신청한 공유수면 구역에 직접 접한 토

지뿐만아니라 당해 점·사용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이웃하는 토지까지 포함된다고 보지만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서 정한 권리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사용허가를 신청한 위치·목적·설치 하고자 하는 공작물의 내용 등을 종합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1-83. 구거에 인접한 토지소유자가 권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연안 58160-587, 1999.11.15)

가) 질의요지

국유인 구거에 진입도로 목적으로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구거에 인접한 토지에 피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함에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나) 회신내용

공유수면(구거)점·사용으로 인하여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당해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동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7호 및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에 해당되므로 동 권리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점·사용허가가 가능함

1-84. 공유수면관리법상 권리자 관련(연안58160-700, 1999.12.16)

가) 질의요지

1) 공유수면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자의 범위

2) 권리자의 동의없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한 경우 이의신청 또는 허가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3) 이의신청이 가능한 기간(시점)

나) 회신내용

1) 공유수면관리법령(이하 1999.8.9 개정·시행된 것을 말함)상 권리자라 함은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서는 인접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을 권리자로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란 공유수면점·사용허가로 인하여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당해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동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어야 함을 의미함

2) 공유수면관리법상 권리자의 동의없이 공유수면을 점·사용허가한 경우 이의신청 또는 이의신청이 가능한 시점에 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동법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공유수면의 점·사용에 동의를 허가기준(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권리자의 동의없는 점·사용허가는 취소(무효)할 수 있는 처분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공유수면관리법상 권리자인지 여부는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사용허가를 신청한 위치·목적·설치하고자 하는 공작물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게 됨

1-85.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신청구역 인접 토지 소유자 권리자 대상 여부 (연안 58160-140, 2000.2.21)

가) 질의요지

공유수면관리법령상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구역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권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현행 공유수면관리법령상 권리자라 함은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점·사용허가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하며,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서는 인접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을 권리자로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란 공유수면점·사용허가로 인하여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당해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동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 할 수 없게되는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어야 함을 의미함

○ 따라서, 공유수면관리법상 권리자인지 여부는 점·사용허가를 신청한 공유수면의 주변 여건, 목적, 인접토지사용의 제한 및 피해발생 여부 등을 관리청이 종합검토하여 판단·결정할 사안임

1-86. 공유수면(구거) 점·사용 권리자 범위(연안58160-154, 2000. 2.29)

가) 질의요지

1)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의 구체적 범위

2)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와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6호의 “권리자”가 동일한 것인지 여부

3) 개인소유 토지 A,B중간에 있는 공유수면(구거)을 점·사용하고자 B토지 소유자가 점·사용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인접토지소유자인 A(A는 무단으로 소나무를 식재하고 있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1) 및 2) 현행 공유수면관리법상 권리자라 함은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점·사용허가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하며,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서는 인접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을 권리자로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라 함은 공유수면점·사용허가로 인하여 인접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당해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동 토지 등을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어야 함을 의미함

- 따라서, 공유수면관리법령상 권리자인지 여부는 점·사용허가를 신청한 공유수면의 주변여건, 목적, 인접토지사용의 제한 및 피해발생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관리청에서 판단·결정할 사안임

3)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사용한 자(A)는 공유수면관리법령에 의한 권리자로서 볼 수 없으나 인접토지 소유자로서 A는 위 “가”항의 권리자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권리자로 볼 수 있음

1-87.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 및 어업권자 동의 필요 여부 (연안계획과-594, 2011.3.17)

가) 질의요지

1)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본문(법률상 최대 허가기간의 1/2이상 허가) 보다 단서 규정이 우선하는지 및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유 또는 범위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신청기간이 법 제11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기간 이내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인정하여 점용·사용허가, 협의 또는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보상금을 공탁받은 어업(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3) 보상금 수령을 거부한 상태에서 보상금이 공탁된 어업권을 양수한 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4) 피해보상 기준일(고시일 또는 합의일) 이후 신규로 면허된 어업(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5) 어민대표와 합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어업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보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서 제출로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6) 부관어업권자(원전 온배수로 인한 보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어업허가)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제·개정 취지는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기간보다 훨씬 짧은 단기간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허가함에 따라 공유수면의 허가 신청 민원인의 어려움이 커 신청인이 법률에 따른 기간 이내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인정하여 점용·사용허가, 협의 또는 승인하도록 하고자 한 것임
따라서 본 법령의 취지 상 본문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단서규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계획, 국방 또는 해상교통 안전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2분의 1 이하로 점용·사용기간을 정할 수 밖에 없는 경우로 그 범위를 최대한 좁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점용·사용허가로 인하여 야기될 타인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보상을 하도록 하여 권리자를 보호하고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1987.4.14. 선고 85다카2313 판결)에 의하면 변제공탁이 유효한 이상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어업피해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어업피해에 대한 변제의 효력으로 피해보상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탁받은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그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어업피해 보상금을 공탁하였으나 보상금 수령을 거부한 상태에서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이미 어업피해를 변제한 어업권을 그대로 양수받은 것이므로 양수인을 새로운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로 보거나, 권리자로 인정하더라도 동의를 받는 것은 (질의 나.)의 답변내용과 같은 사유로 공탁을 통하여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었으므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4) 대법원 판례(2007.5.31. 선고 2005다44060 판결)에 의하면 공유수면의 어업자에게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 등의 고시일 및 사업시행 당시 적법한 면허어업자이거나 허가 또는 신고어업자로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할 것임
또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면허를 신규 취득하거나 새로 허가를 받은 어업(권)자는 그 공유수면에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허가·신고어업의 제한이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제한을 전제로 하여 한 것으로 어업(권)자는 당시의 환경을 수인한 것이므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청자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이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하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의 허가를 할 때 수산업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수산에 관한 전문기관·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하 '전문기관 등'이라 함)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현 시점에서는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 판단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을 경우 사실상 동의서 징구대상을 알 수 없으므로 어민대표와 합의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보상계획의 공고를 거쳐 전문기관의 어업피해범위 및 정도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면서 위 조사결과에 따라 보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다면 보상추진계획서를 동의서로 갈음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6) 수산업법 제12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하는 경우로서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어업면허를 제한하거나 그 어업면허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법적 하자 없는 부관으로 원전 6개호기 가동을 위한 신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 시 원전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보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전제로 어업허가를 하였다면 어업(권)자는 허가 당시의 어업환경을 수인한 것이므로 점용·사용허가기간 연장 시 (질의 라.)의 답변 내용과 마찬가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움

1-88. 공유수면을 이용하여 도로개설 시 인접토지 권리자 동의 필요 여부 (연안계획과-2200, 2014. 7.24)

가) 질의요지

민원인이 공유수면을 이용하여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인접토지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청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가 있으면 그 권리자가 동의한 경우 등에 한하여 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에 해당되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서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그 공유수면 또는 인접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토록 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 필요 여부는 해당 공유수면 관리청이 당해 허가와 관련한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1-89. 점 · 사용 허가지역 임시 주차장 사용자의 피해 예상 권리자 해당 여부 (연안계획과-2797, 2014. 9.24)

가) 질의요지

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지역에서 약 350미터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민원인이 주택까지의 진입로가 급경사로 겨울철 폭설 및 도로 결빙 시 허가지역을 임시 주차 목적으로 사용해오고 있었기에 허가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권리자 해당 여부

나. 점용·사용허가 기간 만료일(2014.12.31) 이후, 재허가 신청 시 허가 지역 일부에 대하여 공공용지로 인정하여 불허할 경우 허가 대상자의 권리 제한 등 법률 저촉 여부

나) 회신내용

가. 질의 '가'항에 대하여

○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라 함은 같은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서 인접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을 권리자로 규정하고 있음.

-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하여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당해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어야 함을 의미함.
- 따라서, 권리자인지 여부는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한 공유수면의 주변 여건, 목적, 인접 토지 사용의 제한 및 피해발생 여부 등을 공유수면관리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나. 질의 '나'항에 대하여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 종료 이후 재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의 판단 하에 점용·사용 불허는 물론 조건부 허가가 가능함.

1-90. 공유수면 위 데크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 · 사용 관련 (연안계획과-2982, 2014. 10.15)

가) 질의요지

가. 점용·사용허가 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용도 또는 다른 사람(기업)에게 일시적 임대하여 행사장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장소 사용료 없이, 식사비만 받고 이용 가능한지 여부

다.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한 행사는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라. 기타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 여부 등

나) 회신내용

○ (질의 가 관련)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 다만,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데크)의 사용에 관하여는 점용·사용허가 시 시설물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시설물의 용도 변경을 위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

○ (질의 나~라 관련) 점용·사용허가 시 데크의 용도와 허가 조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1-91. 점사용 예정지 인접지역의 동일목적 점 · 사용 허가지의 피허가자의 권리 (연안계획과-1985, 2015. 6.5)

가) 질의요지

해양수산레저업을 위해 레저기구 접안용 부잔교 설치를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인근 500m 이내 같은 목적으로 점용·사용허가 받은 피허가자를 권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당해 공유수면 점용·사용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자를 권리자로 보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권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허가기간 동안 피허가자에게 해당 공유수면을 독점적으로 점용·사용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지 인근 공유수면에 대해 동일 행위 및 사업 등에 대한 독점권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권리자로 볼 수 없을 것임.

1-92. 개천 구거의 불법매립 점유에 대한 유권해석 (연안계획과-3109, 2015. 9.10)

가) 질의요지

가. 불법 점용·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원상복구 명령 진행 중에 원상복구 없이 변상금 납부 후에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지

나. 불법 점유사실에 대하여 공유수면법의 어떤 조항에 저촉되며 처벌조항은 무엇이며, 원상복구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 것인지

다. 허위사실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서는 허가 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가. 질의 '가'항에 대하여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은 기간을 정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음.

- 다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도로 등으로 이용되어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국방 및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해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사유가 있으면 공유수면관리청에서는 원상회복 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음.

- 아울러,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점용·사용한 시설물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해 점용·사용허가 신

청이 있는 경우, 공유수면의 주변 여건 및 이용사항 등을 검토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서 점용·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임.

나. 질의 '나'항에 대하여

○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할 경우 법 제15조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며, 법 제62조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또한 원상회복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공유수면관리청이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원상회복 대상 공유수면의 여건에 따라 적정한 기간을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

다. 질의 '다'항에 대하여

○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공유수면관리청은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58조에 따라 사실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청문을 하도록 하고 있음.

1-93. 공유수면 점 · 사용허가와 관련한 권리자 범위 (국민신문고, 2015. 12. 31)

가) 질의요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의 범위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권리자의 범위를

ⅰ)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

ⅱ) 「수산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입어자

ⅲ) 「수산업법」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자

ⅳ) 「수산업법」제43조제2항제2호제3호 및 같은조 제3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자

ⅴ) 「공유수면매립법」제9조에 의한 매립면허를 받은 자

ⅵ) 인접한 토지, 공작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ⅶ) 조선소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으로 규정

○ 또한,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의하면 관리청은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점사용허가로 인하여 권리자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인접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지의 여부와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당해 공유수면 또는 인접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유수면관리법상의 권리자인지 여부는 점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한 공유수면의 주변여건, 목적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함.

1-94. 민간사업자와 해당 지자체간의 권리 및 의무 이전 가능 여부 (연안계획과-59, 2016. 1.7)

가) 질의요지

민간사업자의 개발사업 시행 후 기부채납에 따른 창원시 소유인 부잔교를 이용하고, 창원시가 허가 받은 후 민간사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협약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현재 시점에서 창원시가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제16조(권리·의무의 이전 등)에 따르면 점용·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는 이전하거나 상속할 수 있으며, 권리·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을 신고한 자는 공유수면법에 따른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창원시-두산개발(주)-공간금속(주)-(주)가고파랜드-(주)돝섬해피랜드로 이어지는 공유수면 점용·사용은 공유수면법 제16조 권리·의무의 이전 등을 통해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변경)를 받은 사항으로 사료됨
- 다만, 귀 시의 질의내용은 공유수면법상 법령해석의 문제라기보다는 창원시와 민간사업자간의 협약이행 등에 대한 것으로 판단됨.

1-95. 농로를 통한 건축허가 관련 질의 (연안계획과-498, 2016. 2.4)

가) 질의요지

구거 부지 내 신규 개설된 농로를 진출입로 하여 건축허가 가능 여부

나) 회신내용

○ 구거 부지 내 신규 개설된 농로는 「농어촌정비법」상의 농업기반시설안의 공유수면으로 판단되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유수면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96. 권리자의 동의 없이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 취득 가능 여부 (연안계획과-1000, 2016. 3.21)

가) 질의요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허가 가능하나, 동의를 득하지 않고 허가가능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르면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는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 수산업법상의 입어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을 권리자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은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하여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당해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그 공유수면 또는 인접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검토하여야 함

- 따라서 공유수면관리청에서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공유수면 인접부지 토지소유자가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인지 여부를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한 공유수면의 주변여건, 점용·사용 목적, 인접 공유수면사용의 제한 및 피해발생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가 있다면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허가가 가능할 것이나 피해가 예상되지 아니한다면 권리자 동의가 없어도 허가가 가능할 것임.

1-97.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 권리 · 의무의 이전 등 신고에 대한 수리 관련 (연안계획과-1138, 2016. 3.30)

가) 질의요지

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목적사업 양도 또는 승계에 따라 그 목적사업(바다골재채취업)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취득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권리·의무의 이전이 아니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득한 허가권만을 금전적 매매에 의하여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나. 공유수면 점용·사용 권리·의무의 이전을 신고하는 자가 신고 당시 점용·사용허가 목적 및 조건에 부합된 사업과 연관되지 않았는데도 공유수면관리청이 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고서 제출 현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지 내의 지장물 및 인접 토지의 소유자(진출입로 사용)가 존재하는 데도 불구하고 권리자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이 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가. 질의 '가'항에 대하여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제16조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하거나 상속할 수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 등을 참조한다면,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득한 허가권만을 금전적 매매에 의하여 이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권은 공법상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허가를 받은 자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그 점용·사용허가권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고, 독립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다가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권리도 아니어서 강제집행도 가능(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다7873판결, 대법원 2013.4.26. 선고 2012두20663 판결)

나. 질의 '나'항에 대하여

○ 공유수면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권리·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가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하며, 신고한 자는 공유수면법에 따른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인의 점용·사용허가 목적 및 조건 부합여부 등 확인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으므로 공유수면관리청은 신고 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다. 질의 '다'항에 대하여

○ 공유수면 점용·허가지 내의 지장물 및 인접 토지의 소유자 권리자 동의(사유지 진출입로 동의)는 공유수면법 제16조의 권리·의무의 이전 등과는 관계없는 사항으로 판단

1-98.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권 권리의무 승계관련 (연안계획과-1122, 2016. 3.30)

가) 질의요지

가. 파산관재인이 허가권을 금전적 거래로 권리·의무 이전(양도양수)가능 여부

나. 양수인의 자격여부 확인 후 승계 수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권리·의무 승계권을 매수한 것은 기존에 받았던 인근 토지주의(진출입로 사용) 동의서까지 권리승계가 된 것인지 여부

나) 회신내용

가. 질의 '가'항에 대하여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제16조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하거나 상속할 수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의 권리·의무 이전(양도양수)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권은 공법상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허가를 받은 자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그 점용·사용허가권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고, 독립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다가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권리도 아니어서 강제집행도 가능(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다7873판결, 대법원 2013.4.26. 선고 2012두20663 판결)

나. 질의 '나'항에 대하여

○ 공유수면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권리·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가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하며, 신고한 자는 공유수면법에 따른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양수인의 자격여부 확인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으므로 승계 수리 시 자격여부 확인은 불필요

다. 질의 '다'항에 대하여

○ 사유지를 진출입로 사용하기 위한 동의서의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의 이전과는 관계없는 사항으로 판단됨.

1-99. 구거 부지 및 하천 부지의 실시계획승인(신고) 및 준공검사의무 여부 (연안계획과-1436, 2016. 4.21)

가) 질의요지

국토교통부 소유 구거 부지 및 하천 부지(하천법을 적용하지 않는 하천부지)에 대해 점용·사용허가 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인 공유수면법 제17조 내지 제18조 규정을 적용하여 실시계획승인(신고) 및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제2조에 따라 "공유수면"이란 바다, 바닷가, 하천·호소·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말함

- 따라서, 국토교통부 소유 구거부지 등을 포함하여 국유인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공유수면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사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징수 및 면제·감면

1-100. 공유수면를 허가없이 점·사용한 경우 점·사용료를 몇 년간 소급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연안 58160-211, 1998. 6.12)

가) 질의요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면적보다 증가된 면적을 점·사용하였을 경우 증가된 면적에 대한 점·사용료를 5년간 소급할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점·사용허가의 당초면적보다 증가된 면적은 허가없이 점·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 경우 점·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허가없이 점·사용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징수기간에 대하여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를 예산회계법 제96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69조제1항에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5년간 공유수면점·사용료를 소급하여 일시에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90누 769판례, 1990.22.21 선고)도 있음

1-101.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 시 별개 접안료 등 부과 여부(연안 58160-186, 1999. 5.4)

가) 질의요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직·간접점용)을 받은 계류시설에 허가목적과 다르게 당해시설을 사용하였을 경우 별개의 접안료 또는 정박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계류시설 및 공유수면(직·간접으로 점용) 면적에 대하여 점·사용료를 납부하였다면 당해 시설물을 당초 허가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다 하여도 이와 별개로 접안료 또는 정박료를 부과할 수 없음

○ 다만, 허가받은 시설물을 당초 허가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는 허가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관리청이 허가취소 등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1-102.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시 관계기관과 협의(연안 58160-299, 1999. 7.1)

가) 질의요지

○○군수가 해안선 출입시 군부대의 승인이 필요한 작전지역인 공유수면(바다)에 대하여 군부대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육상양식어업을 위한 해수인수 및 공작물 설치 허가('95.6.9)"함에 따라 군부대의 출입통제로 동 공유수면을 점·사용(공작물설치)하지 못하면서 공유수면 점·사용료('95.6.9~'98.10.9)만을 납부하였는데 이는 ○○군수가 군부대와 협의없이 허가한 행정행위의 하자에 기인된 것이므로 동 점·사용료는 환불 되어야 되는 것 아닌지

나) 회신내용

환불함이 타당함

다) 이 유

○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제2항에서 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한 것은 다른 국가계획 등에 의거 당해 공유수면의 점·사용이 규제되는지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여 법적, 현실적으로 점·사용이 가능한 경우 점·사용허가를 하도록 하기 위함

○ 따라서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3조에서는 도시계획과 군사시설 및 해군기지와 관련이 있는 경우의 관련기관을 명시한 것이므로 이와는 별개로 그외의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소관 행정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함

○ 이와관련,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및 해군기지법에 의한 기지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군부대에서 판단할 사안이므로 공유수면관리청의 판단만으로 협의를 생략할 수 없다고 봄

○ 또한 점·사용허가한 공유수면(바다)에 대한 군부대의 출입통제가 정당한 근거(해안출입통제규정 제14조)에 따라 이루어 졌으므로 그 공유수면(바다)에 대한 점·사용이 법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에 대한 피허가자의 귀책사유는 찾을 수 없음

○ 더욱이 이후 동일한 곳의 공유수면(바다)에 대하여 점·사용허가를 하면서 군부대와 미리 협의를 하고 그에 따라 점·사용허가를 한것으로 보아 당초의 점·사용허가시 군부대와 협의를 하지 아니한 것은 필수적인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

1-103. 육상종묘생산어업 목적 해수인수 시 점 · 사용 대상 및 감면 대상 여부(연안58160-197, 2000. 3.13)

가) 질의요지

육상종묘생산어업을 하는 경우에 해수인수을 위한 파이프설치시 공유수면점·사용허가대상인지 여부와 점·사용료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수산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어업권자(면허 또는 허가어업)는 당해 어업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각종 행위가 허용되나 육상종묘생산어업은 수산업법 제44조에 의한 신고어업으로서 어업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육상종묘생산어업에 필요한 인수·배수시설 등을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점·사용허가를 따로 받아야 함

○ 이 경우 공유수면점·사용료는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감면대상임

1-104. 공유수면점·사용허가기간 만료전 지적공부등록 가능여부 질의 (연안 58160-108, 1998. 3.26)

가) 질의요지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원상회복 조건으로 점·사용허가를 받아 현재 허가기간 연장중인 토지에 대하여 원상회복 면제를 받은 경우 허가기간 만료 이전에 관련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공유수면중 지적공부상에 등록이 가능한 토지화된 토지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사용허가기간 연장중인 경우에도 국유재산(토지)으로 취득 및 지적공부등록이 가능하며,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소재 거북섬 등이 사례임

다) 이 유

○ 공유수면중 지적공부상에 등록이 가능한 토지화된 토지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법령에서 점·사용허가기간중에 토지로 취득함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지적법 및 국유재산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토지취득 및 등록이 가능하며,

○ 더우기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당해 공유수면점·사용(연장)허가시 허가조건 제7호에서 토지로 신규등록할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고, 동 조건 제2호에서 점·사용허가기간만료 이전이라도 "국유재산으로 취득시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별도로 국유재산사용허가를 신청하도록"조건을 부여하였음

1-105. 모래의 채취로 인한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의무 (연안 58160-155, 1999. 4.14)

가) 질의요지

모래채취를 위한 점·사용허가기간이 만료하였거나 점·사용을 폐지한 경우에 이미 채취한 모래에 상당하는 흙 등을 되메우는 등의 원상회복의무가 있는지

나) 회신내용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토석이나 모래를 채취한 후 그 허가기간이 종료되거나 점·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이미 채취한 토석이나 모래에 상당하는 흙 등을 되메워 원상회복할 대상이 아님

다) 이 유

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서 원상회복은 공유수면에 설치한 시설물이나 공작물 또는 토석 기타의 물건을 제거하여 공유수면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뜻하므로 공유수면상태를 유지하면서 토석 또는 모래를 채취한 경우는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것임. 다만, 토석이나 모래채취로 인하여 인접 제방·도로 등의 붕괴가 우려되거나 수심이 너무 깊게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미 채취한 토석이나 모래에 상당하는 흙등을 되메우게 할 필요가 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1-106.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받아 설치한 시설물과 다르게 시설물을 설치 한 경우 설계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연안 58160-431, 1999.9.8)

가) 질의요지

공유수면(구거)에 암거(2.0×2.0×1련, L=46M)를 설치하여 진입도로 목적으로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았으나 당초 허가내용과 다르게 흄관(1500mm)을 설치한 후 준공계를 제출하였으나 당초 허가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재시공 지시가 있는바, 홍수시 지장이 없으므로 흄관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나) 회신내용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공작물의 종류,형태,규모, 공유수면으로의 원상회복 가능성 및 홍수시 피해발생 여부와 관계기관의 협의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하게되며, 질의요지와 같이 당초 암거설치를 목적으로 점·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이를 흄관으로 대체하여 설치하였다면 공유수면점·사용의 범위와 설치하고자 하는 공작물의 대상을 벗어난 것임

1-107.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받은 공작물의 규모를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 철거하여야 하는지 여부(연안 58160-506, 1999.10.19)

가) 질의요지

공작물(선박 접안시설)설치를 위한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점·사용허가 규모(면적)를 초과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그 초과시설물을 반드시 철거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허가받은 사항(기간,목적,장소,규모/면적 등)에 적합하도록 점·사용 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따라서, 공유수면상에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그 다르게 설치한 부분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점·사용에 해당되어 공유수면관리법 제12조제2항의 대상이 됨과 아울러 공유수면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징수조치와 공유수면관리법 제21조의 벌칙규정이 적용됨

○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설치한 공작물에 대해서는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당해 공유수면관리청에 신청할 수 있으나, 그 변경허가여부는 허가없이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 하더라도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사용허가신청 불가피성 여부, 시설물의 원상회복(철거) 및 재설치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 최소화 필요여부, 공유수면관리·운영상 지장여부, 관계기관 협의의견, 권리자가 있는 경우 권리자의 동의 여부 등을 공유수면관리청이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할 사항임

1-108.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조건 위반시 취소 가능여부 (연안 58160-640,1999.11.30)

가) 질의요지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시 타법률에 의한 허가·신고 등을 받도록 허가조건에 명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점·사용허가 취소가 가능한 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목적에 따라 점·사용하여야 하며, 점·사용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제4항,동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사용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당초 허가받은 목적(활어 및 수산물판매)을 벗어나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한 경우 공유수면관리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를 받지아니하고 공유수면점·사용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허가받은 점·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봄. 다만, 취소여부는 공유수면관리청이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되는 범위안에서 검토·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점·사용허가시 붙인 조건(부관)에 의한 점·사용허가의 취소(철회)권이 유보된 경우에도 당해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무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등 제한적인 범위안에서 검토·처분할 수 있음

1-109. 점·사용허가 없이 설치한 건축물에 대한 사후 점 · 사용 신청 가능 여부 (연안58160-728, 1999.12.27)

가) 질의요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에 건축물을 설치하였을 경우에 사후 점·사용허가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건축물이 들어선 토지화된 공유수면을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에 필요한 건축물 및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통합관계획 등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공유수면점·사용허가가 검토될 수 있으나 허가없이 설치한 건축물은 점·사용허가의 대상이 아님

○ 따라서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등을 취하게 됨. 또한 공유수면은 일반국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연공물이므로 국유재산법 등에 의한 매각 등의 처분대상이 아님

1-110. 국가 대행업무 수행 히 점·사용료 감면 대상 여부(연안58160-231, 2000. 3.20)

가) 질의요지

법인 또는 단체가 수익사업목적으로 국가로부터 대행받은 업무를 수행하고자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점·사용료는 감면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거 국가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사용과 관련한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공유수면점·사용료는 전액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수상레저안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시험을 대행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점·사용료 감면대상 여부는 공유수면관리청이 동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근거 법령, 정관, 사업자체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인지 여부 등을 종합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

1-111. 구거 점용 건축물 점용·사용료 요율 적용(연안계획과-715, 2011.3.28)

가) 질의요지

○ 구거를 점용한 건축물이 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용도가 식당, 카페테리아, 창고 등인 경우에 '해당 건축물을 인공구조물로 판단하여 3%를 적용해야 하는지 또는 건축물 용도가 주택이므로 주거용으로 보고 0.5%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8조제4항에 의하여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용·사용 기간 및 목적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산정 요율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허가 목적(점용·사용의 유형)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실제 용도가 허가 목적과 달리 사용될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 후 점용·사용료 요율을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1-112. 조력발전소 점용·사용료 요율 적용(연안계획과-188, 2012.1.31)

가) 질의요지

1) 시화호 조력발전소 가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대상일 경우 점용·사용료 감면 대상 여부 및 점용·사용료 산정 방식

나) 회신내용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바닷물의 사용에 대해 점용·사용료를 징수하는 개념이므로 인위적 인·배수 여부와 관계없이 조력발전의 경우 점용·사용허가 대상에 해당됨

2) 조력발전의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을 위한 점용·사용에 해당되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되며, 점용·사용료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3.가 전기사업용수(㎥/초당 연액 20만원)"를 적용함이 타당함

1-113. 사립학교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연안계획과-1729, 2012.8.7)

가) 질의요지

○ 사립학교 내 국유재산(지목:구거) 지하에 흄관 등을 부설하여 운동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점용료 감면대상 여부1)미부과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국세기본법 및 국가재정법을 근거로 소멸시효(5년)을 적용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운동장 등 육영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한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음

1-114. 비영리 공익법인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 (연안계획과-2218, 2012.9.28)

가) 질의요지

○ 민법상 비영리 공익법인인 (사)청권사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변상금 감면 및 원상회복 의무면제 가능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공익단체 중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 그러나, 점용·사용하고자 하는 개별사업의 성격을 파

악하여 공익목적의 비영리 사업인 경우에 한하여 면제가 가능하며,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변상금에 대한 감면 규정은 없음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한 자는 동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함. 다만, 동법 시행령 제22조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유수면관리청이 직권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는 있음

1-115. 인공구조물 설치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요율 (연안계획과-2599, 2012.11.15)

가) 질의요지

○ 차량 진출입로로 점용·사용 허가한 공유수면(구거)의 점용료·사용료 산정시 인공구조물 설치를 위한 점용·사용 요율(인접 토지가격의 100분의 3)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기타 요율(인접 토지가격의 100분의 3)을 적용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별표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잔교·호안·물양장·방파제·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사용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을 적용하여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하며, 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9호 가목에서 정한 목적 외의 점용·사용의 경우에는 인접 토지가격의 100분의 0.5를 적용함

○ 여기서 인공구조물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2조 제1호에서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등과 같이 인공적인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으로 설계서에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이 반영되는 등 객관적으로 원상회복이 예정된 물건”으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공유수면관리청은 해당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목적이 인공구조물 설치·사용을 위한 점용·사용인지 아니면 단순 점용·사용인지 여부를 판단·적용하여 점용료·사용료를 부과하여야함

1-116. 하천부지 내 음식점 등 건축물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산정방식 (연안계획과-2761, 2012.12.12)

가) 질의요지

1) 공유수면(하천부지) 내 일반음식점, 주택, 건강원 및 자동판매기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

2) 공유수면(하천부지) 내 불법 건축물의 원상회복이 곤란하고 향후 현 점유자가 지속적으로 사용 예정 시 점용·사용 허가 가능 여부 또는 용도폐지 후 매각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별표2 제1호의 규정에 하천·구거 부지를 주거용으로 점용·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을 적용하여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만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 용도(상업용)로 복합 사용 시에는 인접 토지가격의 100분의 3을 적용하여야 함

○ 또한, 공유수면(하천부지) 내 불법 건축물의 원상회복이 어렵고 향후 현 점유자가 지속적으로 사용 예정 시 공유수면 관리청은 해당 공유수면(하천부지)을 용도폐지 후 지목을 변경하여 국유재산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거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을 제거하고 공유수면을 원상회복 하여야함.

1-117. 점·사용 허가 통한 교량 설치 후 진입목적 부지의 소유주 변경 시 소유권과 의무면제 (연안계획과-614, 2014. 3.3)

가) 질의요지

진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 교량을 설치하였으나, 허가기간이 만료('11.2.23)되었고, 진입 목적부지의 소유주가 경매로 변경된 상황에서,

가. 교량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나. 피허가자 및 이해관계자(채권자 등)이 교량에 대한 권리행사로서 교량을 점유, 타인에 대한 통행금지 등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다. 공유수면관리청이 교량 등 해당시설물에 대하여 직권으로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할 수 있는지?

라. 의무면제가 가능하다면, 현 사용자들에게 별도의 허가나 권리·의무의 승계 절차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질의 “가”, “나”에 대하여,

○ 민법 또는 도로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

립에 관한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님

질의 “다”에 대하여,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은 “공유수면관리청은 (생략)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원상회복 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목적물이 원상회복 의무면제 대상인지 여부는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질의 “라”에 대하여,

○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하였다고 하여 현 사용자들이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1-118.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 시 귀속주체 관련 (연안계획과-1202, 2014. 4.8)

가) 질의요지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완료 후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 받은 시설물에 대한 귀속 주체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법 제21조제4항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 면제된 경우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에 있는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돌 그 밖의 물건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시킬 수 있음.

○ 다만, 공유수면법에서는 개별 시설물 등의 귀속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도로 등 공공시설의 경우「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및 「도로법」제38조 등을 준용하여 귀속주체를 정할 수 있을 것임.

1-119. 골프장 조성 시 점용료 · 사용료 부과 관련 (연안계획과-1155, 2014. 4.21)

가) 질의요지

가. 2007.7.16. 개정된 舊「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별표2 "점·사용료의 산정방식" 시행 (2007.7.16) 전 연도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하는 토지가격은 점용·사용 허가 당시의 공시지가인지, 점용료·사용료 부과 당시의 공시지가 인지

나. 2007.7.16. 개정된 舊「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별표2 "점·사용료의 산정방식" 시행 (2007.7.16) 전 골프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점용·사용에 적용할 점용료·사용료 요율은

다. 골프장 조성을 위한 공사중인 경우 지방세법 상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골프장 부지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임야·전·답으로 분류하여 부과한 바 있는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해당 법문의 문구 뿐아니라 법령의 전체적인 체계와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 귀사가 점용료·사용료를 최초로 납부하기 시작한 2003년 당시 舊「공유수면

관리법 시행령(2001.3.31 시행)」제14조제1항은 “관리청은 점·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영 같은 조 제2항은 “관리청은 동일한 공유수면을 2년이상 계속하여 점·사용하는 자에 대한 점·사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의 변동분을 반영한 결과 당해 점·사용료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부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舊「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은 2년 이상 계속 점·사용 하는 경우 점용료·사용료의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의 변동에 따라 이를 점용료·사용료 산정 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점용료·사용료는 최초 허가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부과 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舊「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별표2(점·사용료의 산정방식) 제8호 가목에 “골프장을 위한 점·사용은 인접 토지가격에 100분의 5”를 적용하도록 개정·시행(2007.7.16.)된 바, 해당 조항은 시행일 이후 부과하는 점용료·사용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질의 “다”에 대하여,

○ 재산세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는 부과 법령, 부과 원인행위 등이 다르므로 재산세 부과의 법리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님.

1-120. 민자사업자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부과 (연안계획과-1537, 2014. 5.21)

가)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케이블카 궤도 설치면적에 대한 점용료·사용료 산정 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2항 별표2 제1호 나목에 따라 해상교량의 교각상판과 해저터널에 해당되는 요율(인접 토지 가격의 0.5/100)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5호는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에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로 지정됨 없이 다른 법률 상 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해당 조항을 적용,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음.

- 케이블카의 궤도는 "해상교량의 교각상판과 해저터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2항 별표2 제1호 나목에 따른 요율을 적용할 수 없음.

1-121. 공유수면 무단점유 원상회복 의무면제 관련 (연안계획과-2179, 2014. 6.25)

가) 질의요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없이 흄관매설 및 잡설타설 등으로 도로를 개설한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이 위법하게 설치된 도로는 민가와 농지 경작자 및 인근 업체 등 다수가 사용하는 현황상 도로이며 원상회복 후 다시 개설하게 되는 경우 지자체의 비용 부담 등이 예상됨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가 어려운 사항임.

- 원상회복 의무 면제 및 변상금 부과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사용하는 경우 공유수면법 제21조에 따른 원상회복 대상이며, 같은 법 제15조 및 제6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 및 벌칙 대상에 해당됨.

○ 다만, 이건에 대해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이 도로 등으로 이용되어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되어지는 경우 공유수면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인공구조물, 시설물 등을 무상으로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시킬 수는 있으나, 이 경우라도 위법 행위에 대해 변상금 부과 및 벌칙은 면제될 수 없을 것임.

1-122. 행정소송으로 관리청의 반려처분이 취소된 경우 변상금 부과 여부 (연안계획과-1911, 2014. 6.30)

가) 질의요지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기간연장)를 신청하였으나, 관리청이 반려처분을 하였고, 이후 행정소송에서 관리청의 반려처분이 취소된 경우 기존 공유수면 점용·사용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현재까지 점용·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변상금 부과가 가능하다면 그 부과액은?

나) 회신내용

○ 「행정소송법」제30조제2항은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청은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처분을 하여야 함

○ 이전 신청에 대하여 다시 처분을 하면서, 기간 연장을 허가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에 대하여 발생한다고 할 수 있으나, 금번 사안과 같이 민원인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여 점용료·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소송의 대상이었던 종전처분 및 그 사유 외 다른 사유로 기간 연장을 다시 불허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대한 허가가 없는 상태이므로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변상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여야 함.

1-123. 만조수위선 보다 높게 공유수면에 토사를 채워 넣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 사용 대상 여부와 어업피해 보상절차 (연안계획과-2234, 2014. 7.29)

가) 질의요지

가. 일시적인 사용(사용완료 후 원상회복)을 위하여 바지접안시설을 조성하면서 만조수위선 보다 높게 공유수면에 토사를 채워 넣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 대상인지, 매립 대상인지

나. 공사 중 권리자 동의를 받지 않은 인근 어촌계에서 어업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절차는(현재 공사중지)

나) 회신내용

가. 질의 '가'항에 대하여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는 "공유수면 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 해당 사업의 목적이 영구적인 토지조성에 있지 않고, 원상회복이 예정되어 있어 공유수면으로 회복될 것이 확실한 경우(원상회복 의무 면제 불가 조건,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등)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나. 질의 '나'항에 대하여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2조는 점용·사용 허가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가 있으면 해당 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국가 등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점용·사용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사 중 권리자 동의를 받지 않은 인근 어촌계에서 어업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청은 해당 권리가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국가 등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1-124.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설물의 변상금 부과여부 (연안계획과-2299, 2014. 8.1)

가) 질의요지

2014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진세조선(주)의 해당 시설물이 경매 처분되어 부산조선(주)에서 인수하였으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권은 2012년 1월 4일 만료되었기 새로운 점용·사용허가 이전까지 실제로 공유수면을 점용하고 있는 선가대와 잔교(26,978㎡)에 대하여 점용료·사용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또는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기간이 이미 2012년 1월 4일 종료되었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을 부산조선(주)에서 법원 결정을 통해 2014년 1월 24일 인수하고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임.

1-125. 공유수면 인근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점용료 · 사용료 산정 기준 (연안계획과-2369, 2014. 8.7)

가) 질의요지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 토지가격 산정방법

나) 회신내용

○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번지 또는 지번을 말함)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함. 이 경우 인접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감안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

○ 기타 점용료·사용료 산정 업무 관련해서는 우리부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2013.8)를 참고하시기 바람.

1-126. 건물 대지 내 편입된 구거의 원상회복 의무면제 승인 가능 여부 (연안계획과-2383, 2014. 8.8)

가) 질의요지

건물 대지 일부에 포함된 마당과 진입로로 불법으로 점용·사용하고 있는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하기 위해서는 건물 전체를 철거하여야 되므로 건물 대지 내 편입된 구거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면제 승인 가능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돌, 그 밖의 물건은 해당 시설물 등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토록 하여야 함.

○ 원상회복 의무자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행위가 적법 또는 불법 점용·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에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원상회복 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음 (2013누 2075 판결(부산고등법원) 참조)

○ 따라서, 원상회복 의무면제 여부는 해당 시설물의 원상회복 가능성, 불법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수면의 주변상황 및 공유수면 이용에 지장이 없는 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1-127. 국가어항구역 내 마리나 시설 공유수면 점용료 · 사용료 부과 여부 (연안계획과-2645, 2014. 9.5)

가) 질의요지

대포항(국가어항) 내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 처분시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가목(3)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의 경우 마리나 시설에 대한 적용 기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어촌어항법」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관한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1-128. 선박 계선장의 점용료 · 사용료 산정방법 (연안계획과-3083, 2014. 10.24)

가) 질의요지

가.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권리자에 해당하는 인근 어업면허,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자들의 범위(거리)는 어디까지인지(해상에서의 기허가자 보호 거리)

나. 본 허가시 동의한 권리자들이 본 허가자와 관련한 예기치 못한 피해가 추후 발생하였을 때 동의를 철회하고 허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지

다. 공유수면 직접·간접점용 면적에 대한 산정 방법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사항 〉

- 해저에 고정 앵커 설치, 10M길이 체인으로 앵커와 부표를 연결, 부표와 선박을 밧줄로 연결
- 평균 수심은 5M(만조시 최대 10M), 앵커를 중심으로 선박은 만조와 간조시 이동
  * 앵커 중심으로부터 부표위치까지 거리는 8.66M(피타고라스 정리)

① 선박면적만 직접점용, 간접점용은 없음

② 선박면적만 직접점용, 조수간만의 차에 따른 부표이동면적(앵커 중심 회전구간)은 간접점용

③ 부표이동면적(앵커 중심 회전구간)은 직접점용, 부표에서 선박후면까지 길이 이동면적(앵커 중심 회전구간)은 간접점용

④ 기타 산정방법

나) 회신내용

○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권리를 가진 자'란 해당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입어자, 어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기 허가자가 등이 권리의 목적에 따라 당해 공유수면을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공유수면을 적정하게 이용 할 수 없게 되는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어야 하며,

- 권리자인지 여부는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한 공유수면의 주변 여건, 목적, 공유수면 사용의 제한 및 피해발생 여부 등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서 검

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권리자의 범위(거리)를 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은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점용·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동의를 해준 권리자가 허가기간 동안에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여 권리자 동의를 철회하고 이를 이유로 허가가 취소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게 되므로,

- 일반적으로 공유수면관리청이 허가조건이나 부관으로 피허가자에게 민원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관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시 '직접 점용·사용면적'이란 해당 점용 또는 사용의 목적에 직접 제공되는 공유수면의 면적을 가리키며,

- 질의한 점용·사용허가의 경우 앵커를 중심으로 선박의 끝부분까지 연결된 선을 회전반경으로 하여 조석의 변화에 따라 선박이 이동하는 범위를 직접 점용면적으로 보아야함.

1-129. 불법설치 도로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연안계획과-662, 2015. 2.24)

가) 질의요지

공유수면 인근 대지의 소유자가 개인 사유지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해 불법 설치한 콘크리트포장 도로에 대한 공유수면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 처분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호에서는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음.

○ 원상회복 의무 면제 여부는 원상회복 가능성, 불법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수면의 주변상황 및 공유수면 이용 지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 아울러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자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한 경우에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에 있는 인공구조물인 도로를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음.

○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행위가 적법 또는 불법 점용·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음.

1-130. 특정용도지역의 점용료·사용료 부과 여부와 기간만료 시 원상회복 여부 (연안계획과-1443, 2015. 4.26)

가) 질의요지

가. 포락지 증명을 받은 부지에 대해 토지 조성을 위한 포락지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이후 점용료·사용료 부과 여부와 점용·사용 기간 만료시 원상회복 여부

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지자체가 설치한 선착장 일부를 선박이 장기 사용을 신청할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대상인지와 선착장 사용허가 만으로 갈음이 가능한지 여부

다. 전기사업용수 확보를 위해 발전소 수로에 해수를 인수하는 펌프에 점용료·사용료를 부과하였으나 그 해수의 수로가 회처리(발전소 부산물)에도 사용될 시 회처리에 사용되는 해수의 양을 따로 산정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가. 질의 '가'항에 대하여

○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유수면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대상이 아님

나. 질의 '나'항에 대하여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경우는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대상이며, 공유수면관리청이 사용기간,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점용·사용허가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다. 질의 '다'항에 대하여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는 공유수면법 제8조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위에 대해 시행규칙 별표2의 산정방식에 따라 징수하는 것으로, 물을 끌어 들이기 위한 점용·사용의 경우라도 전기사업용수는 m^3/초당 연액 20만원으로 그 외의 경우는 관경에 따라 징수하므로 회처리에 사용되는 해수의 양을 따로 산정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함.

1-131. 하천 점용료의 공유수면 점 · 사용료 조정 방법 (연안계획과-1537, 2015. 5.7)

가) 질의요지

하천구역 밖 유지인 공유수면에 대해 관리청의 행정착오로 「하천법」을 적용 하여 하천 점용료를 부과 한 경우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로 조정 관련 질의

나) 회신내용

○ 경기도 의견 : 갑 설

- (갑 설) 허가관청의 착오로 수년간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가 부과·징수되었던 사항이나 사실상 수년간 공유수면을 계속하여 점용·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하천 점용료로 부과된 금액과 공유수면 점용료간의 차액을 소급 적용할 경우에도「공유수면법」제14조 및 시행령 제17조 별표1에 따라 점용료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을 설) 하천구역밖에 있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아닌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징수함에 따라 과오납이 된 것으로 차액을 소급 적용하여 부과하는 경우 「공유수면법」제14조 및 시행령 제17조 별표1에 따른 점용료를 조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우리 부 의견 : 갑 설

- 하천 점용료로 부과된 금액과 공유수면 점용료간의 차액 산정 시 「공유수면법」제14조 및 시행령 제17조 별표1에 따른 점용료·사용료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1-132. 공유수면 점용료 · 사용료 수입금 소관 관련 (연안계획과-1594, 2015. 5.11)

가) 질의요지

새만금사업지역 안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수입금 소관

나) 회신내용

○ 원칙적으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수입금은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에 귀속한다고 할 것이며, 「새만금사업법」부칙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확정되기 전까지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권한을 새만금개발청이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해당 부칙의 규정이 지자체의 사무 중에서 인·허가 업무만을 단순히 대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인 공유수면관리청의 관리권한을 대행하는 지에 따라서 점용료·사용료의 수입금을 지자체 또는 국고(일반회계) 소관으로 정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됨.

1-133. 원상회복회복 의무 면제지역의 임의 원상회복 관련 (연안계획과-1596, 2015. 5.11)

가) 질의요지

가. 인근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은 자 등이 해당 공유수면 구간에 대한 점용·사용허가를 받고자 할 때, 공유수면에 접해있는 토지소유자인 이전의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자를 권리자로 보아야 하는지

나. 해당 공유수면을 별도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없이 원상회복 의무면제 전의 공유수면 상태(흄관매설 및 복개)로 점유하여 이용이 가능한지

나) 회신내용

가. 질의 '가'항에 대하여

○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 등에 따른 처벌문제와는 별개로, 대상지에 접해있는 토지에 피해가 예상된다면 권리자로 볼 수 있으므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공유수면관리청에서 판단하여야할 사항임.

나. 질의 '나'항에 대하여

○ 해당 공유수면은 이미 원상회복된 경우로써 인근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은 자 등이 진입로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1-134. 인접지역의 토지가 유사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경우 점 · 사용료 부과 기준(연안계획과-2636, 2015. 7.31)

가) 질의요지

대규모 특정 구역안에서 경작을 목적으로 여러 개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점용료·사용료 산정에 있어 인근 토지 대부분이 유지로 지가가 없어 인접한 토지가 유사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 그 부근 유사목적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인접토지의 0.25%로 부과 시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표 지번을 선정하여 일률적으로 부과가 가능한지

나) 회신내용

○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에 대한 점용·사용 시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방식은 같은 법 시행규

칙 별표2의 제5호에 따르며,

〈식물의 재배 또는 벌채를 위한 점용료·사용료 산정방식〉
인접토지 가격의 100분의 0.5로 하며, 인접토지가 유사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은 경우는 그 부근 유사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 가격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인접토지 가격의 100분의 0.25까지 낮춤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공유수면 관리 규정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에 대해 허가를 득한 피허가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며, 행위별로 점용료·사용료를 달리하여 징수 하는 것으로, 특정 구역 안에서 동일 목적에 대한 점용·사용의 경우라도 인접토지 및 주변여건 등이 다르므로 일률적 부과는 부적정함.

1-135. 해수사용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납부 및 점용.사용 승인 관련 (연안계획과-2739, 2015. 8.11)

가) 질의요지

2005.9.30일자로 개정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이 변경되어 추가 납부액이 발생하였으나 관리청에서 고지하지 않았고, 납부자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여 납부하지 못한 경우

- ① 추가 납부액 미납에 대해 공유수면관리청과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어느 쪽의 책임인지, ②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 개정 이전의 점용·사용허가에 인·배수 이외에 인·배수용 관로(공작물) 설치까지 포함되었다 할 수 있는지, ③ 허가기간을 공작물 존속기간 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④ 공유수면관리청이 허가기간 및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나) 회신내용

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관련

○ 이 건의 점용·사용허가와 관련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서는 점용·사용 허가서 및 점용료·사용료 징수·납부 근거 자료가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에 따라 폐기되어 확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공유수면관리청의 '공유수면 점·사용 신고수리' 공문에서 1호기에 대한 사용기간이 1999.7.1.~발전소 존치 시까지로 되어있는 사항으로 당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은 건축물 존치 시까지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1995.7.29일 개정된「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는 '공용 및 공공용의 교량·호안·방파제 등의 공작물 설치를 위한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기간을 공작물의 존속기간'으로 하였으며 1999.1.12일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음.

○ 따라서, 1995.7.29 부터 1999.1.12. 까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한 공용 및 공공용의 교량·호안·방파제 등의 공작물 설치를 위한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경우 허가기간을 공작물의 존속기간으로 한 경우가 있으나, 2007.12.27일 신설된「공유수면 관리법」제6조의2(현행 법 제11조)에 따른 점용·사용 허가기간 개정취지 및 실정과도 달라 이 허가기간을 현행 법의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법령해석을 받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사항임.

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관련

○ 2005.9.30일자 개정된「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제13조 점용료·사용료 산정과 관련하여 물을 끌어 들이기 위한 점용·사용의 경우 개정 전에는 물 사용량에만 징수 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물 사용량과 관로 매설에 대한 점용·사용의

경우에도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한 사항임.

○ 점용·사용허가와 달리 점용료·사용료는 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처음에는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 까지, 그 이후의 점용료·사용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공유수면관리청이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임.

○ 따라서, 산정방식이 개정된 이후 점용료·사용료는 변경된 산정방식으로 부과되어야 할 것으로 공유수면관리청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라 오납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것이며, 공유수면관리청에서 점용료·사용료를 산정방식 변경에 대해 안내하지 않고 잘못 부과한 책임은 공유수면관리청에 있다고 판단됨. 다만, 행정관청의 착오로 인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점용료·사용료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함.

1-136. 국립해양박물관 공유수면 점용 · 사용료 감면대상 여부 (연안계획과-3179, 2015. 9.17)

가) 질의요지

국립해양박물관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2항 제1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점용료·사용료 감면 대상 여부

- 국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여부
-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공익단체 여부

나) 회신내용

○ 국립해양박물관은 우리 부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시설(국유재산)이며,「국유재산법」제29조제1항 및「국립해양박물관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우리

부(국립해양박물관운영지원단)에서 관리하였던 국유재산 및 박물관자료의 위수탁자로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의 국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에 해당됨.

1-137. 초과 점용사용에 대한 변상금 징수 관련 (연안계획과-4178, 2015. 12.14)

가) 질의요지

가. 공유수면관리청이 사업자가 허가 받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면적보다 초과 점용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초과하여 점용사용한 공유수면에 대한 변상금 부과 여부 및 근거

나. 사업자가 기 허가 받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면적 보다 실제로는 초과하여 점용사용하면서, 공사는 하지 않고 이미 준공된 공작물의 설계도면만 실제 점용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 변경하여 실시계획변경 신청한 경우 공유수면법 제17조상의 적법한 실시계획 변경 신청인지

다. 공유수면관리청이 변상금 부과없이 초과 점용사용한 면적에 맞추어 공사는 하지 않고 이미 준공된 공작물의 설계도면만 변경하는 사업자의 실시계획 변경신청을 승인한 경우 적법 여부

나) 회신내용

가. 질의 '가'항에 대하여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한 경우에는 점용료·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함

나. 질의 '나'항에 대하여

○ 사업자가 당초 점용·사용허가 받은 면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 없이 그 점용·사용 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은 초과사용면적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후 같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점용·사용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질 수 있음

- 이 경우 사업자의 점용·사용행위는 초과된 면적에 대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사용기간 만을 변경허가 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으로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됨

다. 질의 '다'항에 대하여

○ 공유수면관리청이 같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한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은 해당 시설물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 귀속 여부 및 해당 점용·사용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르면 점용·사용실시계획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미리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점용·사용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할 수 없음.

1-138.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 관련 질의 (연안계획과-825, 2016. 3.7)

가) 질의요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별표2 제4호 가목

의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고시한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에서

- 도매가격이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 판매가격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나) 회신내용

○ 도매가격이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임.

1-139. 골프장 공유수면(구거) 점·사용료 산정방식 (연안계획과-1379, 2016. 4.15)

가) 질의요지

골프장으로 사용 중인 구거 점용료·사용료 부과방법은?

나) 회신내용

○ 골프장을 위한 공유수면(구거)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제9호 가목을 적용

○ 만약 골프장을 위한 점용·사용허가가 아니라고 귀 군에서 판단하여 산정방식을 변경한다면 변경에 따른 점용료·사용료의 소급적용은 「국세기본법」제26조2 및「지방세기본법」제38조를 준용하여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임.

3. 법령해석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변경시 당초 건축허가를 받을 때 의제처리한 인허가의 변경도 의제되는지 여부(「건축법」 제11조, 제16조 등) (법제처 법령해석례 10-0205, 2010.8.23)

가) 질의요지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 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을 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법」 제16조에서 건축허가의 변경만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허가의 변경에 따른 관련 인·허가의 변경 의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의 변경만을 받는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는지 여부

나) 회 답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 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을 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법」 제16조에서 건축허가의 변경만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허가의 변경에 따른 관련 인·허가 변경 의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의 변경만을 받았다면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지 않습니다.

다) 사 유

우선 인·허가의제 제도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서, 하나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주된 인·허가 외에 여러 가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를 받은 때에 관련 인·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면 해당 관련 인·허가 등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률상의 특례제도라 할 것이므로, 법률의 분명한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인·허가의제를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당초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이 의제되었으나 해당 의제된 인·허가 등의 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당초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 등의 변경까지 의제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제된 인·허가 등의 변경은 의제되는 법률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인·허가 등의 의제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처분권한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의제되는 법률에서의 처분권자가 당초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대해서 협의권한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이후의 관리는 처분권자가 처분한 것과 마찬가지로 관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09-0426 해석례 참조).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의제되는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허가를 할 때에 관련되는 개발행위허가 절차도 함께 처리하도록 일원화하는 한편, 함께 처리되는 개발행위허가의 실체적인 요건에 대하여는 개별법상의 권한 및 책임과 전문성이 있는 소관 행정기관의 검토를 받게 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주가 같은 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허가의 변경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제5항과 같은 인·허가 의제규정을 두거나 의제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허가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더라도 당초 건축허가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까지 당연히 의제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만약, 건축허가의 변경에 대한 인·허가 의제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건축허가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변경까지 의제된다고 해석한다면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의 실체적 요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가 있을 수 없게 되므로 이는 인·허가 의제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즉,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수반되는 건축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변경 외에 별도로 국토계획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변경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 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을 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법」 제16조에서 건축허가의 변경만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허가의 변경에 따른 관련 인·허가 변경 의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의 변경만을 받았다면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가 공유수면인지 여부 [법제처 법령해석례13-0151, 2013.8.14]

가) 질의요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는 "간석지"란 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석에 의하여 만조 시 해수가 유입되고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지번과 지목(임야)이 설정되어 있으며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나) 회 답

조석에 의하여 만조 시 해수가 유입되고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지번과 지목(임야)이 설정되어 있으며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유수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사 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지적법"이라 함)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경제수역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를 "바다"로 규정하고 있고, 공유수면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는 지적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바닷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적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는 "해안선"은 해수면이 약최고고조면(일정 기간 조석을 관측하여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해수면)에 이르렀을 때의 육지와 해수면과의 경계로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수면법 제2

조제3호에서는 “간석지”란 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조석에 의하여 만조 시 해수가 유입되고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지번과 지목(임야)이 설정되어 있으며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가 공유수면법의 적용을 받는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공유수면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르면 바다의 시작 지점은 지적법에 따른 해안선이고, 이 때 해안선은 일정 기간 조석을 관측한 결과 가장 높은 해수면을 기준으로 측정되는 것으로서 만조수위선과 같은 지점을 의미하며, 공유수면법 제2조제3호에서는 “간석지”란 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법상의 간석지는 그 개념상 항상 공유수면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바다에 포함되어 공유수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수면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규정체계를 살펴보건대, 같은 호 다목에서는 “하천·호소·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호 가목에 따른 바다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바닷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공간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자연현상에 따라 설정되는 해안선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공간의 외면적 속성이 바다 또는 바닷가의 개념정의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라 하더라도 조석에 의하여 바닷물이 드나들고 있다면 공유수면법에 따른 간석지 및 바다로서의 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종전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원상회복하는 제도가 없었으나, 구 「공유수면관리법」(1999. 2. 8. 법률 제5914호로 전부개정되어 1999. 8. 9.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공유수면관리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서 간석지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하는 행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를 추가로 규정하였으며(제4호), 구 「공유수면매립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전부개정되어 1999. 8. 9. 시행된 것) 제3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를 추가로 규정하였는데(제2호), 이 조항들은 구 「공유수면관리법」과 구 「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한 공유수면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현행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3조제2항제2호로 각각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바,

이는 본인 소유의 간석지라 하더라도 공유수면에 포함된 이상, 해당 지역을 토지로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령의 체계상 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입법정책적 견지에서 신설된 점에 비추어 보건대〔구 공유수면관리법 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발췌자료(1998. 12.,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참조〕,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으로 보는 것이 공유수면법의 개정 연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유수면법 제3조제2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같은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는 공유수면법상의 공유수면이 아니며 예외적으로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만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관련 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유수면법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도 공유수면법에 따른 매립 또는 점용·사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유수면임을 전제로 하되, 다만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유수면의 매립과는 달리 그 소유권자의 토지 소유권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목적임을 감안하여 매립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점용·사용 허가를 받도록 특례적인 조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며, 해당 조항이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의 공유수면성 자체를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석에 의하여 만조 시 해수가 유입되고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지번과 지목(임야)이 설정되어 있으며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는 공유수면법의 적용을 받는 공유수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III

공유수면 매립

1. 공유수면 매립 법령 해설

2. 공유수면 매립 관련 질의 회신

3. 법령해석

1. 공유수면 매립 법령 해설

가 공유수면 매립 개요

1) 공유수면 매립면허 관청

구 분	관 리 청 (법 제28조)	위임관리청 (법 제60조 및 영 제74조)
(1) 10만 제곱이상의 공유수면 매립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2) 항만법에 의한 무역항 ㅇ 국가관리항 ㅇ 지방관리항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3) 그 외의 구역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단, 위 공유수면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8조에 따라 제주지역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 승인 등에 관한 허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임

○ 시·도지사가 위임받은 권한 중 매립면허의 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으면 관계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함.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음

2) 주요 공유수면 매립 관련 제도 변화

농업용지 매립면허관청

○ ’62. 1.20 국토건설청

○ ’64. 5. 2 건설부(농업·수산업 목적 매립면허는 농림부)

○ ’66. 8. 3 건설부

- 단, 농림부장관이 면허·시공중인 사업은 계속 농림부장관 소관

○ ’78. 9.23 건설부(농업목적 매립면허는 농림부장관에게 위탁)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9165호) 신설

○ ’99. 8. 9 해양수산부

- 농지조성 및 축산업 목적의 매립면허를 농림부장관에게 위탁 하는 근거 규정을 공유수면매립법에 두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6348호)에서 삭제

○ ’05.10. 1 농업목적의 매림면허 위탁규정 삭제(법률 제7482호, 대통령령 제19080호)

- 단, 기 면허된 농업목적의 매립사업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

○ ’08. 2.25 국토해양부

○ ’13. 3.23 해양수산부

매립지의 매립목적 변경 제한

○ ’86.12.31 이후 : 5년

– ’86.12.31 법률 제3901호, 매립목적변경 제한 기간 신설

○ ’99. 8. 9 이후 : 20년 (기 매립면허는 경과규정에 따라 5년)

– ’99.2.8 법률 제5911호, 투기목적 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방지

○ ’10.10.16 이후 : 10년 (’99.8.9 이전 매립면허는 경과규정에 따라 5년)

– ’10.4.15 법률 제10272호, 경제발전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매립지 주변 토지의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 도모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 ’62. 1.20 이후 ①매립면허 받은 자가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②국가시설로 필요한 토지는 국유 ③기타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할 토지는 지자체에 귀속

○ ’65.11.25 이후 ①매립면허 받은 자가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②도로·호안·안벽·물양장·방파제·방사제·돌제·배수시설로 필요한 토지는 국유 ③기타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할 토지는 지자체에 귀속

○ ’86.12.31 이후 ①매립면허 받은 자가 공용 또는 공공용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②공용 또는 공공용의 매립지 사업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윤과 1년간의 자금회수기간에 대한 건설이자를 합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제외하고 남은 매립지는 국가에 귀속 ③공용 또는 공공용의 매립지 국가 또는 지방자차단체에 귀속 ④제2,3항에 의해 국가에 귀속된 것을 제외한 잔여매립지는 매립면허를 받은자가 취득

– 개발이익 국가환수, 기 매립면허는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규정 적용

○ ’97. 4.10 이후 ①빈지, 공용 또는 공공용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는 매립면허를 받은자 ②빈지, 공용 또는 공공용 외에 매립지중 사업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윤과 1년간의 자금회수기간에 대한 건설이자를 합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제외하고 남은 매립지는 국가에 귀속 ③공용 또는 공공용의 매립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차단체에 귀속 ④제2,3항에 의해 국가에 귀속된 것을 제외한 잔여매립지는 매립면허를 받은자가 취득

○ ’99. 8. 9 이후 ①공용 또는 공공용 매립지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 ②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은 국가에 귀속 ③제1,2항 해당 매립지 외에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 ④제1,2,3항 외의 잔여매립지는 국가에 귀속

매립사업의 주체

○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유수면과 투기발생이 우려되는 해안지역

-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농업진흥공사, 산업기지개발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필요 정부투자기관)이 매립하되, 매립의 목적·규모 또는 입지여건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등이 매립 〈’86.12.31신설〉
-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농어촌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기타 필요 정부투자기관)이 매립하되, 매립의 목적·규모 또는 입지여건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등이 매립 〈’97.9.28개정〉

○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유수면과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매립

-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농어촌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관광공사)이 매립하되, 매립목적·규모 또는 입지여건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등이 매립 〈’99.8.9개정〉

-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농어촌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관광공사)이 하되, 매립목적·규모 또는 입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등이 매립 〈'05.10.1개정, 발전부분을 자회사로 분리한 한국전력공사 배제〉

○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지정항만구역·국가어항구역 안의 공유수면

- 국가·지자체가 매립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경우 한국토지공사가 매립하되, 매립목적·규모 또는 입지여건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등이 매립 〈'08.6.28개정〉

○ 지정항만구역·국가어항구역 안의 공유수면

- 국가·지자체가 매립하되, 매립목적·규모 또는 입지여건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등이 매립 〈'10.10.15개정〉

3) 매립업무 처리절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법 제22조 내지 제27조)	
수립권자 : 매 10년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 변경권자 : 매립수요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변경 수립절차 : (반영요청)→관계기관(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국민안전처 사전재해영향검토서〈행정계획〉 첨부) 협의 및 시·도지사 의견수렴→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고시	→ ← 국토부, 환경부, 국방부, 국민안전처 등과 협의

⇓

공유수면매립면허(법 제28조)	
면허권자 :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등 면허관청 면허신청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환경부 사전협의**→면허신청 (환경영향평가서 첨부)→관계기관협의→검토→처분→고시	→ ← 해양수산부, 국토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국방부 등과 협의

⇓

실시계획승인 (법 제38조)	
승인가권자 : 지방해양수산청,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등 면허관청 인가절차 : 피해보상(피면허자)→신청(면허일부터 1년이내)→사전재해영향검토서〈개발사업〉 작성(해당사업)→국민안전처 사전협의→관계기관협의 (필요시)→검토→승인→고시	→ ←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의제 시 해당기관과 협의

⇓

매립공사 시행(법 제40조)
실시계획승인 내용에 따라 공사 시행

⇓

준공검사(법 제45조)	
검사권자 : 지방해양수산청, 시·도 등 면허관청 검사절차 : 공사준공(피면허자)→검사신청→총사업비산정→매립지감정평가→준공검사(매립지소유권취득)→고시	→ ← 면허관청이 감정평가 업자를 지정하여 매립지가격 평가

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1) 매립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법 제22조·제27조, 영 제25조·제26조, 규칙 제21조)

수립주기 : 10년

수립권자 : 해양수산부장관

수립요건 : 매립기본계획은 다음 계획에 적합하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수립

○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통합관리계획

○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절차 : 기본계획안 작성 → 협의(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의견수렴(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회 의견 첨부) →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 고시 → 통보 및 열람

○ 관계부처 협의사항

-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통합관리계획·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 연안정비계획,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 지역에 관한 사항
-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하천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
- 군사시설보호에 관한 사항
- 경관·생태계·습지·수질오염 등 환경 및 해양환경에 관한 사항
- 문화재 보호·관리 및 자연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 항만·어항구역·산업단지 및 농·축산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당 매립기본계획의 수립·변경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

☞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한 공유수면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환경보전·수산자원보호 등의 이유로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반려할 수 있음

○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 위원장(해양수산부 차관)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

- 근거 : 연안관리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 당연직 :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장관이 추천하는 각 1인
- 위촉직 : 연안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고시 및 통보(법 제26조, 영 제31조)

-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립기본계획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 고시내용 : 매립목적, 매립규모, 매립예정지의 위치, 신청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 검토사항(영 제25조)

○ 매립목적 및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의 타당성

○ 매립 예정인 공유수면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과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이용과의 연관성

○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매립으로 인하여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공공이용 및 접근이 제한되는 정도

○ 파도·해일 등 자연재해와 관련한 매립예정지의 안전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및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이나 연안관리지역계획 등 국가계획과의 관련성

2) 매립기본계획의 반영(법 제23조·제24조, 영 제26조부터 제31조)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법 제23조, 영 제26조, 규칙 제21조)

○ 요청권자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 또는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

○ 요청대상 :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공유수면 중 매립 필요 공유수면

○ 제출서류 : 반영요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

- 사업계획서
- 요청지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 매립의 필요성 및 매립방법을 적은 서류
-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서
-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 전·후의 경제성을 비교한 서류(매립 전·후의 비용·편익분석 등을 말한다)

- 자금조달계획서

☞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매립기본계획 우선 순위

○ 같은 공유수면에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 가능

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가 요청한 것

② 인접토지의 소유자로서 실수요자가 요청한 것

③ 제1호 및 제2호 외의 실수요자가 요청한 것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내용

○ 매립예정지의 위치와 규모

○ 매립목적

○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

○ 매립의 필요성과 매립방법에 관한 사항

○ 매립으로 인한 다음의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와 그 대책에 관한 사항

- 간석지 또는 내륙 습지의 훼손 및 변화
- 해류 및 조류의 변화와 흙이나 돌의 이동
- 수산동식물의 서식환경 등의 변화
- 매립시 투입되는 흙이나 돌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 전후의 경제성 비교에 관한 사항

환경 및 생태계 변화와 그 대책에 관한 조사서 작성례

항 목	내 용
1) 매립요청지의 현황	가) 주변여건 : 매립요청지의 전경사진(바다인 경우에는 만조 및 간조시의 사진을 말함)에 매립요청지역을 붉은 선으로 표시하고 행정구역이나 주요 지형·지물 등을 예시하여 설명 나) 주변현황 ○ 매립요청지의 인근지역에 대한 매립면적(제곱미터)·매립목적·공사기간 및 매립지이용실태 등 공유수면의 현황을 조사·기술 ○ 기타 대규모의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요를 간략히 조사·기술 다) 환경관련 지구·지역의 지정현황 : 매립요청지의 인근에 위치한 환경관련 지구·지역의 지정현황과 매립요청지와의 거리 등 개략적인 현황을 조사·기술
2) 환경·생태계의 현황	가) 매립요청지의 갯벌 또는 내륙 습지의 규모(제곱미터) 나) 생태계(인근 육상 및 해양 동·식물상)조사 ○ 인근 육상 및 해양에서 관찰되는 동·식물상의 목록 – 동·식물군락의 종류 – 계절별로 출현하는 동·식물의 종류 등 군락별 구체적인 특성 ○ 매립요청지 안의 해양생물의 종류·서식지의 특성 등 ※ 기존 문헌 또는 현황조사에 의한 개략적인 자료를 제시 다) 물리학적 환경조사 : 매립요청지의 폐쇄성의 정도·해류 및 조류의 현황과 토사의 이동실태, 조수간만의 차이 및 해변 암초군의 분포실태 등 라) 이화학적 환경조사 ○ 매립요청지역 인근의 주요 오염원 및 오염원별 오염물질의 발생량 ○ 육역·하천 및 수역 등에 대한 환경기준 및 수질 등 매립요청지의 환경상태 ※ 기존문헌 또는 현황조사에 의한 개략적인 자료를 제출
3) 매립에 따른 환경피해 저감대책	가) 매립공사와 관련한 환경피해 저감대책 나) 매립 후 매립지안의 시설물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 및 그 저감대책 다) 기타 환경상의 영향에 관한 저감대책

※ 비고 : 당해 매립사업의 위치·매립목적·규모 등을 감안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를 조사하되, 매립사업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하여야 함

3) 매립예정지의 권리설정 제한 (법 제26조제3항·제4항, 영 제33조)

기 설정된 권리 : 제한하지 아니함

새로운 권리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 불가

○ 매립기본계획수립 당시 이미 공유수면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허가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협의·승인기간의 연장협의 또는 연장승인을 하는 경우

○ 매립기본계획수립 이후에 법 제32조에 따른 손실보상 또는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설치를 배제하는 조건으로 매립면허 전까지 한시적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협의·승인기간의 연장협의 또는 연장승인을 하는 경우

○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입어자에 대하여 마을어업권의 유효기간 내에서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해당 공유수면에서 신규 어업면허를 하는 경우

○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및 육상해수양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공유수면에서 신규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공유수면에서 신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4)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 해제(법 제27조제2항·제3항)

변경권자 : 해양수산부장관

☞ 종전에는 지정항만의 항만구역과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을 제외한 공유수면의 매립기본계획변경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었으나 동 계획이 국가계획이므로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것은 법률체계에 맞지 않다는 법제처의 의견과 해양환경·생태계보전 등 종합적인 해양행정 구현을 위해 매립기본계획의 수립·변경·폐지권한을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일원화 하였음('98.8.11)

변경시기 : 해양수산부장관이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변경(반영)을 요청받은 경우

- 매립과 관련한 산업의 발전,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의 변경, 그 밖에 주변여건의 변화 등 반영

변경절차 : 매립기본계획의 수립과 같음

검토사항 : 매립기본계획 수립 시 검토사항과 같음

매립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법 제27조제1항)

○ 검토주기 : 5년

○ 조치사항 : 검토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매립기본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추가 또는 해제
- 매립예정지 면적의 확대
- 매립목적의 변경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 매립기본계획 고시 후 5년 이내에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봄

○ 매립기본계획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통보

○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사항을 관보에 고시

- 매립예정지의 위치
- 매립목적
- 매립예정지의 면적
- 해제 사유

다 공유수면 매립면허

1) 매립면허(법 제28조)

면허권자 :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등 면허관청

면허절차 : 환경영향평가·피해영향조사(신청자) → 면허신청(면허관청) → 관계기관 협의 → 검토 → 면허처분 → 고시

매립면허신청(법 제28조제1항, 영 제34조, 규칙 제24조)

○ 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관계서류를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면허신청서에는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해당 매립목적을 명시

○ 신청서류

- 신청서(다음 표 안의 매립목적중 해당 매립목적 명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함)
-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자체는 제외)
-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 법 제3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기재한 서류
-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의 경우에 한함)
-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만 해당)

☞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결과)를 제출토록 변경되었음

-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 사업만 해당)
- 신청구역 및 인근구역안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 매립에 동의한 경우는 제외)

※ 수산업법시행령 제69조 별표4의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표 참조)이 조사한 것이어야 함

기 관 명	소 재 지	지 정 기 간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	경상남도 통영시 천대 국치길 38	2015.4.1~2020.3.31
군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558(미룡동)	2015.4.1~2020.3.31
군산대학교 해양개발연구소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558(미룡동)	2015.4.1~2020.3.31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일광로 474	2015.4.1~2020.3.31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신림동)	2015.4.1~2020.3.31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전라남도 여수시 대학로 50(둔덕동)	2015.4.1~2020.3.31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용현동)	2011.11.5~2016.11.4
제주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5길 19-5	2015.4.1~2020.3.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87(사동)	2015.4.1~2020.3.31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동삼동)	2015.4.1~2020.3.31
목포대학교 갯벌연구소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2015.4.1~2020.3.31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양재동)	2011.10.1～2016.9.30
(사)한국수산증·양식기술사협회 부설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연구소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1-17번지	2014.1.1~2018.12.31

-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

현지조사서 작성

○ 면허관청은 면허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하여 함

- 신청구역의 상세한 주변상황
- 매립이 항로·공유수면관리 및 수산업 등에 미칠 영향
- 기타 매립으로 인한 일반적 영향
- 신청구역과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구역에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권리자 및 권리의 종류
- 공유수면의 이용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기타의 손실이 발생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종류 및 소유자
-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 국·공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위치·지목·면적·종류 및 그 관리청
- 기타 매립면허상의 참고사항

매립면허신청서의 반려(규정 제32조)

○ 면허관청은 매립면허 신청내용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매립면허 신청지역이 매립기본계획의 목적·위치·토지이용계획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연안관리지역계획·연안정비계획,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전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 지역인 경우
- 이미 면허신청서가 반려되었던 지역으로서 그 반려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 관계기관이 매립면허의 협의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등

매립면허의 범위(법 제28조)

○ 면허관청은 매립기본계획의 범위내(면적·용도 등)에서 매립면허를 하여야 함(법 제28조제5항)

국가 등의 매립우선지역(법 제28조제7항, 영 제36조)

○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및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어항 구역의 공유수면은 국가·지자체만 매립할 수 있음

○ 단, 다음의 경우는 매립목적·규모 또는 입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개인도 매립할 수 있음(영 제35조)

- 매립목적 및 매립목적별 면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중간재가공공장용지 및 원자재가공 공장용지 : 23만㎡이하
  - 물류단지·가공시설 용지 : 16만5천㎡이하
  - 주택시설용지 또는 그 밖의 시설용지 : 10만㎡이하
- 연안의 경관을 개선하거나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연안선을 정비하는 경우
- 국가·지자체가 매립할 계획이 없는 공유수면으로서 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의 지정 등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과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협의(법 제28조제4항, 규정 제27조)

○ 면허관청이 매립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농·축산업용지 조성 등과 관련된 사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상·공업, 에너지 등과 관련된 사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경관·생태계 및 수질 등 환경영향 등과 관련된 사항 : 환경부장관
- 국토건설, 수자원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 : 국토교통부장관
- 연안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수산자원보호, 해양환경, 해운·항만, 어항계획 및 염전조성 등과 관련된 사항 : 해양수산부장관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와 관련된 사항 :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 문화재보호·관리와 관련된 사항 : 문화재청장
-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 :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군사기지법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관련된 사항 :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 매립목적의 내용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법률과 관련된 사항 :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면허의 기준(법 제30조, 영 제38조)

○ 면허관청은 매립예정지 및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의 구역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립면허를 할 수 없음

-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매립에 동의하고 매립이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에 관하여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매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이 그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 매립 법령에 따라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방 또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유수면의 현황변경으로 인하여 매립이 필요한 경우

○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의 구역"이라 함은 매립예정구역에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 중 다음의 구역을 말함(영 제39조).

- 매립으로 인하여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그 권리 목적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공유수면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구역을 말함(영 제39조).

○ 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법 제31조)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 어업권자 또는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
-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관습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배출하는 자

매립면허의 타당성 검토
(법 제28조제4항부터 제5항, 영 제34조제2항, 규칙 제24조)

○ 면허관청은 매립면허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함

- 매립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협의 의견 이행 여부
-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한다)의 타당성
- 매립면허신청 시 제출서류가 적정한지 여부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함

- 매립목적,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의 상호 부합여부
- 신청인과 사업계획서의 연관성 여부(사업상 법인이 공동으로 매립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한 법인 모두에 대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과 사업계획서의 연관성에 관한 검토)
- 사업계획서상 면허신청면적의 적정여부

※ 면허 신청인의 사업계획상 계획된 실수요면적을 기준으로 검토하되 바다·바닷가 등 당해 공유수면의 형상, 당해 지자체의 도시계획 또는 인근 매립지와의 연관성 및 주변의 지역 개발 상황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매립기본계획의 범위(매립기본계획 상의 면적 보다 증가는 불가)에서 면허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면적을 증감할 수 있음

○ 개략설계도서의 타당성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검토함

- 공사기간은 신청된 내용과 시공방법, 공사규모, 시공의 난이도, 투입장비 및 기상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
- 시설물의 축조는 매립목적 및 위치에 따라 항만시설물 설계기준, 농지개량 사업계획 설계기준(해면간척편) 또는 하천설계기준 등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 기준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계(업무처리규정 별표 5)

〈 호　안 〉

- 현지의 여건에 적합한 영구적인 구조물로 축조하여야 함
- 표고는 약최고만조위보다 0.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설치된 인접토지의 표고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 매립공사는 호안공(외곽공)을 먼저 시행하여야 함
- 첨단에는 두께 0.2미터, 폭 0.6미터 이상의 첨단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하며, 첨단 콘크리트는 필요에 따라 반파구조로 함
- 선박의 계선을 필요로 하는 호안에는 15미터 내지 30미터의 간격으로 계선주를 설치하여야 함

〈 방 조 제 〉

- 표고는 약최고만조위보다 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상부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파제벽을 설치하여야 함
- 구조는 바닷물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고, 지반의 침하나 파력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함

〈 물 양 장 〉

- 구조물형식은 사면식, 계단식 및 직립식 중에서 이용도와 유지·보수의 측면을 고려하여 선택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름
  ① 사면식은 사면비탈이 1:4보다 급하여서는 아니됨
  ② 계단식의 1계단 치수의 높이는 1.2미터, 폭은 0.35미터 내외로 함
  ③ 직립식의 경사는 1 : 0.3범위 안으로 하여야 하며, 반드시 방충재를 설치하여야 함
- 계선주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그 간격은 5미터 내지 20미터 이내로 함
- 후면에는 하치장 및 임항도로를 설치하되, 지정항만안의 하치장폭은 30미터 이상, 항만도로의 폭은 2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만, 신청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하치장 및 항만도로의 폭을 조정할 수 있음

- 전면은 선박의 이·접안에 필요한 적정수심을 확보하여야 함

〈 도　　로 〉

- 해안도로(강변도로)는 유효폭 2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매립지내의 도로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함
  다만, 해안도로(강변도로)는 신청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할 수 있음
- 옆도랑을 설치하고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매립(간척제외) 〉

-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 및 매립목적을 감안하여 공유수면의 매립 후 주택·상가·공장 기타 건축물의 설치가 계획된 매립의 경우에는 매립지 조성 후의 지반침하 등의 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당해 지역에 적합한 연약지반처리 공법을 선택·적용하여 매립하여야 함. 다만, 신청지역의 지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약지반 처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매립지반은 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성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표층을 양질의 토사로 충분히 피복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복토의 두께는 0.2미터 이상이어야 함
- 매립공사에 사용되는 토사는 산토 및 준설토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준설토 기타 매립지반이 연약한 토사의 매립으로 침하가 예상될 경우에는 침하를 고려하여 매립표고를 결정하여야 함
- 성토표고는 호안표고이상이어야 하며, 매립부지내에 원활한 배수를 위한 배수경사를 두어야 하되 다만, 성토표고는 매립목적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호안 및 물양장 등의 배면을 준설토 등 연약한 토사로 매립할 경우에는 매립토가 유출되지 않도록 매트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조위차가 큰 지역에서 매트를 설치할 경우에는 보강토 등으로 매트 보호시설을 하여야 함

〈 배수시설 〉

- 매립지 안의 배수시설은 매립지 인접지역의 집수구역과 배수량 및 매립지 안의 배수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시설규모와 단면 등을 결정하여야 함
- 도로(해안도로, 강변도로 및 도시계획도로)에는 반드시 옆도랑을 설치하되 필요한 개소에 암거집수거 및 맨홀 등을 설치하여야 함

〈 기　타 〉

- 바다·바닷가를 매립하는 경우에는 기본수준면(해도의 "기본수준면")을 사용하여야 함
- 설계조위는 파랑, 너울, 부진동, 쯔나미(Tsunami : 해일), 천문조(조석) 및 기존의 최고만조위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함
- 하천과 바다가 합류하는 하구지역은 충분한 조사와 매립으로 인한 주변 조위의 상승고 및 배후지역의 배수처리의 지장여부 등을 포함한 수리검토를 실시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질조사와 시험을 거쳐야 함
- 매립에 소요되는 토량에 상당하는 이용 가능한 토취장등이 확보되어야 함

○ 개략설계도서의 타당성 검토를 한때에는 다음 서식에 의한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함(기술검토서 첨부)

기 술 검 토 서					
신청인	① 법인 또는 기 관 명				
	② 대 표 자 (성 명)				
	③ 주 소				
④ 매 립 위 치					
⑤ 매 립 면 적		㎡	⑥ 매 립 목 적		
검 토 사 항					검 토 의 견
1. 항만계획 및 기타 국가계획 저촉여부					
2. 도면검토 가. 매립면허의 신청인이 제출한 구적도, 지적현황측량성과도 및 개략설계도서의 도면이 서로 부합하는지 여부 나. 위치도는 축척 25,000분의 1 지형도에 신청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는지 여부					
3. 신청위치 및 인접지역의 개략적인 해저지질현황(검토자가 조사·기술하여야 함)					
4. 신청면적 : 가. 면적산출의 정확성 여부 나. 신청인의 사업계획상 실수요면적 다. 바닷가 또는 기존 매립지 포함여부					
5. 호안, 물양장, 안벽, 도로 등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실시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					
6. 해안도로와 기존 도로(국도,지방도 등)의 연계여부와 그 대책					
7. 공사기간은 시공방법, 공사규모, 시공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적합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검토결과 공사기간 월
8. 공사비는 영 제51조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하였는지 여부					검토결과 공사비 천원
9. 도근점 설치소요 개수					개
10. 기타 매립면허시의 참고사항					
검 토 일	년 월 일	검 토 자 직·성명		확 인 자 직·성명	

매립면허의 부관(법 제29조, 영 제37조, 규정 제33조)

○ 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할 때에 다음 사항을 부관으로 붙일 수 있음

-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불용 국·공유지의 양여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
-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의 국가 또는 지자체에의 귀속 및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의 국가 귀속에 관한 사항
- 면허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2개이상의 도근점 및 매립표고를 수시로 검측할 수 있는 기본수준면의 기준수준점 설치에 관한 사항
- 법 제34조 및 영 제43조에 따른 매립면허수수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
- 지방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면허세의 납부에 관한 사항
-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한 금액(조성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주택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
- 법 제42조에 따른 불용 국유지·공유지의 양여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
- 법 제44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에 관한 사항
- 이해관계인(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규정 설계도서의 작성 및 감리, 규정 설계자문 또는 설계심의 책임감리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 규정 제44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하자보수보증금 등에 관한 사항
- 관계기관 협의 의견,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매립면허의 고시(법 제33조, 영 제42조)

○ 매립면허를 한 때에는 다음사항을 고시하여야 함

-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 매립면허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함)
- 매립목적
- 매립위치와 매립면적
- 매립공사의 기간

☞ 매립면허의 고시일 이후에는 그 공유수면에 대하여 피면허자가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업권 등 다른 권리를 새로이 설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권리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없음

면허수수료(법 제34조, 영 제43조·제44조, 규칙 제25조)

○ 면허관청이 매립면허를 할 때에는 매립면허취득자로부터 매립면허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음

- 매립예정지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해당 매립예정지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매립예정지의 연장선 안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 가격을 말함
- 다만, 해당 매립예정지에 접하거나 그 연장선 안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가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함
- 매립면허수수료는 매립면허일을 기준으로 매립면허를 한 인접토지의 가격에 다음표의 등급기분에 따른 기본요율을 곱하여 산정함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규칙 제25조제1항 관련)

등급	등 급 내 용	요 율
1등급	1. 특별시·광역시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 2.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이하 이 표에서 "무역항"이라 한다) 중 경인항·부산항·인천항 및 울산항의 항만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	인접한 토지가격의 1천분의 15
2등급	1. 특별시·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 2. 경인항·부산항·인천항 및 울산항을 제외한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	인접한 토지가격의 1천분의 10
3등급	1. 인구 50만 미만의 시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 2. 「항만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	인접한 토지가격의 1천분의 5
4등급	위의 각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공유수면매립	인접한 토지가격의 1천분의 3

비고 : 1. "인접한 토지가격"이란 해당 매립예정지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해당 매립예정지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매립예정지의 연장선 안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매립예정지에 접하거나 그 연장선 안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가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2. 매립면허관청은 매립예정지의 인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매립예정지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립예정지의 인접한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매립예정지와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해당 매립면허관청이 결정한다.

4. 농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의 요율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토지가격의 1천분의 1로 한다.

5. 매립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매립면허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음(법 제34조 단서)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가 시행하는 매립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 시행하는 매립
-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산물양식장의 축조

○ 매립면허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귀속됨(영 제43조제3항)

-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징수한 것은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수입
-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 것은 해당 시·군·구의 수입
- 그 외의 자가 징수한 것은 국고의 수입

2) 매립협의 또는 승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법 제35조, 영 제45조)

○ 국가나 지자체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면허관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함

○ 매립을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는 준공 검사를 받기 전에는 국가나 지자체 외의 자에게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음

○ 매립을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는 당해 매립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지목을 정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 매립을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는 매립 준공검사를 받은 날에 공용 또는 공공용 매립지와 바닷가에 상당한 면적을 제외한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함

※ 국가 등의 공매립의 경우 총사업비 정산을 통해 총사업비 상당 매립지를 취득하는 개인의 매립면허와는 달리 규정을 두고 있음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법 제36조, 영 제46조)

○ 국가나 지자체가 다음과 같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천 제곱미터 이하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매립기본계획에 관계없이 매립할 수 있음

- 해안도로(양식장 진입로 포함) 건설
- 수산물 처리 등을 위한 공동작업장 건설
- 하수중계펌프장 건설
- 재해 복구 및 예방 사업
- 연안정비사업

○ 이 경우 면허관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하거나 승인할 수 있음

○ 협의대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포함되어야 함

○ 국가 및 지자체가 시행하는 소규모매립은 사업시행연도에 관계없이 인접한 지역에서 매립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의 규모의 합이 1천 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됨

정부사업 매립지의 이관(법 제37조, 영 제47조)

○ 면허관청은 정부사업으로 실시하는 매립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매립지를 지체없이 그 매립지의 매립목적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함

- 이 경우 농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공사에 있어서 방수 또는 방조제 시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함

○ 면허관청은 조성된 매립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인계서에 사업계획서·설계도서·매립지에 대한 지적공부등본 및 준공도서를 첨부하여 이관하여야 함.

- 매립지의 소재지
- 매립목적
- 착수 및 준공연월일
- 매립면적(m^2)
- 총공사비
- 매립지의 분배 또는 매각에 관한 의견

3) 손실보상(법 제32조·제57조, 영 제40조·제71조, 규칙 제29조)

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에 대한 손실보상

○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끼친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는 시설을 하여야 함(매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것만 해당)

○ 권리를 가진 자가 받게 될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는 시설을 하여야 함

- 다만, 당사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그 시설설치의 비용이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일 때에는 보상으로 갈음할 수 있음

○ 권리를 가진 자가 받게 될 손실을 방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 손실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였음에도 아직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하여야 함

☞ 매립면허의 고시일 이후에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권리를 취득한 자와 그가 설치한 시설 등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님

토지 등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 매립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에의 출입 또는 사용 등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손실보상 협의 불성립에 따른 재결신청

○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 재결신청인 및 그 상대방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함)
- 손실발생의 내용
-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그 상대방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의 내용
- 협의의 경위

- 기타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재결과 관련한 수수료 등 비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3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

4) 매립면허 권리·의무의 양도·양수(법 제43조)

권리·의무의 이전·승계

○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매립면허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함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승계) 신고

○ 매립면허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는 권리·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 내용을 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 시에는 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매립면허로 발생한 권리·의무 양도·양수(승계) 신고서를 제출

○ 매립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이전하거나 승계하는 경우 그 권리·의무를 분할하여서는 아니됨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승계) 신고

○ 면허관청은 매립면허에 따른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함

- 권리의 양수 : 양도인 및 양수인이 연명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양도·양수계약서
- 권리·의무의 승계 :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 등을 증빙하는 서류

☞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권리·의무를 양수 또는 승계한 자는 공유수면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매립면허를 받은 자로 봄

라 공유수면 매립공사

1) 실시계획승인(법 제38조, 영 제48조, 규칙 제29조)

승인권자 :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등 면허관청

승인절차 : 권리자 등에 대한 피해보상(피면허자) → 승인신청(면허일부터 1년 이내) → 검토(설계도서 등) → 관계기관 협의 → 승인처분 → 고시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류

○ 매립면허(승인)를 받은 자는 면허(승인)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다음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면허(승인)관청에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 면허관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실시계획승인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실시계획승인 신청서
-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
-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포함,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

-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 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
-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자가 손실보상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 매립공사설명서(매립공사시방서·공사내역서·공사비산출근거·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 포함)
- 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
- 예정공정표
- 매립용 흙·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매립면허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

☞ 참고로 실시계획승인 신청기간은 당초 면허일부터 6월이내로 하다가 '99. 1. 1부터 1년 6월 이내로 연장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99. 8. 9부터 6월 이내로 변경하였고, 그 후 '07.12.27부터 1년 이내로 조정하여 시행 중임

☞ 첨부서류 중 매립공사설명서·실시설계도서·예정공정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분야의 설계 등 용역업자(농업·축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의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작성한 것이어야 함

실시설계도서의 검토(규정 제35조부터 제36조)

○ 피면허자가 실시계획승인신청시 제출하는 실시설계도서에 책임기술자와 참여기술자의 성명·담당업무·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당사자가 이를 확인·도장을 찍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면허관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고 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 면허관청은 매립공사의 총공사비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매립공사인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자문을 받고 그 자문결과가 실시설계도서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관리항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매립구역안 공유수면 :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자문
- 바다·바닷가에서 농·축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 및 하천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하천 : 당해 면허관청의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
- 위 사항 외의 공유수면 :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면허관청의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

관계기관 협의

○ 면허관청이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타법에 의한 인·허가의제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실시계획의 승인 시 검토사항

○ 면허관청은 매립공사 실시계획승인시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함

- 매립면허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 지적측량성과도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신청면적의 적정성
- 매립공사계획, 구조물의 안전도 및 시공방법과 시행공정의 적정성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반영여부(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한함)
- 매립기본계획 및 매립면허에 적합한지 여부

☞ 면허관청은 규칙 제29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이 있고 매립공사의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허받은 매립예정지를 2개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실시계획승인 가능

매립공사 감리(규정 제38조)

○ 면허관청은 매립공사의 총공사비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총공사비 200억원이상 공사)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매립공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책임감리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함

- 위 사항 외의 매립공사에 대하여는 면허관청이 건설기술진흥법령에 규정된 감리 또는 감독업무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시행하되, 공사규모 및 기술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 또는 감독업무에 필요한 인원 및 자격 등을 결정하여야 함

○ 면허관청은 책임감리의 시행대상인 매립공사에 대하여는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감리전문회사와 매립공사 착수전에 감리계약을 체결한 후 그 결과를 감리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면허관청에 통보하여야 함

- 다만,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등이거나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5조제2항제3호(농어촌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시행공사)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외

○ 면허관청은 매립면허일부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전까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사업관리회사를 선정하여야 함

-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관리항의 항만구역 안,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 매립구역,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매립구역 : 해양수산부 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위 외의 구역 : 해당 매립면허관청의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또는 제1호에 따른 해양수산부 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의 준용

실시계획 변경승인
(법 제38조제1항 후단, 영 제48조제4항, 규칙 제29조제3항·제4항전단)

○ 변경승인 신청 :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변경승인신청서
- 실시계획변경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 외에 한함)

  ※ 책임감리 등을 시행하는 자가 작성·검토한 것을 제출
- 변경된 예정공정표

○ 변경승인의 범위 : 면허관청은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매립구역의 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승인을 하여야 함. 변경승인 시에도 최초 승인 시와 같이 승인내용을 고시하여야 함

○ 변경승인 시 검토사항 : 면허관청은 매립공사 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시 다음사항을 검토하여야 함

- 실시계획에서 정한 매립공사의 착수 또는 준공기간의 연장의 적정성
- 영 제51조제4항제5호 라목의 후단 및 동조동항 제6호 후단(공사비 상승액 및 건설이자 산입 제외)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여부

☞ 면허관청은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의 검토결과, 매립공사의 준공기간 연장 등이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영 제51조제4항제5호 라목의 후단 및 동조동항제6호 후단의 규정이 적용됨을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실시계획 변경승인의 고시

○ 실시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시하여야 함

- 실시계획의 인가 연월일(변경인가의 경우에는 변경인가 연월일을 포함)
-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매립목적
- 매립공사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착수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
- 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변경승인의 경우에 한함)
- 매립 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인가·허가 등의 의제(법 제39조)

○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관련 법률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봄

-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제4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논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 사용허가·신고
-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시행 승인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사 또는 신고
-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신고 또는 협의
-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 항로표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허가
-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2) 매립공사(법 제40조)

토지 등에의 출입(법 제41조)

○ 매립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매립공사 등을 위하여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함

- 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 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에 있는 나무, 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을 재료적치장이나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토지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불용 국·공유지의 양여 (법 제42조)

○ 국유 또는 공유의 도로·제방·구거·저수지 기타의 공용 또는 공공시설(국유의 수면 또는 수류 포함)이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매립면허취득자에게 이를 양여 또는 매각할 수 있음

- 양여 :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에 갈음하여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의 소유로 되는 도로·제방·구거·저수지·기타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양여
- 매각 : 양여에 해당하는 이외의 경우 매각

○ 국가는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용지로 바닷가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그 바닷가를 당해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양여할 수 있음

3) 준공 전 매립지사용 및 준공검사 (법 제44조·제45조, 영 제50조, 규칙 제32조, 규정 제42조)

준공 전 매립지 사용

○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 전까지 매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매립지를 사용하거나 매립지에 인공구조물 설치가 가능함

준공검사 신청

○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매립지 위치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을 정하여 준공검사신청서

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관청에 준공검사 신청을 하여야 함

-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포함)
-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지자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하여야 함)
-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
- 증빙서류를 포함한 총사업비 정산서류(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자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매립공사의 경우는 제외)

○ 구역을 분할하여 준공예정일을 정한 때에는 구역별로 준공인가를 신청할 수 있음(영 제50조제1항 단서)

준공검사 시행

○ 면허관청이 준공검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준공검사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책임감리대상 사업의 준공검사 신청 시 준공조서와 총사업비 정산서류를 해당 책임감리자 및 그가 소속된 감리전문회사가 연대하여 검토·확인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함

- 공사감독을 시행한 경우에는 총사업비 정산서류를 해당 공사감독자와 면허관청이 연대하여 검토한 것인지 확인함

○ 매립지(토지)와 공유수면의 지적경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호안(특수용 사로 등은 제외) 또는 안벽의 윗부분의 끝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그은 선 안의 토지를 매립지로 하고, 선 밖에 있는 호안·안벽 등은 인공구조물로 함(규정 제42조제3항)

○ 면허관청은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면 준공검사확인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함

- 매립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완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마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1)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기준(법 제46조, 영 제51조)

국가·지자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매립지의 소유권을 각각 취득

○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 : 국가 또는 지자체**

* 도로·호안·안벽·물양장·방파제·배수시설·공원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매립지 등을 말함

** 국가의 시설로 필요한 매립지는 국가 귀속, 지자체의 시설로 필요한 매립지는 지자체 귀속

○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의 매립지 : 국가

- 매립된 바닷가 중 매립공사로 새로 설치된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포함된 바닷가의 면적은 제외함

- 국가가 취득하는 매립지의 위치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정한 매립지가 아닌 곳으로 함

○ 국가 또는 지자체가 귀속한 매립지 및 면적을 제외한 매립지중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 : 매립면허취득자

○ 국가·지자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잔여매립지) : 국가

2) 총 사업비 산정(법 제46조, 영 제51조, 규정 제43조·제44조)

총사업비 산정 방법

○ 해당 매립공사의 준공검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및 공정별 건설이자를 합산

사업비목별 산정 방법

○ 조사비 :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그 밖의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른 대가 기준에 따라 계산

○ 설계비 :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든 비용. 이 경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른 대가 기준에 따라 계산

○ 순공사비 :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따라 계산

○ 보상비 :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실제 든 보상비 및 손실방지시설의 설치비

○ 부대비 : 다음 비용의 합계액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시공감리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에 따른 보험료
-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를 준용하여 산정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상승액
  - 이 경우 공사비 상승액은 영 제48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해당 매립공사의 시행기간(매립공사의 착수일부터 준공검사신청일까지) 기준으로 하되, 천재지변 또는 국가계획의 변경 등 면허관청이 매립면허취득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준공연장기간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 법령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
- 환경영향평가비, 피해영향조사비, 영 제5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매립지의 감정평가비 및 매립면허 부관의 이행에 드는 모든 비용

○ 공정별 건설이자 : 조사비부터 부대비의 비용합계액에 대하여 면허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사업기간 중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 적용)

- 이 경우 건설이자는 영 제48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해당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천재지변 또는 국가계획의 변경 등 면허관청이 매립면허취득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준공연장기간 외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 조사비부터 부대비까지의 비용은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은 총사업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총사업비 산정시 고려사항(규정 제43조)

○ 총사업비 산정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산정하여야 함(규정 제43조)

○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실시계획 변경 시 준공확인 신청 전의 최종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함

○ 순공사비의 비목 중 노무비의 간접노무비율, 경비율과 일반관리비율은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기초로 함

○ 공유수면매립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사업비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함)는 총사업비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매립세액)는 총사업비에서 제외

○ 면허관청이 매립면허 부관 이행에 드는 모든 비용으로 인정한 것. 다만,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보험 및 다른 방식으로 납부함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 등은 산입하지 아니함

○ 건설이자는 계약 내용에 따른 공정이 완료되어 각각 지급한 사업비 건별로 사업비가 실제 지급된 다음 날부터 실제 준공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

3) 매립지의 가격 산정(법 제46조, 규칙 33조)

매립지의 가격 산정 방법

○ 해당 매립지의 가격산정은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산정하되, 다음에 의하여 면허관청이 지정한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함)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함

- 다만, 면허관청은 감정평가사업자의 평가액이 적정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평가액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다시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매립지의 가격은 재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함

매립지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 면허관청은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감정평가를 할 매립지의 개요 기타 필요한 사항을 10일이상 공고한 후 지정신청자중 추첨에 의하여 2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하여야 함

- 이 경우 면허관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협회에 공고사항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

○ 면허관청이 감정평가업자 지정을 위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
- 매립공사의 준공예정 연월일
- 감정평가업자 추첨 일시 및 장소
- 지정 대상 감정평가업자의 수
- 감정평가업자의 지정신청서 제출기한 및 제출기관
- 제출서류 :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개설등록증의 사본 또는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서의 사본
- 기타 면허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면허관청은 위 사항의 공고결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업자가 2인이하인 경우에는 5일이상 재공고하여야 함

-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업자가 2인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하여 면허관청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면허관청이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4) 잔여매립지의 매수 청구(법 제47조, 규칙 54조)

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 기한

○ 매립면허취득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함

잔여매립지의 매각 가격

○ 잔여매립지의 매각 가격은 국유재산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함

- 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일 때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국가 귀속 (잔여)매립지의 임대

○ 국가는 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그 매립목적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음.

☞ 다만, 잔여매립지가 매수청구기간(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립면허취득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식산업 시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및 자원비축시설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위한 시설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을 위한 농어촌휴양시설, 민속촌, 박물관 및 미술관

○ 국가 귀속 (잔여)매립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3조·제46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임대방법·임대기간 및 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함

- 임대방법 :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
- 임대기간 :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를 임차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기간
- 임대료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5) 매립목적 변경의 제한(법 제48조, 영 제55조)

매립목적 변경 제한 등기

○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및 국가가 그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소유권행사(매립목적) 제한사항을 적어야 함

☞ 이 매립지는 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 매립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외에는 준공검사일(년 월 일)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준공검사 시의 매립목적 또는 매립목적변경승인 시의 변경된 매립목적을 적음)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면허관청은 국가, 지자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 등기소 및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에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함

- 이 경우 면허관청은 준공된 매립지의 취득가액 관련 자료와 준공검사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함

매립목적 변경 제한 기간

○ 매립면허취득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준공검사 전이나 준공검사일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매립목적 변경 제한의 예외(법 제49조, 영 제56조·제57조, 규칙 제34조)

○ 다음과 같은 매립목적의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미리 면허관청의 확인을 받아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자체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매립예정지, 매립지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의 전부 또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 항만시설용지, 조선시설용지, 어항시설용지 및 물류단지·가공시설용지(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가공·처리시설용지만 해당)의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간에 이를 상호 변경하는 경우
- 영 제34조제2항의 후단에 따라 둘이상의 매립목적을 정하여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공사의 준공검사 전까지 면허받은 전체 매립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매립목적을 상호변경하는 경우
- 매립면허당시 법 제8조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구역을 매립면허를 받은 날 이후에 계속하여 해당 점용·사용허가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음

- 매립지의 일부를 공용 또는 공공의 용으로 변경함으로써 나머지 매립지를 매립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이 변경되어 매립지를 매립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산업의 발전, 그 밖에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

○ 법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의 변경확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매립지의 지적공부등본 및 필요한 도면
-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함)
- 영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 매립목적 변경 전·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면허관청은 변경하고자 하는 매립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한 매립지가액의 증가분에 상당하는 매립지 중 다음의 비용을 합산한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를 국가에 귀속시키고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립목적 변경을 승인할 수 있음

- 제세공과금 : 매립지의 소유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과된 세금·공과금 또는 부담금
- 감정평가비 : 매립지의 재평가에 든 감정평가비
- 자본비 :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가 취득한 매립지의 취득가액에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도 대비 변동분을 곱하여 100으로 나눈 연도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
  - 이 경우 소비자물가지수는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총지수)에 따르며, 연도별 금액을 합산하는 기간은 법 제45조에 따른 매립공사의 준공검사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변경을 신청한 연도의 직전년도까지의 기간으로 함
- 그 밖의 비용 :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매립지의 재평가에 반영된 비용

※ 매립지의 재평가방법 : 영 제51조제2항·제3항을 준용

○ 면허관청은 매립목적 변경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매립목적을 변경 승인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시하여야 함

- 매립목적 변경 승인 연월일
- 매립목적 변경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변경 전의 매립목적 및 토지이용계획
- 변경 후의 매립목적 및 토지이용계획
- 변경된 매립지의 위치와 면적

- 매립목적의 변경 사유

○ 매립목적의 변경을 승인받은 자는 매립목적변경승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취득

○ 국가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관청이 매립목적의 변경을 승인한 날에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함

○ 면허관청은 국가가 취득한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및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매립목적 변경을 승인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 재평가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함

○ 재평가매립지를 매수한 자의 소유권 변경등기에 관하여는 법 제49조제6항을 준용함

매립지 사용의 확인(법 제51조, 영 제60조, 규칙 제36조)

○ 면허관청은 법 제4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이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당시의 매립목적에 맞게 매립지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서면 또는 현장출입하여 확인할 수 있음

- 면허관청은 위 확인결과를 공유수면매립지 사용실태 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함

바 기타 사항

1) 공익 확보 등을 위한 조치(법 제52조, 영 제61조)

매립면허의 취소 등

○ 면허관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 또는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허가나, 공유수면에 설치한 건축물·시설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공사의 정지를 명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시설물 등의 개축·제거·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
- 매립면허취득자의 귀책사유로 매립 공정이 예정공정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경우
  - 매립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30미만이고 예정 공정의 100분의 30미만인 경우
- 매립면허의 부관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매립면허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
-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에 건축물, 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매립지를 사용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8조제2항(목적변경)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 관련 산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자체의 관련 계획 변경 등 공유수면과 직접 관련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면허관청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시하여야 함

- 매립면허 취소 연월일
- 매립면허가 취소된 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매립면허가 취소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매립면허 취소의 사유
- 매립면허가 취소된 지역의 매립목적 및 토지이용계획

공익처분 등에 따른 손실 보상(법 제57조, 영 제71조)

○ 면허관청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면허관청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 면허관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함

2) 매립면허의 효력상실(법 제53조, 영 제63조, 규칙 제38조)

매립면허의 효력 상실 사유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립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함.

- 매립면허에 의하여 공사의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할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사착공일에 매립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매립면허의 회복

○ 매립면허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음

○ 면허관청은 매립공사 미준공으로 인하여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자가 전체공정의 100분의 30이상 매립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음

○ 매립면허의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함.

-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예정 공정표
- 매립공사의 공정이 영 제63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효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면허관청은 매립면허의 효력을 회복시키려는 경우에는 종전 매립면허의 부관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부관을 붙일 수 있음

3) 원상회복(법 제54조, 영 제64조부터 제68조, 규칙 제39조·제40조)

원상회복 의무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하며, 면허관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음

-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
- 자기의 귀책사유로 매립면허가 실효·소멸되거나 취소된 자
- 매립면적을 초과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

행정대집행

○ 면허관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원상회복 의무면제

○ 면허관청은 다음의 경우 원상회복 의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음

-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면허관청은 원상회복 의무자로부터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면제여부를 알려야 함

시설물 등의 국가 귀속

○ 면허관청은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한 경우 해당 매립공사 구역 안에 설치한 매립지, 건축물, 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은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음

○ 해당 매립공사 구역 안에 설치한 매립지 등을 국가의 소유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치·수량·귀속시기 기타의 필요한 사항을 당해시설 기타 물건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이 경우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14일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함

○ 국가는 귀속된 건축물, 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음

※ 원상회복 의무자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원상회복하지 않거나 의무면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국가귀속, 매각, 임대 규정 준용

원상회복 의무이행 보증

○ 면허관청은 원상회복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영 제51조제4항제3호에 따른 순공사비의 100분의 20)을 예치하게 할 수 있음

- 다만, 원상회복 의무자가 국가·지자체·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함

○ 의무이행보증금은 현금의 납부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 매립실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순공사비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함

○ 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받은 자를 대신하여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그 원상회복의 비용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이행 보증금의 반환

○ 면허관청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거나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함

○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원상회복이 완료되었음을 증명서를 첨부하여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면허관청은 이행보증금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회복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함

○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함

4) 보고·검사 및 청문(법 제56조· 제58조, 영 제70조)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 면허관청은 매립공사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립면허취득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음

– 이 경우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함.

출입·검사 및 질문

○ 면허관청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립면허취득자의 사무실·사업장·매립예정지·매립지,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 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음

–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청문

○ 면허관청은 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매립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 효력 상실 및 원상회복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5) 법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법 제62조·제65조)

벌칙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함. 다만,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62조)

-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매립공사를 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립면허 기타의 처분을 받은 자
- 10년이내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한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63조)

- 매립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포함)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공사를 착수한 자
-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에 건축물·시설물·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매립지를 사용한 자
-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를 사용하거나 보완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매립지를 사용한 자

- 매립목적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매립지나 매립예정지를 사용한 자
-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원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함.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과태료(법 제66조, 영 제75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면허관청이 부과·징수하며,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음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의 이전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6호	100만원
2.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 또는 매립예정지를 사용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7호	500만원
3. 법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8호	100만원
4.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9호	100만원
5.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출입·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0호	100만원
6.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1호	300만원

※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행정청이 청문대상 외에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

2. 공유수면 매립 관련 질의 회신

※ 아래의 공유수면 매립 관련 질의·해석은 해석 당시 법률 등을 토대로 작성된 사항으로 이후 관련 규정개정 등에 따라 해석이 달라 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세부 내용	
	질의 내용	답변 시기
가. 공유수면 매립 적용 법률 및 관리청	원상회복 전제 인공구조물 설치에 대한 공유수면매립 또는 점용·사용허가 대상 구분	2014.4.9
	수도권 매립지 중 일부구역 매립목적의 변경 시 적용 법률	2014. 5.21
	「어촌어항법」상 명시된 어항개발사업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부합여부	2015. 5.22
	「항만법」상 명시된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공유수면매립법 적용사항 관련	2015. 4.6
	공유수면매립법 상 명시된 용어 '국가'의 해석	2015. 5.1
	소규모 공유수면매립 해당여부	2016.1.5
	매립 준공 전 시설물 설치 중 공유수면 관리청과 면허청	2016.1.7
나.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2012.9.17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여부 확인 질의	2015.5.11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 시 공구분할 가능여부	2015. 5.22
다. 불용 국·공유지의 양여	공유수면매립면적 산정 및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	1999. 5.31
	공유수면매립으로 불용되는 국유지의 양여	2000. 5. 2
라. 손실방지와 보상	공유수면매립관련 어업권 등 보상기준시점	1998.10. 2
	손실보상 및 대체시설 설치의무 관련	2015. 8.12
마. 권리·의무의 승계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도 · 양수 신고수리 관련	2014. 2.18
	매립면허관련 권리·의무의 분할이전 및 분할별 재취득 가능여부	2015. 3.17
바. 매립공사의 준공 인가 및 매립지	도시개발사업조합과 협약으로 추진한 공유수면 매립지 총사업비 정산 관련	2014.1.14

구분	세부 내용	
	질의 내용	답변 시기
의 사용	화력발전소 회처리장 매립공사 준공 시기 및 회 매립 준공검사 전 허가 대상 여부	2014. 1.20
	잔여매립지의 활용 시 국유재산의 장기임대 가능여부	2015. 5.1
	연속되지 않은 매립지 매립면허 수수료 산정	2015.8.12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검사 이전에 매립지 사용관련	2015. 11.2
	새만금산업단지 내 공유수면 매립 준공 전 건축허가 가능 여부	2015. 12. 16
사.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공기 연장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공사 총사업비 산정	2000. 3.14
	화력발전소 회처리장 공유수면 매립 총사업비 산정	2016. 4.4
	영종하늘도시 내 공유수면매립지 소유권 취득	2016. 5.16
	바닷가에 매립공사를 한 경우 매립지의 소유권자	2016. 6.10
아.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목적 변경 여부	2000. 4. 18
	농지 목적 매립지의 복합단지 용도 사용 여부	2000. 6. 8
	공장용지 목적 매립지의 주택용 부지로 목적 변경	2000. 7. 3
	완충녹지 변경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목적 변경	2012.1.19
	국가산업단지 준공인가 시 매립목적 변경 필요여부	2014.2.26
	공공시설용지 일부를 판매시설용 부지로 매립목적 변경 가능 여부	2015.3.11
	매립지의 매립목적 변경제한 기간	2015.3.4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매립지의 매립목적변경	2015.3.6
자. 매립면허의 효력 상실, 초과매립지 및 원상회복	공유수면의 초과매립지등의 귀속주체	1999. 8. 5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의 면제요건 및 국가귀속 관련 질의	2000. 3.15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실효된 매립지의 원상회복의무 면제조건과 준공인가 여부	2000. 6. 7

가 공유수면 매립 적용 법률 및 관리청

2-1. 원상회복 전제 인공구조물 설치에 대한 공유수면매립 또는 점용 · 사용허가 대상 구분 (연안계획과-1034, 2014.4.9)

가) 질의요지

공유수면에 원상회복을 전제로 인공구조물인 해상풍력설비 20기(설비수명 20~25년)를 구축하고자 할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전제로 일정기간(20~25년)만 공유수면에 해상풍력설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대상임

○ 다만, 공유수면의 일부를 구획하여 영구적인 설비를 축조하는 경우라면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2-2. 수도권 매립지 중 일부구역 매립목적의 변경 시 적용 법률 (연안계획과-2478, 2014. 5.21)

가) 질의요지

환경부장관이 매립면허를 취득 (최초면허 : '80.1.14)한 수도권매립지 일부에 '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 '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립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법률 제 3901호 공유수면매립개정법률('86.12.31)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률 제 2411호('72.12.30)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매립법개정법률('86.12.31)부칙은 개정법률"시행 전 이미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29조제4항(제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제29조 제4항 : 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경우 일반적인 매립의 절차를 준용 (신설)

** 제21조의2 : 매립준공 후 5년간 매립목적 변경 제한 (신설)

○ 매립목적 변경제한 법률(제3901호) 시행전이 '80년도에 매립면허를 받은 수도권 매립지는 종전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3. 「어촌어항법」 상 명시된 어항개발사업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부합여부 (연안계획과-1774, 2015. 5.22)

가) 질의요지

강릉항 남방파제 내측 여객부두에 대하여 강릉항 개발계획변경 고시(강릉어항사무소 고시 제2010-1호, '10.10.15)가 있었고, 「어촌어항법」제22조는 "어항개발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하여 고시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강릉항 남방파제 내측 여객부두 어항개발사업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어촌어항법」제22조는 어항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하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舊 강릉어항사무소에서 어항개발계획

을 수립하면서 우리 부(당시 국토해양부)와 여객부두 설치를 위한 매립계획 등에 대하여 협의한 바가 없으므로, 여객부두 설치 예정지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2-4. 「항만법」 상 명시된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공유수면매립법 적용사항 관련 (연안계획과-1157, 2015. 4.6)

가) 질의요지

가. 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에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의제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이하 "권리자"라 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에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승인을 의제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수면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요청 전에 권리자의 공사 착수 동의를 받거나 권리자에 대한 보상 또는 손실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가. 질의 '가'항에 대하여

○ 항만재개발사업은 항만법 제77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공유수면법 제30조제1항제3호(타법으로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매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권리자의 동의가 없이도 매립면허할 수 있으므로,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권리자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님

나. 질의 '나'항에 대하여

○ 공유수면법 제38조제3항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전에 권리자의 공사착수에 대한 동의 받거나 보상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항만법 제77조제2항은 보상 등을 위한 재결의 신청은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에 할 수 있도록 하여 보상 등의 시기에 대해 보다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 항만법 상 항만공사에 대한 대법원 판례(2013두23607 판결)에서는 공유수면법은 대상사업이 공익사업이 아닐 수도 있는 반면, 항만법의 대상사업은 공익사업만으로 시행되는 점, 항만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면서 권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고자 하는 항만법의 입법취지 등을 이유로, 공유수면 매립을 수반하는 항만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에는 항만법 및 공익사업법 상 손실보상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뿐 공유수면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음

○ 항만재개발사업의 경우도 공익사업만으로 시행되는 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권리자의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고자한 항만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상기 판례의 판결요지와 같이 권리자의 보상 등에 대해서는 항만법 및 공익사업법에 따라 보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2-5. 공유수면법 상 명시된 용어 '국가'의 해석 (연안계획과-1495, 2015. 5.1)

가) 질의요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국가"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법 제46조제1항각호의 “국가”는 소유주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관리주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다만, 해당 매립지를 관리하는 관리청(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1호의 경우 해당 매립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중앙관서의 장이며,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총괄청이 결정함

2-6. 소규모 공유수면매립 해당여부 (연안계획과-28, 2016.1.5)

가) 질의요지

○○시 ㅁㅁ군으로 부터 수산물처리 등을 위한 공동작업장 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수면 955㎡를 매립하고자 공유수면 소규모매립이 신청되었으며, 신청지 인접지역에 허가 없이 506㎡와 1,795㎡로 각각 공유수면이 매립되어 현재는 토지로 등록되어 있는 사항으로, 신규 매립하고자하는 955㎡에 대해 공유수면 소규모매립을 적용할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 소규모매립’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해안도로 건설, 수산물처리 등을 위한 공동작업장 건설, 하수중계펌프장 건설, 재해복구 및 예방을 위한 사업,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을 위하여 1,000㎡ 이하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관계없이 매립면허관청에 소규모매립 승인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관계 기관협의(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포함되어야 함) 및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협

의 또는 승인되면 매립할 수 있음.

○ 다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제34조에 따라 사업시행 연도에 관계없이 인접한 지역에서 매립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의 규모의 합이 1,000㎡를 초과해서는 공유수면 소규모매립을 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건과 같이 소규모 매립하고자 하는 인접지역에 매립이 이루어져 그 면적의 합이 1,000㎡이 넘는 경우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소규모매립 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후 같은 법 제28조의 매립면허를 취득하여야 공유수면 매립이 가능할 것임.

2-7. 매립 준공 전 시설물 설치 중 공유수면 관리청과 면허청 (연안계획과-75, 2016.1.7)

가) 질의요지

가. 면허관청으로 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매립실시계획승인을 받아 매립사업 진행중에 준공전 사용승인으로 시설물 설치과정에서 사업부지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 업무는 공유수면관리청과 면허관청 중 어디인지

나. 매립공사 시행중인 매립지내 매립토사에 대해 해당 매립지의 토지이용계획상 준공시 예상되는 지목을 적용하여「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오염토양으로 볼 수 있는지, 동 규정 위반의 경우 관리는 공유수면관리청과 면허관청 중 어디인지

나) 회신내용

가. 질의 '가'항에 대하여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 수립되어 면허관청으로 부터 매립면허 취득 후 매립실시계획승인을 득하여 매립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라도 공유수면매립준공 절차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받아 토지로 등재되기 전까지는 매립예정지도 공유수면에 해당되므로 공유수면관리청의 업무라고 할 것임. 다만, 매립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매립예정지일 경우에는 매립면허관청도 공유수면관리청과 공동으로 공유수면 관리책임이 있다고 보임.

나. 질의 '나'항에 대하여

○ (나) 매립지의 토지이용계획 상 준공 시 예상되는 지목으로「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하여 매립토사의 반입기준을 정하는 것은 공유수면관리청과 매립면허관청이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으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참고로, 매립지내 토사 반입 시 반입토사에 대한 품질관리 등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제38조,「건설기술진흥법」제55조 및 제57조 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득하고 매립사업 시행중에 매립토사의 오염관련 사항이 발행한 경우에는 매립면허관청의 소관사항으로 판단됨.

나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2-8. 토지이용계획 변경(연안계획과-2098, 2012.9.17)

가) 질의요지

○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매립실시계획 승인 후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도로(해안순환도로) 건설공사 중 당초 실시계획승인 계획노선에 도로부속시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도로의 노선을 지정(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동 사항이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사항인지 또는 신규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야 할 사항인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매립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농어촌도로(해안순환도로)"의 목적으로 매립공사 추진 중에 당초 매립실시계획의 계획노선에 대하여 동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의 범위(매립목적, 매립면적 등)에서 "도로부속시설 주차장"을 추가하여 설치하는 경우라면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사항으로 판단되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이와 관련하여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등에 대하여는 매립면허관청에서 종합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2-9.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여부 확인 질의 (연안계획과-1597, 2015.5.11)

가) 질의요지

전남 여수시 낙포동 355-23번지 및 월내동 1-15번지에 접하고 있고, 현재 여수국가산업단지로 지정(건설부고시 제277호, '82.7.29)되어 있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해당 공유수면은 제1차 매립기본계획(건설부고시 제52호, '91.2.4)에 포함되어 고시된 지역(여천지구)임

○ 제2차 매립기본계획(해양수산부고시 제2001-49호, '01.7.6)에 따르면, 제1차 매립기본계획 지구 중 매립면허(승인) 처분이 안 된 지구는 매립기본계획이 실효되나, 舊,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수립·승인·지정된 각종 계획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의한 계획의 사업기간까지 당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봄

○ 따라서, 질의대상 공유수면에 대하여 수립된 매립기본계획('91.2.4)은 여수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의 사업기간 동안 유효한 것으로 판단됨.

2-10.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 시 공구분할 가능여부 (연안계획과-1784, 2015. 5.22)

가) 질의요지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제37조제2항은 “매립면허취득자의 신청이 있고 매립공사 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립예정지를 2개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 따르면 최초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의 경우에만 공구분할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실시계획 변경으로도 공구분할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나. 매립재 확보(해상준설토와 육상 유용잔토를 이용) 등에 대한 매립면허 부관이 존재하는 바, 실시계획 변경으로 공구를 분할하는 경우 해당 부관을 변경하거나 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가. 질의 '가'항에 대하여

○ 질의1의 규정은 매립실시계획 시 공구분할을 최초 실시계획 시에만 가능하다는 규정은 아니며, 실시계획 변경 시에도 공구분할은 가능함.

나. 질의 '나'항에 대하여

○ 매립면허의 부관은 매립면허(매립공사 전체 공정)에 대한 것이므로 공구분할 및 부분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공정기간을 대상으로 그 이행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므로, 공구별로 적용될 부관 내용이 다르다고 하여 면허의 부관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다 불용 국·공유지의 양여

2-11. 공유수면매립면적 산정 및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 (연안 58161-227, 1999. 5.31)

가) 질의요지

1) 공유수면매립면허 신청시 지적공부상 국유(농림부)인 하천(지목)을 매립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2) 매립면적에 포함될 경우 공유수면매립준공후 토지의 소유권을 매립면허를 받은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1)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1호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 나목에 의하여 지목상 국유인 하천이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일 경우 매립면적에 포함할 수 있으나, 지목상 국유인 하천이라 하더라도 물에 잠기지 않고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가 아닐 경우에는 매립면적에 포함될 수 없음

2) 질의와 관련, 지목상 하천이 매립면적에 포함되어 매립공사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에 갈음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동 하천의 국유재산관리청(농림부)에서 용도폐지후 양여를 하겠다고 동의를 할 경우에만 피면허자에게 양여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절차에 따라야 할 것임

2-12. 공유수면매립으로 불용되는 국유지의 양여(연안 58160-372, 2000. 5. 2)

가) 질의요지

공유수면매립사업 시행으로 기존의 시설에 대체하여 새로이 개설되는 공공시설인 해안도로와 호안은 국가소유로 귀속시키고 그 대신 불용되는 기존의 국가소유 해안도로와 제방 등은 피면허자가 양여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호안·제방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 귀속된 국유 또는 공유의 도로·제방 기타의 공공시설이 용도폐지될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시설에 갈음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당해 매립 피면허인에게 양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 기존의 국가소유인 해안도로·제방 등 공공시설이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고 이에 갈음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이 귀속되는 해안도로·제방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용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은 피면허자가 양여받을 수 있을 것이나

- 질의하신 건의 경우 매립면허 조건상 새로이 설치하는 해안도로와 제방이 매립 피면허자에게 귀속하도록 되어 있어 “새로이 개설되는 해안도로와 호안은 국가소유로 귀속시키고 그 대신 불용되는 기존의 국가소유 해안도로와 제방 등을 피면허자가 양여받기 위하여는” 면허청과 면허조건 변경을 위한 사전 협의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라 손실방지와 보상

2-13. 공유수면매립관련 어업권 등 보상기준시점(연안 58160-365, 1998.10. 2)

가) 질의요지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고시일 현재 어업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매립공사 착수이전에 어업 면허의 유효기간 20년이 만료되어 그 권리가 소멸된 경우 소멸된 어업권에 대한 보상여부

나) 회신내용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한 어업권 등 권리의 보상은 매립면허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보상대상물건을 확정하여야 함

다) 이 유

구공유수면매립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자가 매립에 동의하였을 경우를 매립면허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권리를 가진자의 여부는 매립면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매립면허의 고시일 후에 설치한 공유수면의 이용에 관한 시설등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청구를 제한하도록 구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매립면허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그 권리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보기 때문임

2-14. 손실보상 및 대체시설 설치의무 관련 (연안계획과-2758, 2015. 8.12)

가) 질의요지

제부 마리나항만구역 지정 고시 및 실시계획 승인('13.1.17,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 의제) 이전부터 종묘 생산어업 운영을 위하여 취수관로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던 중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 시행자인 경기도는 해당 점용·사용 허가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제32조에 따른 손실보상 및 대체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법 제32조제1항은 매립면허취득자는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매립예정지 공유수면 및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의 구역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 대상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매립면허 시('13.1.17)이므로, 질의 당시 현재를 기준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만료되었는지 여부는 관계 없음

-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31조(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의 범위)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의 범위)에 부합 여부, 해당 점용·사용 허가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립면허관청이 판단하여야 사항임.

마 권리·의무의 승계

2-15.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도 · 양수 신고수리 관련 (연안계획과-475, 2014. 2.18)

가) 질의요지

매립면허를 취득한 용원어촌계로부터 수덕건설(주)가 매립면허권을 양수('13.4.9)하면서 양도자에게 서면으로 약속한 채무(30억원)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2인 이상의 법인(공동명의)에게 재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채권 · 채무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립면허 권리를 재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법률적으로 양도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근거인 권원이 미흡하고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입장, 양도 · 양수의 배경 등을 감안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2-16. 매립면허관련 권리 · 의무의 분할이전 및 분할별 재취득 가능여부 (연안계획과-892, 2015. 3.17)

가) 질의요지

가.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이전할 경우, 일부를 구역별로 분할하거나 일정비율로 나누어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나. 국가나 지자체가 기 취득한 매립면허를 구역별로 분할하여 재취득이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가. 질의 '가'항에 대하여

○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국가(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서울시)가 시행하는 매립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5조 적용대상임

-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은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매립면허관청에 신고,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협의, 매립면허관청의 수리 절차를 거쳐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은 일반적인 매립에 관한 규정 중 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경우 준용하여야 할 규정을 열거하면서 양도·양수 시 매립면허의 분할 금지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제43조는 준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따라서, 국가등이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에 관한 권리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매립면허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

나. 질의 '나'항에 대하여

○ 질의 1 답변 참고

바 매립공사의 준공인가 및 매립지의 사용

2-17. 도시개발사업조합과 협약으로 추진한 공유수면 매립지 총사업비 정산 관련 (연안계획과-105, 2014.1.14)

가) 질의요지

'08.2 광양시장이 매립면허를 취득한 후 광양 마동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협약서를 작성하여 매립한 공유수면 매립지의 총사업비 정산 시 순공사비 산정 방법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 매립지의 총사업비 정산 제도"는 전 국민의 공공자산인 공유수면의 투기화 및 무분별한 매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매립공사에 든 비용만큼 매립지(토지)를 취득하게 하고 잔여분은 개발이익으로 국가에서 환수토록 하는 취지의 제도이므로 총사업비 정산은 실제 매립공사에 든 비용으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함

○ 총사업비 정산 시 순공사비는 '10.10.16 이전에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면 구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20조제4항제3호에 따라 당해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 이 경우 순공사비의 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및 표준품셈·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말한다)에 의하여 함

○ 다만, 순공사비 산정 시 구 공유수면매립업무처리규정 제23조에 따라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순공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설계금액을 말한다)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계획인가 후 그 설계내용의 변경사유 발생 등으로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준공인가 신청 전 최종적으로 변경인가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함.

2-18. 화력발전소 회처리장 매립공사 준공 시기 및 회 매립 준공검사 전 허가 대상 여부 (연안계획과-187, 2014. 1.20)

가) 질의요지

가. 매립목적이 '회사장 부지조성'인 영흥화력발전소 회 처리장의 준공 시기를 회사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차수시설 등 제반시설을 설치하여 부지조성이 완료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부지조성 완료 후 회(Ash) 매립이 완료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현재 영흥화력의 경우 공유수면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신고를 득하여 회 처리장에 회(Ash)를 매립하고 있는 상태인데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대상인지 여부

나) 회신내용

가. 질의 '가'항에 대하여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준공검사는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 매립지의 위치와 지목을 정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하게 되어 있고, 그 공사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을

경우 매립면허관청이 준공검사확인증을 내줄 수 있음

○ 따라서 매립공사 완료 시점은 매립실시계획 승인 시 승인된 내용대로 토지 조성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로 볼 수 있음

나. 질의 '나'항에 대하여

○ 매립실시계획 승인 시 회(Ash)를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다면 회 처리장에 회를 매립하는 행위는 준공 전 사용허가 대상이 아님.

2-19. 잔여매립지의 활용 시 국유재산의 장기임대 가능여부 (연안계획과-1495, 2015. 5.1)

가) 질의요지

잔여매립지에 H사가 R&D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수면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유재산의 장기임대가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법 제47조제2항은 해당 조항 각호에 해당하고, 매립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용지로 잔여매립지를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수면법 제4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은 「국유재산법」제4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의 사업기간 동안 임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H사가 설치하고자 하는 R&D시설이 매립목적에 부합하고, 공유수면법 제4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업의 사업기간 동안 잔여매립지의 임차가 가능함.

2-20. 연속되지 않은 매립지 매립면허 수수료 산정 (연안계획과-1034, 2015.8.12)

가) 질의요지

가. 매립예정지가 연속하지 아니한 두 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 매립면허수수료 산정*시 두 구역을 구분하여 각각 매립면허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총 매립면적에 대하여 매립면허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매립면허수수료 = 매립면적 × 인접한 토지가격 × 요율

** 총 매립면허수수료 = A구역 매립면허수수료 + B구역 매립면허수수료

- A구역 매립면허수수료 = A구역 면적 × A구역이 인접한 토지가격 × 요율
- B구역 매립면허수수료 = B구역 면적 × B구역이 인접한 토지가격 × 요율

*** 총 매립면허수수료 = 총 매립면적 × 인접한 토지가격(산술평균 or 가중평균) × 요율

나. 고현항 재개발사업의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 비고 “1.” 중 “그 매립예정지의 연장선 안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 및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의미

나) 회신내용

가. 질의 ‘가’항에 대하여

○ 매립면허수수료는 매립예정지의 면적과 해당 매립예정지에 인접한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매립예정지가 구분되어 연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 매립면허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후자와 같이 총 매립면적에 각 구역의 “인접한 토지가격”의 평균을 곱하여 산정할 경우 매립예정지와 접하지 않은 토지가격 또는 법령에 따라 “인접

한 토지가격"으로 보도록 한 토지가격 외의 토지가격이 매립면허수수료 산정에 영향*을 주게 되어 매립면허수수료를 매립예정지의 면적과 해당 매립예정지에 인접한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입법취지와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함

* 예를 들어, A구역의 매립면허수수료에 A구역과 접하지 아니하고, B구역에 접한 토지가격이 영향을 미치게 됨

나. 질의 '나'항에 대하여

○ "그 매립예정지의 연장선 안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란 매립예정지 경계와 주변토지 사이의 최단거리를 계산했을 때 가장 가까운 토지를 말하나,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 비고 "1." 중 "매립에정지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해당 매립예정지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매립예정지의 연장선 안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매립예정지와 접한 토지"가 존재하는 고현항 재개발사업의 경우 매립면허수수료 산출 시 "그 매립예정지의 연장선 안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의 가격을 산정기준으로 사용할 여지는 없음

○ 또한,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의미는, 접한 토지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공공용 토지에 접한 모든 토지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2-21.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검사 이전에 매립지 사용관련 (연안계획과-3631, 2015. 11.2)

가) 질의요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서는 매립면허 취득자는 매립공사 준공검사 전까지는 매립지에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매립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과 관련,

가. 매립지에 수중펌프준설선, 대형굴삭기, 덤프트럭 등을 투입하여 기 매립된 석탄재를 굴착하여 반출하기 위한 작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위의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질의1의 장비 등을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 볼 수 없다면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매립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매립면허를 취득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매립면허를 취득한 자의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은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에 따르면 매립 준공검사 전까지는 매립지에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으나 매립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면허관청으로부터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이 건 질의는 2017.9월 준공예정인 서천화력 제2회처리장에서 석탄재를 반출하려는 행위로 매립목적이 회처리장 조성인 매립지에서 회를 반출하는 행위는 매립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임.

가. 질의 '가'항에 대하여

○ 공유수면 매립지의 준공 전 사용과 관련하여 건축물·시설물, 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한계를 정하고 있지 않으며, 건축이나 시설의 형태(고정식 또는 이동식 등)와 관계없이 매립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건축이나 시설의 형태는 고려 대상이 아님.

나. 질의 '나'항에 대하여

○ 회처리장 준공검사 전에 회를 반출하는 행위는 매립목적 달성을 위한 행위가 아니므로 준공검사 전에는 매립지의 사용 및 회반출은 불가할 것임.

다. 질의 '다'항에 대하여

○ 답변 '나'와 동일

2-22. 새만금산업단지 내 공유수면 매립 준공 전 건축허가 가능 여부 (국민신문고, 2015. 12. 16)

가) 질의요지

새만금산업단지에서 공유수면 매립 준공 전에 건축허가 가능 여부

나) 회신내용

○ 새만금산업단지의 공유수면 매립 준공 전에 건축허가는 "공유수면 매립 준공검사전 사용허가"를 건축허가 목적으로 득한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함

○ 새만금산업단지는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매립하고 있으며 매립지의 사용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4조(매립지의 사용)에서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공사 "준공검사 전"까지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

나, 예외적으로 같은법률 제44조(매립지의 사용) 후단에서 매립관청으로부터 매립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사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2-23. 공기 연장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공사 총사업비 산정 (연안 58160-209, 2000. 3.14)

가) 질의요지

1997.10.30 매립면허시 준공인가 기간이 1999. 3.31 이었으나, 피면허자의 귀책사유(공정부진 등)로 인한 공기연장으로 1999. 8.31 준공인가를 신청하였을 경우 매립공사의 총사업비를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현행 공유수면매립법(법률 제5911호, 1999. 2. 8)은 1999. 8. 9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어 시행일이후 준공인가신청에 의한 총사업비 산정은 현행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다만, 동법시행령 부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매립면허를 받아 시행중인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중 건설이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

2-24. 화력발전소 회처리장 공유수면 매립 총사업비 산정 (연안계획과-1197, 2016. 4.4)

가) 질의요지

○ 한국남동발전(주)가 시행하는 삼천포화력발전 회처리장 중 제2회처리장(매립면허 허가일 : 1989.6.22.) 및 제3회처리장(매립면허 허가일 : 1981.7.3.) 준공과 관련하여 제2회처리장의 경우 한국남동발전(주)에 대해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준공으로 보아 공유수면매립지 준공시 총사업비 정산 대상인지 여부

○ 제3회처리장 준공에 대해 1986.12.31일 개정된 「공유수면매립법」제14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의 규정이 있으나 부칙 제3항에서 '이 법 시행전에 이미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규정을 적용 할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 제2회처리장 준공과 관련하여 한국남동발전(주)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유수면매립지 준공시 총사업비 정산 대상에 해당될 것임

*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경우는「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에 해당됨

○ 제3회처리장 준공과 관련하여 매립면허에 대한 매립지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면허 당시 법률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임

다) 이 유

○ 대법원 판결(사건번호 2006두19419, 2008.11.27.)에 따른 개정 법률이 전문 개정인 경우에는 기본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 규정도 실효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는 판시와 및 법제처 법령해석(2013-0135호, 2013.5.22.)에서 '동일한 부칙 조항이 현행 법률에 승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칙 조항을 승계하지 않는 전부 개정법률 및 제정법률의 입법 취지와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감안하면 해당 부칙의 경과규정이 실효되었다고 보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제30901호 공유수면매립법 부칙 제3항이 실효되지 않았다고 해석하고 있음

2-25. 영종하늘도시 내 공유수면매립지 소유권 취득 (연안계획과-1197, 2016. 5.16)

가) 질의요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에 따른 국가가 취득하게 되는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이 면적 대 면적인지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으로 정산하는 면적인지와 '매립지의 위치'를 국가와 매립면허취득자 중 우선 지정을 누가하는지

나) 회신내용

○ 국가에 귀속되는 매립된 바닷가 면적은 매립 전 바닷가 위치 및 면적에 대해 매립후의 가치와 상관없이 당초의 바닷가 면적을 의미함

- 바닷가는 국가·지자체나 개인의 것이 아닌 국민 모두의 공유재산인 공유수면이며, 매립 대상이 아님

○ 국가 취득하는 위치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정한 위치가 아닌 곳으로 함

- 매립사업의 효율성과 향후 토지로 등재되는 부지에 대한 활용성을 고려하여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지의 위치를 정하고, 국가에 귀속되는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의 위치는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지 위치를 정한 후 잔여매립지를 말함

2-26. 바닷가에 매립공사를 한 경우 매립지의 소유권자 (연안계획과-2009, 2016. 6.10)

가) 질의요지

"바다"에 설치한 경사식 호안 구조물에 연하여 매립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호안 구조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바닷가로 보아 국가가 취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제2조제1호 나목은 "바닷가"를 "해안선(약최고고조면 : 일정 기간 조석을 관측하여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해수면)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2호는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의 매립지는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바닷가"에 해당하는 매립지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바닷가"는 침수·해일 등 재해에 대한 완충구역 확보 등 정책적 사유로 토지등록하지 않은 것일 뿐 사실상 국유의 토지이기 때문임

- 그러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제1항제5호는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로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을 기준으로 지상경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경사식 호안은 토지로 등록할 수 없는 곳이므로 경사식 호안에 해당하는 면적을 국가가 취득하는 것은 공유수면법 제4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음.

아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

2-27.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목적 변경 여부 (연안 58160-327, 2000. 4. 18)

가) 질의요지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현재 매립공사 시행중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개정 매립법 시행후에 국가계획(도시계획)의 변경에 의해 매립목적에 맞게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어떤 규정에 의거 매립목적 변경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매립법상 매립공사 실시계획은 매립면허를 받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공사계획을 정하는 것으로서 귀 도의 의견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에 의하여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함

○ 현행 공유수면매립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전의 규정에 의거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법 제21조의2의 규정을 적용토록 되어 있는 바

- 동 규정의 해석상 준공인가전의 기간도 목적변경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건의 경우 매립목적 변경가능여부는 동 규정의 단서조항에 의거, 당해 매립지의 일정부문을 도시계획상 도로, 공공용지 등의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을 변경한 경우이거나 또는 국가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면허관청에서 당초 매립목적달성이 불가능한 지 여부 등을 종합 검토, 처리할 사안으로 사료됨
- 다만, 매립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당시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절차를 이행하기 바람

2-28. 농지 목적 매립지의 복합단지 용도 사용 여부(연안 58160-455, 2000. 6. 8)

가) 질의요지

1) 1972~1977년에 매립한 경기도 화성군 마도면 청원리 1249번지 일대(45만평)의 매립당시 매립목적을 알고자하는 경우 어느 기관에 문의해야 하는지와 매립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권자는

2) 매립지의 매립목적이 농지로 되었을 경우 동 부지를 “지역균형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3절의 복합단지로 개발하고자 한다면 매립목적과 부합여부

나) 회신내용

1) 매립당시의 매립목적은 면허관청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또한 해당 매립지의 토지대장을 열람할 경우 최초의 매립목적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음

○ 위 매립지의 “면허관청”은 농·축산업을 목적으로 한 매립면허는 농림부장관(3,000ha 미만은 시·도지사에게 재위임), 무역항만구역내는 지방해양수산청장, 그 외의 바다·바닷가의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는 시·도지사이나, 동 매립지는 매립목적과 관계없이 면허관청은 경기도일 것으로 사료됨

○ 매립지의 매립목적변경의 제한은 1986.12.31이후 면허받은 매립면허에 대하여만 준공후 5년(1999. 8. 9이후 매립면허는 20년)이내에 매립목적변경을 제한하고 있어, 동 매립지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목적변경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2) 및 3) 현재 토지대장에 매립지가 농지로 되어 있을 경우 “지역균형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3절의 복합단지에 적합한지 여부는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검토된 후,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을 운용하고 있는 농림부,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2-29. 공장용지 목적 매립지의 주택용 부지로 목적 변경 (연안 58160-553, 2000. 7. 3)

가) 질의요지

1963. 6. 19 매립지의 용도를 공장용지로 매립면허를 받아 1968. 4. 9 준공하여 30여년간 사용하다가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공동주택(아파트) 건립부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매립목적변경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매립지의 매립목적변경 제한은 1986.12.31일 이후 매립면허받은 매립지에 대하여만 준공후 5년(1999. 8. 9이후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 20년)이내에 매립목적변경을 제한하고 있으나, 동 매립지는 1963. 6.19 매립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목적변경의 제한을 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2-30. 완충녹지 변경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목적 변경 (연안계획과-147, 2012.1.19)

가) 질의요지

완충녹지의 변경(완충녹지에 차량 출구 개설, 공공보행통로 설치, 완충녹지를 경관녹지로의 세분변경, 녹지 면적은 동일하나 위치와 선형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매립목적 변경대상인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별표2에 따른 매립목적 중 해당하는 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매립면허를 받아야 함

○ 이와 관련하여 동 공유수면 매립면허 시에 명시된 동일 매립목적 범위에서 토지이용계획 변경(공공시설용지 중에서 완충녹지를 경관녹지로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립목적 변경대상이 아님

2-31. 국가산업단지 준공인가 시 매립목적 변경 필요여부 (연안계획과-557, 2014.2.26)

가) 질의요지

LNG기지 확장을 위한 아산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시 실시계획부터 준공인가까지"냉열사업부지"로 사용하기로 평택시와 협의하여 경기도의 최종 준공인가를 받은 부지이나, 등기부등본 상에는 매립목적이"LNG의 저장 및 공급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바, 등기부등본을 준공인가 시 토지이용계획인"냉열사업부지"로 정정 후 "냉열을 이용한 냉장ㆍ냉동창고"로 사용할 경우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필요 여부

나) 회신내용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토지이용계획을 첨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후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가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시에는 매립면허 및 매립실시계획을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 실시계획 승인 협의 시 첨부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매립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유수면 매립목적에 따라 매립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질의 건과 같은 경우 매립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32. 공공시설용지 일부를 판매시설용 부지로 매립목적 변경 가능 여부 (연안계획과-833, 2015.3.11)

가) 질의요지

고정항 지구는 공수면매립 기본계획 상 매립목적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은 도로 및 어구건조야적장으로 반영되었으나, 어구건조야적장 중 일부를 지역특산품 판매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은 매립면허관청은 매립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 매립면허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같은 법 제27조제1항은 매립기본계획 변경사유로 ①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추가 또는 해제, ② 매립예정지 면적의 확대, ③ 매립목적의 변경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8조는 따라 매립목적의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반면,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또는 변경승인)시 매립면허관청의 결정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종합하면, 매립목적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같은 법 제28조제5항 매립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 해당하며,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없이 매립면허관청의 결정으로 가능함.

○ 고정항 지구의 매립목적은 공공시설(도로) 및 기타시설용지*(어구건조야적장)이며, 지역특산품 판매장은 기타시설용지에 해당하므로 어구건조야적장의 일부를 지역특산품 판매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매립목적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행위로 판단됨.

* 고정항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지정된 어항이 아니므로 어구건조야적장 등 어촌어항법에서 규정한 어항시설과 같은 용도로 조성하는 용지라 하더라도 어항시설용지에 해당하지 않음

2-33. 매립지의 매립목적 변경제한 기간 (연안계획과-723, 2015.3.4)

가) 질의요지

'64.11월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07.6월 준공검사 확인을 받은 매립지의 경우 매립목적 변경제한 기간

나) 회신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은 매립면허취득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준공검사 전이나 준공검사일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같은 법 부칙 제10272호(2010.4.15) 제10조는 법률 제5911호 공유수면매립법개정법률 시행('99.8.9) 전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면허 당시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이미 준공된 매립지의 매립목적 변경 제한기간은 면허일을 기준으로 '99.8.9. 이후 면허를 받은 경우는 10년, '99.8.9. 이전 '86.12.31. 이후에 면허를 받은 경우는 5년이며, '86.12.31. 이전에 면허를 받은 경우 매립목적 변경 제한기간은 없음.

2-34.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매립지의 매립목적변경 (연안계획과-760, 2015.3.6)

가) 질의요지

가.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매립목적과 다르게 매립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매립면허관청에 매립목적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나. 매립면허 및 준공 협의 시 매립목적이 "LNG 저장 및 공급시설과 냉열사업 부지"로 기재되었다면, 해당 매립지에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할 경우와 "냉열을 이용한 냉동물류센터"를 건립할 경우에 매립목적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가. 질의 '가'항에 대하여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은 매립면허취득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준공검사 전이나 준공검사일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매립지 사용에 대한 제한은 없음.

나. 질의 '나'항에 대하여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은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은 별표2에 따른 매립목적 중 해당하는 매립목적을 명시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매립목적을 정하려는 때에는 매립목적별 면적을 각각 구분하여 정하고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 대상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은 냉열사업부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른 매립목적 중 "물류단지·가공시설용지"에 해당하므로 "냉열을 이용한 냉동물류센터" 건립은 매립목적 변경 없이 가능하나, "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는 매립목적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자 매립면허의 효력상실, 초과매립지 및 원상회복

2-35. 공유수면의 초과매립지등의 귀속주체(연안 58160-364, 1999. 8. 5)

가) 질의요지

경상남도 마산시장이 택지조성을 위하여 매립승인을 얻은 마산항내 매립공사의 준공인가신청면적(61,587.3㎡)이 매립면허면적(61,067㎡)보다 증가되어 검토한 바, 그 내역은 매립구역외의 초과매립면적(332.2㎡)과 면허구역내의 증가면적(188.1㎡)으로 확인되어 이들 증가된 매립지의 귀속 주체가 국가인지 또는 매립승인을 얻은 자인지 여부

나) 회신내용

○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매립법선과 항만시설, 도로 등 공공용지의 계획선의 이동이나 변경이 없었다면 다음과 같이 증가된 매립지를 귀속할 수 있음

- 면허구역외의 초과매립면적(332.2㎡)은 공유수면매립에관한업무처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후 국가에 귀속하여야 하고,
- 매립면허구역내의 증가된 매립면적(188.1㎡)은 그 증감된 원인을 규명하여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인가시 예정된 귀속주체에 따라 각각 귀속시킬 수 있음

다) 이 유

○ 매립면허구역외의 초과매립지는 면허를 받지 아니한 매립지에 해당하므로 공유수면으로의 원상회복 여부 등을 검토후 국가에 귀속토록 구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에 규정하고 있고,

○ 면허구역내의 증가된 매립지는 매립승인 및 실시계획인가시 실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매립지의 귀속주체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 인가받은 대로 매립공사를 시공하였다면 매립승인을 받은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임

2-36.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의 면제요건 및 국가귀속 관련 질의 (연안 58160-211, 2000. 3.15)

가) 질의요지

1) 공유수면매립법 제35조제1항 단서규정의 의무면제요건중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원상회복요건중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2) 원상회복의무 면제대상에 국가 또는 국가기관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원상회복의무 면제시설의 귀속절차, 소요경비부담 및 절차이행주체는

나) 회신내용

1)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원상회복할 경제적 가치와 물리적으로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 및 원상회복을 할 피면허자의 능력(파산의 정도)등을 종합검토하여 면허관청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의 기준은 매립지의 경제적가치가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손실보다 큰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판단기준은 가능하다면 관련 전문가의 검토 또는 용역결과 등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되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면허관청에서 결정할 사안임

2)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도 원상회복의무 면제대상이고, 원상회복의무 면제시설의 귀속은 면허관청에서 공유수면매립법 및 지적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면허관청에서 관련예산을 확보 처리하여야 하나 부득이할 경우 국가에 귀속될 재산의 관리청 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임

2-37.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실효된 매립지의 원상회복의무 면제조건과 준공인가 여부(연안 58160-452, 2000. 6. 7)

가) 질의요지

1)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실효된 매립지에 대한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의무 면제시 당초 사업시행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경부의 환경영향 재평가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이 있었으므로 원상회복의무 면제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2) 매립완료후 장기간 경과되어 자연침하 및 건조로 지반이 안정되었고 부지활용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현 상황에서 매립공사 준공인가가 가능한 지 여부

3) 환경영향평가 및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인가대로 시행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전 환경영향평가결과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로 인정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면제를 위한 환경영향관련 재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나) 회신내용

1) 및 3) 공유수면매립법령에 의거 매립면허가 실효된 매립지의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 면제시 면허관청에서 신청자에게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용역결과를 제출토록 하는 규정은 없으나 면허관청에서 공유수면 원상회복면제 승인을 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 및 지방의회 등의 반발 및 민원에 따라 동 실효된 매립지가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검토보고서 또는 용역결과 등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토록 하는 것은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전적으로 원상회복면제 신청자인 귀 사령부에서 입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매립사업 이전의 환경영향평가는 매립공사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지 면허관청에서 요구하는 원상회복면제 조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임

2) 동 매립지는 공유수면매립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의거 면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현 상황에서 부지활용이 가능다고 할 지라도 면허의 효력이 회복되지 않는 한 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가 불가능하고 매립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을 하거나 또는 국가에 귀속되어야 할 것임

3. 법령해석

바닷가만 대상으로 「공유수면매립법」 상 매립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매립면허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10-0057, 2010.4.16)

가) 질의요지

바닷가만 대상으로 「공유수면매립법」상 매립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매립면허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나) 회 답

바닷가만 대상으로 「공유수면매립법」상 매립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매립면허의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 사 유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에 따르면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을 말하고(제1호), "바닷가"란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바닷가를 말하며(제2호), "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토사·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제3호)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유수면 등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명시하여 행정청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공유수면"이란 바다·바닷가, 하천·호소·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

류로서 국유인 것을 말하고(제1호), “바닷가”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제1호),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매립된 바닷가중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된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포함된 바닷가 제외)을 집합구획한 매립지는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제2호),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조사비·설계비·순공사비·보상비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립지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3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의 문언을 살펴보면,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에서 “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토사·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매립의 대상이 바닷가만이라면 바닷가는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의 부분으로서 그 실질은 토지이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토사·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매립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바닷가만으로는 「공유수면매립법」의 취지에 따른 매립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유수면매립법」에서 바닷가를 공유수면으로 규정하고 매립면허의 대상으로 한 것은 바다와 바닷가를 함께 매립할 경우 바닷가를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면 매립된 바다 부분과 바닷가 부분의 토지의 물리적인 차이에 따른 토지활용상의 문제 외에도, 바다를 매립하여 그 바다가 지적공부에 등록한 토지가 되는 경우에도 바닷가 부분은 미등록 토지로 남게 되어 토지를 매립의 목적대로 활용하는 데에 문제가 있게 되므로 바닷가를 바다와 함께 매립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바닷가만을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 대하여 이를 허용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의 매립지는 매립공사의 준공 이후에 원칙적으로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고,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바닷가' 외의 매립지 중에서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를 국가가 취득하는 바닷가에 해당하는 매립지 외의 공유수면 매립지 중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통하여 회수하도록 한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바닷가만을 같은 법에 따른 매립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같은 법이 예정하고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바닷가만 대상으로 「공유수면매립법」상 매립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매립면허의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종전 법률 부칙의 효력이 법률의 전부개정과 폐지·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되는지[구 「공유수면매립법」 (1986. 12. 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부칙 제3항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13-0135, 2013.5.22]

가) 질의요지

구 「공유수면매립법」(1986. 12. 31. 법률 제3901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이라 함)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제정된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의 시행 이후에 준공인가를 받게 되는 경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정된 공유수면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나) 회 답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법의 시행 이후에 준공인가를 받게 되는 경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 사 유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은 제14조제1항에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공유수면매립법」(1986. 12. 31. 법률 제3901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제3901호 공유수면매립법"이라 함)은 제14조제1항에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3항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29조제4항(제2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제외함)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공유수면매립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전부개정되어 1999. 8. 9.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 공유수면매립법"이라 함)은 제26조제1항에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경우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공유수면법이 제정되면서 「공유수면매립법」과 「공유수면관리법」이 폐지되었는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공유수면법 제46조제1항에서는 개정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과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제3901호 공유수면매립법 부칙 제3항의 내용을 승계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안에서는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법의 시행 이후에 준공인가를 받게 되는 경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유수면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기존 법령과 신 법령 간의 동질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고, 차별성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폐지·제정 방식을 취하나, 구체적으로는 신구법령의 연속성은 체계의 형식적 변경만이 아니라 내용상의 실질적 변경도 함께 고려하여, 폐지·제정의 방식을 따랐다고 하더라도 폐지된 종전의 법령내용과 비교하여 실질적 또는 본질적 변경이 없다면, 법령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폐지·제정된 법령과 전부 개정된 법령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은 전부 개정된 법률에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에 관하여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 경위 및 취지, 전부 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전반적 체계,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 참조), 제정되는 법령이 폐지되는 법령과 체제 및 내용에 있어서 동일하거나 본질적인 변경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정되는 법령에서 폐지되는 법령의 경과규정을 계속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더라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될 수 있다는 위 판례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개정 공유수면매립법이 시행된 이후에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개정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제3901호 공유수면매립법 부칙 제3항의 내용을 승계하지는 않았지만,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 경위 및 취지, 전부 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전반적 체계,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3901호 공유수면매립법 부칙 제3항이 실효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7. 26. 회신 10-0208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에는 폐지된 「공유수면매립법」과 비교하여 제정된 공유수면법에 본질적인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와 공유수면법의 제정 이후에도 종전 부칙이 실효되지 아니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여전히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인바, 우선 공유수면법은 공유수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업무와 매립업무로 분리된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하는 외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을 뿐, 입법목적과 공유수면매립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그대로 승계함으로써 양 법률의 제도 자체에 동질성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발췌) 참조], 공유수면법이 폐지·제정의 방식을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유수면매립법」과의 사이에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변경 사항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3901호 공유수면매립법 부칙 제3항은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의 범위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기득권 및 신뢰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 제정된 공유수면법 제46조제1항에서 폐지된 개정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매립지 소유권 취득 범위와 관련한 정책적인 판단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3901호 공유수면매립법 부칙 제3항이 실효된다고 보게 되면 제정된 공유수면법은 폐지된 「공유수면매립법」과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준공인가를 받은 시점이 제정된 공유수면법의 시행 전인지 또는 후인지에 따라 매립지 소유권 취득의 범위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 준공인가 시점의 소유권 취득의 범위가 사후입법으로 달라지는 결과가 되어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믿은 자의 신뢰 보호에도 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제3901호 공유수면매립법 부칙 제3항"이 실효되지 아니한다고 볼만한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여전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법의 시행 이후에 준공인가를 받게 되는 경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IV

기타 참고사항

1.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관련 규정
2. 공유수면 매립가능 정부투자기관 연혁
3. 행정법상 행정행위(처분)와 공유수면

1.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관련 규정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1962.1.20 〈신규제정〉	**법 제14조 (매립지의 소유권취득)** ① 면허를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의 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단,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 제19조 (매립지의 귀속)** ①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중 도로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시설로서 필요한 토지는 국유에, 기타의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할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귀속에 관하여는 면허관청이 면허조건으로써 지정하여야 한다. 제20조 (매립지의 소유권취득시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립공사의 준공인가의 날에 전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1965.11.25 〈일부개정〉	**영 제19조 (매립지의 귀속)** ①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중 도로·호안·안벽·물양장·방파제·방사제·돌제·배수시설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시설로서 필요한 토지는 국유에, 기타의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할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개정 1965·10·25〉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귀속에 관하여는 면허관청이 면허조건으로써 지정하여야 한다. 제20조 (매립지의 소유권취득시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립공사의 준공인가의 날에 전조의 규	* 경과규정 없음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정에 의한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986.12.31 〈일부개정〉	**제4조 (면허)** ①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31〉 ③건설부장관은 매립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86·12·31〉 ④도시계획구역안의 공유수면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유수면에서의 매립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매립하되, 매립의 목적·규모 또는 입지여건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등이 매립할 수 있다. 〈신설 1986·12·31〉 **법 제12조 (준공인가)**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에 관한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매립지의 위치를 정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준공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6·12·31] **법 제14조 (매립지의 소유권취득)** ①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의 인가를 받은 날에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중 준공인가신청시에 본인이 원하는 위치의 매립지로서 그 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순공사비·조사비·보상비 기타 당해 매립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에 관한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법 제29조 (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에 관한 공사를 시행한 기관이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지체없이 건설부장관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에 관한 공사를 시행한 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필요한 매립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4조제3항, 제5조 내지 제7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및 제16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6·12·31]	* '88.6.27 농업목적의 매립면허는 농림부장관에게 위탁(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2472호) * '08.6.28. 한국토지공사외 정부투자기관 삭제
	영 제20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서의 당해 매립지의 가격은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되,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의 토지평가사등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면허관청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적정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평가액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금 다른 2인이상의 토지평가사등에게 다시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취지〉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종전의 경우 도로등 공공용지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경우 당해 매립지의 가격은 당초의 평가와 재평가에 의한 모든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②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매립지"라 함은 법 제14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잔여매립지중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윤과 1년간의 자금회수기간에 대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로 한다)를 합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제외하고 남은 매립지를 말한다. ③법 제1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중 도로·호안·안벽·물양장·방파제·돌제·배수시설·공원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시설로서 필요한 토지등은 국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로서 필요한 토지등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1987.10.13)	를 제외하고는 사업비에 관계없이 매립지 전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당해 매립에 관한 공사의 사업비(적정이윤 포함) 상당분만을 취득하게 하고 잔여분은 개발이익으로 국가에서 환수하도록 하는 한편,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준공일로부터 1년이내에 잔여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자가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그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함. 〈경과규정〉 ③(이미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29조제4항(제21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997.4.10 〈일부개정〉	**법 제29조 (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4·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에 관한 공사를 시행한 기관이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에 관한 공사를 시행한 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필요한 매립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4조제3항, 제5조 내지 제7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및 제16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6·12·31]	
	법 제14조 (매립지의 소유권취득) ①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의 인가를 받은 날에 매립된 빈지지역(이하 이 조에서 빈지매립지라 한다)과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중 준공인가신청시에 본인이 원하는 위치의 매립지로서 그 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순공사비·조사비·보상비 기타 당해 매립에 관한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상당하는	(취지)매립지중 빈지지역을 국가에 귀속하도록 함. * 경과규정 없음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1997·4·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와 빈지매립지,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이하 이 조에서 "잔여매립지"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매립지와 빈지매립지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시에 국가에 귀속하며 이 경우 빈지매립지에 대하여는 빈지매립지에 상당하는 면적을 집합구획하여 국가에 귀속하고,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개정 1997·4·1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것을 제외한 잔여매립지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준공인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잔여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청구자가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국가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그 청구자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잔여매립지의 매각방법 및 매각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4·10〉⑤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매립지를 그 매립목적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7·4·10〉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을 위한 시설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및 자원비축시설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중 관광호텔업을 위한 시설과 동조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전문휴양업을 위한 농어촌 휴양시설 및 민속·문화자원소개시설 ⑥국가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3조·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립지의 임대방법·임대기간 및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7·4·10〉 ⑦제1항의 사업비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8. 9 〈전부개정〉	**제38조 (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을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외의 자에게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공사를 시행한 기관은 당해매립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공사를 시행한 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필요한 매립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0조 내지 제13조, 제15조 내지 제22조,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제24조,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제2항 및 제3항, 제28조, 제29조제1항·제3항·제5항 및 제6항, 제31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법 제26조 (매립지의 소유권취득등)**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각각 취득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매립된 바닷가중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된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포함된 바닷가를 제외한다)을 집합구획한 매립지는 국가. 이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립지의 위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정한 매립지가 아닌 곳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조사비·설계비·순공사비·보상비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잔여매립지(이하 "잔여매립지"라 한다)는 국가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및 국가가 그 매립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신청서에 소유권행	(취지)갯벌등 공유수면의 매립에 의한 환경파괴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시 공유수면매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하고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매립공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경과규정 없음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사의 제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공무원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직권에 의하여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및 국가는 제2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매립목적변경의 제한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에 부기된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의 말소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2010.4.16 〈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 제3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매립면허관청과 협의하거나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에 신고한 후 양도할 수 있으며, 매립면허관청(해양수산부장관은 제외한다)은 그 신고를 수리(受理)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매립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地目)을 정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④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시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6조(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까지, 제48조, 제49조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제51조부터 제54조(같은 조 제9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46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① 매립면허취득자가 제45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매립된 바닷가 중 매립공사로 새로 설치된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 용지에 포함된 바닷가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매립지: 국가. 이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립지의 위치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정한 매립지가 아닌 곳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 매립면허취득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이하 "잔여매립지"라 한다): 국가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매립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그 신청서에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이라 한다)을 적어야 하며, 등기관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직권으로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을 부기(附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기간이 지나면 제2항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에 부기된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의 말소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④ 매립면허관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제1항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등기소 등 관계 행정기관에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2014.6.3 〈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매립면허관청과 협의하거나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에 신고한 후 양도할 수 있으며, 매립면허관청(해양수산부장관은 제외한다)은 그 신고를 수리(受理)하기 전에 해양수산부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매립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地目)을 정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④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시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6조(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까지, 제48조, 제49조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제51조부터 제54조(같은 조 제9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① 매립면허취득자가 제45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매립된 바닷가 중 매립공사로 새로 설치된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 용지에 포함된 바닷가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매립지: 국가. 이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립지의 위치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정한 매립지가 아닌 곳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등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 매립면허취득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이하 "잔여매립지"라 한다): 국가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매립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그 신청서에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이라 한다)을 적어야 하며, 등기관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직권으로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을 부기(附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기간이 지나면 제2항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에 부기된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의 말소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④ 매립면허관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제1항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등기소 등 관계 행정기관에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2. 공유수면 매립가능 정부투자기관 연혁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1986.12.31 〈신설〉	**법 제4조 (면허)**④도시계획구역안의 공유수면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유수면에서의 매립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매립하되, 매립의 목적·규모 또는 입지여건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등이 매립할 수 있다. 〈신설 1986·12·31〉	**(취지)**도시계획구역과 그 인근지역등의 공유수면에서의 매립은 원칙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하도록 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도록 함
1987.10.13 〈신설〉	**영 제8조의2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유수면등의 매립)** ①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유수면"이라 함은 별표에 규정된 공유수면을 말한다. ②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유수면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진흥공사 2. 산업기지개발공사 3. 한국토지개발공사 4. 기타의 정부투자기관중 공유수면의 매립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정부투자기관 ③법 제4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등이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유수면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매립지의 용도 및 용도별 면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취지)**개정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유수면과 투기발생이 우려되는 해안지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부 정부투자기관이 매립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개인등이 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들 지역에 있어서 개인등이 매립할 수 있는 경우 그 범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가. 공업용지의 경우 : 23만제곱미터이하 나. 상업용지의 경우 : 16만5천제곱미터이하 다. 주택용지 또는 농수산용지의 경우 : 10만제곱미터이하 2. 해안경관의 개선이나 해안이용의 증진을 위한 해안선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매립할 계획이 없는 공유수면으로서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화학공업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에 따라 매립을 하는 경우 [본조신설 1987·10·13]	위를 소규모의 공업용지·상업용지·주택용지 또는 농수산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에 따라 매립을 하는 경우등으로 한정 함(영 제8조의2제3항)
1997.9.28 〈일부개정〉	**영 제8조의2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유수면등의 매립)** ①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유수면"이라 함은 별표에 규정된 공유수면을 말한다. ②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유수면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8·6·17, 1996·2·15, 1997·7·28〉 1. 농어촌진흥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토지공사 4. 기타의 정부투자기관중 공유수면의 매립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정부투자기관 ③법 제4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등이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유수면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매립지의 용도 및 용도별 면적이 다음 각목의 1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업용지의 경우 : 23만제곱미터이하 나. 상업용지의 경우 : 16만5천제곱미터이하 다. 주택용지 또는 농수산용지의 경우 : 10만제곱미터이하 2. 해안경관의 개선이나 해안이용의 증진을 위한 해안선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매립할 계획이 없는 공유수면으로서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화학공업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에 따라 매립을 하는 경우 [본조신설 1987·10·13]	
1999.8.9 〈일부개정〉	**법 제9조 (면허)** ④도시계획구역안의 공유수면과 항만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의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의 매립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매립한다. 다만, 매립목적·규모 또는 입지여건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등이 매립할 수 있다.	
1999.8.9 〈일부개정〉	**영 제8조 (도시계획구역등에서의 공유수면의 매립)** ① 법 제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농어촌진흥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토지공사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4. 한국전력공사 5. 한국석유공사 6. 한국관광공사 ②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매립목적 및 매립목적별 면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간재가공공장용지 및 원자재가공공장용지 : 23만제곱미터이하 나. 유통·가공시설용지 : 16만5천제곱미터이하 다. 주택시설용지 및 기타시설용지 : 10만제곱미터이하 2. 해안의 경관을 개선하거나 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해안선을 정비하는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매립할 계획이 없는 공유수면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과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005.10.1 〈일부개정〉	**법 제9조 (면허)** 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안의 공유수면과 항만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의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의 매립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매립한다. 다만, 매립목적·규모 또는 입지여건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등이 매립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취지)** 공유수면 매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영 제8조 (도시계획구역등에서의 공유수면의 매립) ① 법 제9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농어촌진흥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토지공사 4. 삭제 〈2005.9.30〉 5. 한국석유공사 6. 한국관광공사 ②법 제9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9.30〉 1. 매립목적 및 매립목적별 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간재가공공장용지 및 원자재가공공장용지 : 23만제곱미터이하 나. 유통·가공시설용지 : 16만5천제곱미터이하 다. 주택시설용지 및 기타 시설용지(별표 제17호를 말한다) : 10만제곱미터이하 2. 연안의 경관을 개선하거나 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연안선을 정비하는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매립할 계획이 없는 공유수면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립과 관련한 일부 정부투자기관의 독점적 지위 배제(현행 제8조제1항제4호 삭제) (1) 공유수면 매립의 수요가 없는 일부 정부투자기관에 대하여 그 동안 부여되었던 공유수면 매립의 독점적 지위를 배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2) 농업기반공사를 비롯한 6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하여 도시계획구역 등 특정 지역의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던 것을 발전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한 한국전력공사를 배제하여 5개로 축소함. (3) 정부투자기관에 의한 특정 지역의 공유수면 매립을 실수요 위주로 허용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무분별한 공유수면 개발을 억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제하고 그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경과규정)(도시계획구역 등에서의 매립이 허용되는 정부투자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의 사업이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매립기본계획의 변경)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008.6.28 〈일부개정〉	**법 제9조 (면허)** ⑦「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안의 공유수면,「항만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및「어촌·어항법」제2조제3호 가목에 따른 국가어항구역 안의 공유수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하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 경과규정 없음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경우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가 매립할 수 있다. 다만, 매립목적·규모 또는 입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매립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2008.6.25 〈일부개정〉	**영 제8조 (공유수면 매립제한에 대한 예외** 〈개정 2008.6.25〉) ① 삭제 〈2008.6.25〉 ②법 제9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9.30, 2008.6.25〉 1. 매립목적 및 매립목적별 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간재가공공장용지 및 원자재가공공장용지 : 23만제곱미터이하 나. 유통·가공시설용지 : 16만5천제곱미터이하 다. 주택시설용지 및 기타 시설용지(별표 제17호를 말한다) : 10만제곱미터이하 2. 연안의 경관을 개선하거나 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연안선을 정비하는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매립할 계획이 없는 공유수면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010.10.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이동 〈제정〉	**법 제3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	**(경과규정)** (매립면허취득자 등에 대한 특례) 법률 제8820호('08.6.28) 공유수면매립법 일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면을 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매립면허관청과 협의하거나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에 신고한 후 양도할 수 있으며, 매립면허관청(국토해양부장관은 제외한다)은 그 신고를 수리(受理)하기 전에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매립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地目)을 정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시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6조(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까지, 제48조, 제49조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제51조부터 제54조(같은 조 제9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종전 법(같은 법 시행 전의 「공유수면 매립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종전 법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었거나 매립면허를 받은 정부투자기관(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거나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매립에 대하여는 종전 법 제38조(준공검사전 국가 또는 지자체에 양도양수 가능)를 적용한다. 다만, 매립목적의 변경에 대하여는 이 법 제35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이 법 제48조를 적용한다.

시행일	내 용	취지 및 경과규정
2014.6.3 〈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매립면허관청과 협의하거나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에 신고한 후 양도할 수 있으며, 매립면허관청(해양수산부장관은 제외한다)은 그 신고를 수리(受理)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매립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地目)을 정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④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시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6조(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까지, 제48조, 제49조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제51조부터 제54조(같은 조 제9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행정법상 행정행위(처분)와 공유수면

행정법상 행정행위는 행정청에서 인·허가라는 명목으로 처분되는 행위로서 ①행정주체가 행한 행위 ② 공법영역에 속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규율하는 행위(국유재산의 매각, 대부, 물품구매·용역계약체결 등은 사법영역) ③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상급청에서 하급청에 대한 명령·동의·승인 등은 내부적 행위) ④ 권력적 단독행위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그 구성요소와 법률효과의 발생원인을 표준으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적 행정행위로 구분됨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명령적 행정행위, 형성적 행정행위

○ 명령적 행정행위 : 개인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부과된 의무를 해제하는 행위로서 하명, 허가, 면제로 구분됨

① 하명 : 작위(공유수면 원상회복명령등), 부작위(공유수면상 폐기물 투기 금지, 영업정지, 도로통행금지, 건축물의 사용금지 등), 급부(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처분, 조세부과처분 등), 수인(건강진단 수진명령 등)의 행위
이중 부작위를 명하는 행위인 금지행위는 절대적 금지(비밀결사의 금지 등)와 허가를 유보한 상대적 금지(목욕탕 영업의 경영 등)로 구분됨
하명에 의하여 의무를 불이행한 자에 대해서는 행정상 강제집행이 행해지고, 의무위반자에게는 처벌(행정벌)이 따르게 됨

명령·금지에 위반한 행위는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

② 허가 : 상대적 금지행위중 특정의 경우에 특정의 상대방에게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여주는 처분(영업허가, 총포화약류 제조허가, 의사면허 등) 허가여부는 행정청의 기속재량이 원칙임
허가요건에 해당되어 당연히 허가로 받는 이익은 반사적이익에 불과함

복합민원의 경우 하나의 행정청의 허가를 받으면 다른 행정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이 경우 관련기관과 협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③ 면제 : 특정의 경우로 작위·급부·수인의무를 해제하는 행위(조세면제 등)로서 허가가 부작위의무를 해제하는 행위인데, 면제는 작위·급부 등의 의무를 해제하는 행위

○ 형성적 행정행위 : 특정의 상대방에게 권리·능력을 설정시켜 주거나 법률상의 지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특허, 인가, 대리로 구분

① 특허 : 특정의 상댕방을 위하여 새로이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특허기업(도로공사 등)의 특허, 토지수용권 설정, 도로통행료 징수, 광업허가, 어업면허), 능력을 설정하는 행위(공법인을 설립하는 행위),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공무원 임명, 귀화허가)를 광의의 개념인 특허라 하고 이중에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를 협의의 특허라 함

특허는 출원을 필요요건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형식으로 행하여짐

특허는 설권행위로 형성적 행위이고 자유재량행위임

※ 공유수면매립면허 또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독점적·배타적으로 권리를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행정법상 "특허"의 행정행위임

② 인가(보충행위) : 제3자의 계약·합동행위 등 법률적 행위에 동의를 부여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보충함으로써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특허기업의 운임·요금인가,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권리의무양도양수인가)

허가는 사실로서의 행위가 적법하게 행하여지기 위한 적법 요건인데, 인가는 법률적 행위가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효력요건임.

따라서 인가를 받지 않은 행위는 무효임

③ 공법상 대리 : 제3자가 행할 행위를 행정청이 대리하여 행한 경우에 제3자가 행한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행려병자·사망자의 유류품 처분, 체납처분절차에서 행하는 압류재산의 공매처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① 확인 :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의문이 있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공적권위로써 그 존부 또는 부정을 확인하는 행위, 기속재량행위이고 불가변력(확정력)발생

예) 당선인 결정, 국가시험합격자 결정, 도로구역 결정, 행정심판자격 등

② 공증 :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공적증거력을 부여하는 행위 확인은 판단의 표시인데, 공증은 인식의 표시이고 공증은 기속재량행위임

예) 부동산 등기, 외국인 등록, 토지대장에의 등재, 합격증의 발급, 영수증 교부, 여권발급 등

③ 통지 :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특정사실을 알리는 행위

예) 토지세목의 공고·통지, 특허출원공고, 귀화의 고시, 납세독촉, 대집행의 계고 등

④ 수리 : 원서·신고서·행정심판청구서 등의 제출이 형식적요건을 갖춘 경우에 행정청이 이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위임. 수리거부행위 즉 각하는 불수리의 의사표시로 소극적인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예) 혼인신고수리, 행정심판청구서 수리 등

나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은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적 성립요건으로

내부적 성립요건

○ 주체에 관한 요건

① 정당한 권한을 가진자의 행위 : 다른기관의 필요적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행위는 적법하게 성립될 수 없음

예) 공유수면매립면허시 다른기관과 협의

② 권한내의 해위 : 행정기관의 직무범위내의 행위

③ 정상적인 의사에 기한행위 : 사기·강박 또는 착오 등 의사결정에 흠(하자)이 있어서는 아니됨

○ 내용에 관한 요건

① 법률상·사실상으로 실현가능하고, 관계인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함

② 법에 위반되지 않고 공익에 적합(법의 일반원칙인 권리남용 금지, 신의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원칙, 평등의 원칙에 적합)

○ 절차에 관한 요건 : 법정의 일련의 절차를 밟고 누락이 없어야 함

① 신청·동의

② 사전통지와 이에 따른 의견제출

③ 행정조적내부의 협의·심의·자문·의결·동의

④ 기타의 법정절차

○ 형식에 관한 요건 : 법정의 문서 기타의 형식에 적합

① 허가를 받아야할 행위를 허가받지 않고 행한 경우에 행정청이 묵인하더라도 이를 묵시적 허가라고 볼 수 없음

외부적 성립요건 : 행정행위는 외부에 대한 표시행위이므로, 행정내부의 결정(합의체 기관에서의 결정, 기관장의 결재)이 있는 것만으로는 아직 행정행위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어야 비로소 성립됨. 즉,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이를 고시하기 이전까지는 행정행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다 행정행위의 흠(하자)

법령상 필요한 다른 행정기관의 협력을 받지 아니하고 행한 행위 : 다른기관의 의결, 승인, 협의(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함에 있어서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얻도록 한 것은 국민의 권익보호, 행위의 적법타당성의 사전보장, 다른기관의 관장사무와의 관련성 유지 등을 위한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법령상 단독으로 행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볼 것이므로 협력을 결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보는 견해도 있음

공유수면법상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지 않고 인·허가한 경우 이는 위법한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의 행위이고 최소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

○ 다른법에서 인·허가등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공유수면법을 의제토록 한 경우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야 하나 민원인의 편의차원에서 복합민원으로 간주하여 관련기과과 협의를 할 경우 다른기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이를 어길 경우 위법한 처분이 됨

○ 또한 관련법에 의거 의제되는 인·허가의 경우 관련기관과 협의시 반대 또는 부동의 의견이 있은 경우 이는 관련법상 인·허가를 할 수 없다는 뜻이므로 이를 어기고 행정청에서 인·허가를 할 수 없음

○ 필요할 경우 반대 또는 부동의 기관에 재협의를 통해 반대 등의 사유에 대하여 소명과 잘못이해한 부분을 납득시키고 그후 관련기관의 동의를 받은 후 인·허가가 이루어져야 적법한 행정행위로 볼 수 있음

○ 행정행위의 취소처분이 처분의 위법성판단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된 시점에서, 처분후의 사정변경 등으로 처분시에 결여되었던 법정요건이 실질적으로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흠(하자)이 경미하거나 기타사유로 취소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처분시에는 위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흠이 사후에 치유되었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가 있음

- 무효의 행위는 치유할 수 없음
- 흠의 치유에 대하여 법원의 판례는 사안별로 인정 또는 불인정하고 있음
  다른기관의 협력(의결, 승인, 동의, 협의 등)이 결여된 경우의 추인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2017년 7월 인쇄
2017년 7월 발행

발행인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김양수

편집인 :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 김광용
전해진 사무관, 황성오 사무관
장순길 주무관

발행처 :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Tel (044)200-5260~9, Fax (044)200-5259

인쇄처 : ㈜비전테크시스템즈 Tel : (02)3432-7132